

(속표지)

목차¹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찾기

책을 발간하며	7
대안적 가족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가족구성권 논의의 출발점	15
1. 들어가며: 왜 가족구성권인가	15
2. 대안적 가족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
3. 가족구성권 논의의 출발점	28
4. 나가며: 변화의 방향	35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야기: 제도 밖의 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38
I. 들어가며	38
1.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38
2. 연구방법	40
II.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들이 말하는 '가족'	44
1. 1인 가구	44
2. 커플 중심 가족	50
3. 공동체 가족	65
4. 변화하는 가족상	76
III. 가족상황차별 사례	77
1. 사회·문화적 차별	78
2. 제도상의 차별	89
3. 가족구성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95

목차²

대안적 가족제도를 위한 기초자료집

IV. 개선의 욕구	100
1. 개선의 방향	100
2. 개선의 우려점	109
V. 나가며: 새로운 가족 개념에 대한 상상과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략	114
제도 안의 가족 들여다보기: 현황과 개선 방향	117
I. 들어가며	117
II. 건강보험제도 안의 가족	120
1. 건강보험의 일반적 현황과 문제	120
2. 건강보험의 부양-피부양 체계와 개선 방향	123
3. 가입자-피부양자 규정의 특징과 개선 방향	128
4. 소결	
III. 임대주택제도에 있어서의 "가족"	134
1. 임대주택의 개념	134
2. "세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종 주택관련 제도들	136
3. 주택임대차보호법	137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및 전대에 있어서	139
5. 주택 공간의 문제	146
IV. 고용관련법·제도 안의 가족	152
1. 고용관련법·제도와 가족 '관련' 정책	153
2. 모집·채용과정의 '가족상황차별' 관행	158
3. 고용상태에서의 '가족상황차별' 관행	161
4. 소결	168

③ 목차

담론, 사례, 기초연구

V. 복지제도 안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16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반적 현황과 문제	169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	172
3. 소결	181
VI. 결론을 대신하며	182

파트너십 관련 해외법을 동향과 시사점: 생활동반자관계 그리고 동성혼 185

I.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보호에 관한 해외입법동향 및 시사점	
: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및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PACS)를 중심으로	186
1. 들어가는 말	186
2. 파트너십 관계의 성립의 요건 및 절차	187
3. 해소의 사유와 효과	194
4. 신분적 법률관계	201
5. 재산법적 관계	203
6. 상속권	206
7. 임대차를 둘러싼 법적관계	208
8. 양육	209
9. 나오는 말	212
II. 동성혼: 각국의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213
1. 동성혼 인정 상황	213
2. 입법 과정: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 중심으로	214
3. 한국의 미래	219

책을 발간하며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소개

2005년 3월, 지난 50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근간을 이루던 호주제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그 이전부터 확산되었던 가족에 대한 논의들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전 불과 두 달 사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복지부로,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몇 번이나 뒤바뀔 뻔 했던 가족정책 담당 부서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은 가족정책의 정체성과 위상을 둘러싼 혼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입증해 보였다. 이처럼 변화하는 가족을 둘러싼 지난 몇 년간의 무수한 논의들, 그것이 만들어낸 많은 정책과 제도 변화는 아직도 우리 주위를 길돌고 있는 듯 느껴진다.

시작

지난 2006년 8월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꾸려진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가족구

성권 연구모임)>은 그동안의 다양한 가족 논의들 사이에서 ‘빈 틈’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가족에 대한 기존의 담론과 제도에 균열을 내겠다는 포부로 출발했다.

한국사회의 가족이 기반하고 있던 부계혈통주의, 성별분업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현실 속의 가족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데 참가 단위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양한 가족을 분류하는 범주들은 끊임없이 ‘가족’에 포함되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나누고, 어떤 가족이 ‘가족’에 포함되느냐를 결정짓는 기준들은 저출산·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회복해야 할 가족의 돌봄 기능, 경제적 생존단위로서 역할과 더욱 밀접히 결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이러한 논의의 틀로는 가부장적 결혼과 가족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우며, 따라서 배제되는 현실 속의 다양한 가족과 개인들의 실질적 요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가족 담론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렇게 논의의 틀을 전환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내걸었던 의제는 ‘가족구성권’이었다. 우리 모임은 가족구성권이라는 문제 설정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화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기로 했다. 그 방안 중 하나는 현재 혼인·혈연 중심 가족의 범위를 넘어 동성에 파트너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 가족공동체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모임은 이러한 법률의 입법을 주요 목표이자 과제로 정했다. 물론 이러한 목표 설정은 우리의 활동이 가부장적 이성에 중심적 정상가족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 담론을 확산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개

이렇게 구성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대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실천 활동들 보다는 주로 새로운 파트너십 관련 법률 제·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토론과 연구 활동에 집중했다.

지난 1년 반여 기간 동안 우리 모임 내에서 진행한 세미나의 주제는 매우 다양했다. 기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자료,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자들이 진행한 가족차별 사례 분석자료, 파트너십 논의에서 주요 정책 대상이 되고 있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또는 동성결혼에 대한 연구나 자료들을 참고했다. 해외 동성결혼 또는 동성·이성 간 파트너십 관련 법률을 정리한 자료들도 우리가 지향하는 파트너십 관련 법률의 상을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됐다.

이러한 토론과 함께 진행한 또 다른 작업은 여러 사회정책·제도 안에 가족이 어떠한 정의와 범주로 설정돼 있으며,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어떤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와 자료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임대주택제도, 조세제도 등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제도 설계의 근간이 되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2007년 6월 11일에는 “가족에 대한 발칙한 이야기: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 찾기”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1년간 고민해 온 문제의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우리 모임은 이성애 중심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출발하면서도 오늘날 가

족을 ‘선택적’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는 개인들의 실천, 친밀성의 관계에 대한 욕망에 주목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존 가족관계의 성별 권력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견제를 유지하면서, 정형화되고 제도화 된 가족 범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요한 전략으로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제도 안의 가족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임대주택제도 안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 가족과 개인, 가족과 가족을 차별하지 않는 다른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해외 파트너십 관련 법률의 주요 쟁점과 한국 동성애자 운동에서 제기되었던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 토론자로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연구자,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 뿐 아니라 예상을 뛰어 넘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참석자들에 힘입어,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2007년 하반기부터 모임 구성원을 확대하고 우리 모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경로들을 세워나갈 수 있었다.

2007년 7월 이후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기존에 참여하던 단체, 연구자, 활동가들 외에 더 많은 단체, 개인들에게 참여를 제안했고, 지난 6개월 간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을 보다 확산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담론과 논리를 개발하고 이후 입법 운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우리 모임 구성원들은 4개 팀으로 나누어 △심층면접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 성원들에 대한 사례 조사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정리 △동성결혼과 생활동반자관계 관련 해외 법률 정리 △고용정책, 복지제도의 가족상황 차별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그 동안의 작업 결과가 바로 이 책에 담겨진 내용들이다. 책을 만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온 열정적인 성원들이 있었기에 1년 반 동안 끝어온 <가족

성권 연구모임>이 작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미래

그렇다면 앞으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모임은 그동안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시킨 논의들을 보다 많은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에게 확대하여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 계획이다.

가족과 가족구성권에 관한 연구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외에도 실제 변화하는 가족관련 법·제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실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러한 운동에 공감하는 단체, 개인들과 보다 광범위한 연대모임(네트워크)을 구성할 것이다.

이 운동의 큰 줄기 중 하나는 그동안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목표했던 바와 같이,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 가족공동체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운동이 될 것이다. 지난 2007년 말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동반자 등록법’¹⁾과 유사하게, 앞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연대모임은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에 함께하는 사람들 (가나다 순)

김수정(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김원정(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김태욱(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인권사법정책연구원), 나비아(언니네트워크), 류임량(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수료), 리언(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박혜림(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오가람(한국계이인권운동단

1) 이는 물론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에 참여하면서 함께 나온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든 공약이었다.

체 친구사이), 원영(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이수정(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동법인), 이종현(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정(이화여대 사회학과 석사수료), 장서연(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최현숙(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영희(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책의 구성

이 책은 네 개의 독립적인 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글은 가족구성권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우리 모임의 취지를 해설하고 그동안 이른바 ‘대안적’ 가족제도와 정책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책 전체의 서두를 열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앞으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운동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어야 할 논점들을 제시하며 대안적 가족제도를 상상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몇 가지 고민의 지점을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 글은 이 책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현실과 삶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우리 모임은 이른바 ‘정상가족’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가족’에서 다시 논의를 출발하기 위해 12개 가족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심층면접 했다. 그 결과는 크게 3가지 주제-제도 밖의 가족이 말하는 ‘가족’의 의미, 가족상황차별 경험 사례, 가족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와 기대 그리고 우려 -로 정리했다.

세 번째 글은 그동안 우리 모임에서 진행한 ‘각종 제도 안의 가족 들여다보기’ 작업을 정리한 글이다. 이 작업의 목적은 여러 사회정책·제도 안에 내재한 가족에 관한 가정(假定)들을 살펴보고,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초래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설계의 방식들을 찾아

보는 것이었다. 그 중 이 책에 정리된 것은 건강보험, 임대주택, 고용 관련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상 4가지 제도 및 관련된 사회적 관행에 대한 분석과 대안의 가능성이다.

마지막 네 번째 글에서는 해외 각국의 파트너십 관련 법률을 생활 동반자관계와 동성혼제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법률 내용과 입법 과정, 시사점들을 정리했다. 특히 이 글은 동성간 또는 동성·이성간 생활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관련법을 세부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파트너십 관련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짚어가야 할 법적인 쟁점들을 예측해 보았다.

아쉽게도 이상의 글들은 논의 전반을 관통하는 정교하고 일관된 관점 하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못했다. 다만 각각의 글은 우리 모임이 가진 큰 틀의 문제의식에 각기 다른 주제들을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소 논점의 일관성이나 강조점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는 우리 모임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딜레마 또는 고민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혀지길 바란다.

또한 이 책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대안적 가족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차적인 자료들을 모은 것으로, 어떤 완결된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 책이 우리 모임 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고민을 해나갈 이들이 각자 또는 서로의 연구와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2008년 2월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 가족상황차별이란?

이 책에서 가족상황차별(family status discrimination)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구성 과정, 가족의 구성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²⁾이라는 정의로 사용했다.

이러한 차별에는 법적 부부 중심의 이성애적 핵가족 외의 가족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제도와 정책 또는 사회·문화적인 차별, 가족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한 차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직접차별 뿐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효과에 있어서 가족상황에 따른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 가족상황과 관련한 경멸적 언행과 같은 괴롭힘(harassment)도 포함될 것이다.

위와 같은 차별들은 기존에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가족차별’ 등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되어 왔으며, 다른 차별요소(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와 중층적으로 나타날 때 성차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등과 구분되지 않는 영역에 남아있기도 했다. 이러한 용어의 불분명함은 용어 자체의 문제에 앞서,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종류의 차별이 본격적으로 ‘문제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차별연구모임(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김소임(2007), “인정 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가족 관련 법 및 신문 기사들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대안적 가족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가족구성권 논의의 출발점

김원정 민주노동당 전 여성정책연구원
박혜림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원영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정 이화여대 사회학과 석사수로

1. 들어가며: 왜 가족구성권인가

가족구성권(right to found a family)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 규범들이 명시하는 인권 개념에 포함되어 왔다.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16조 1항은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정,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 기간 동안과 그 해소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966년 체결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3조에도 “결혼 가능한 남성과 여성은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결혼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기초한” 결혼의 성립을 강조하고 있으며(세계인권선언 16조 2항,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3조 3항),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집단으로 “가족”을 상정하고 있다(세계인권선언 16조 3항,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3조 1항).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 프레임 내에 가족은 어떤 가족이며, 가족구성 권리는 실제 어떠한 권리를 의미하는가.

근대 사회 여러 사회문화권에서 가족과 결혼제도는 여전히 자녀출산을 포함한 이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규범들에 명시된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로서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를 포함한 보다 논쟁적인 개념으로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가족구성의 권리란 사실상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합의에 기초하여 결혼할 권리, 자녀를 출산할 권리와 동일시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법률이 그 대표적인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³⁾ 혼인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아닌 다른 인적 관계에 기초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란 사실상 근대적 인권 개념으로서 가족구성권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권 개념은 가족을 둘러싼 성별 불평등과 권력 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갖는다. 성별분업에 기초한 사회구조가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가족과 결혼을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관념 하에 은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의 평등하고 완전한 합의’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존의 인권으로서 결혼의 권리, 가족구성의 권리는 성별 불평등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

3)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이나 민법 내 가족 관련 조항에는 결혼할 권리, 가족구성의 권리가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을뿐더러, 민법 제4편 친족권의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분,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제5장 후견, 제6장 친족회, 제7장 부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개념은 혈족·친족에 기반을 둔 혼인관계와 부모자녀관계, 나아가 확장된 친족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결혼과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고 결혼과 가족생활 전반에 있어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시도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는 “당사국은 결혼과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 △가족성(姓) 및 직업선택에서의 권리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권리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권리 등을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가족구성의 권리가 남녀 간의 이성애적 결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동성간의 결혼이나 동반자 관계 보장을 요구하는 동성애자들의 운동이 전개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기존의 인권으로서 가족구성의 권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갱신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한 경향은 2000년 마련된 유럽연합기본권헌장, 2006년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주에 모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국제법 전문가들이 채택한 ‘성적 지향과 성평등에 관한 국제법 적용에 대한 요그야카르타 원칙(이하 요그야카르타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9조에는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이러한 권리의 실행에 관한 국가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럽의회는 이 조항을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전통적인 개념을 유지하면서 또한 동성 간의 결혼 허용, 결혼이 아닌 다른 가족의 구성 등 현대적인 맥락에서 이러

한 권리의 다양성을 기술하는 국가 법률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⁴⁾

또 요그야카르타 원칙에는 가족구성의 권리가 별도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갖는 권리이며, 가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 어떤 가족도 그 구성원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요그야카르타 원칙은 동성간 결혼이나 등록 파트너를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이성간 결혼이나 등록 파트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임무를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성 미혼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임무가 동성 미혼 파트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분명 기존의 가족구성권 개념이 전제하는 이성애적 결합을 뛰어 넘어 그 의미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간에만 보장됐던 결혼과 그에 준하는 등록 파트너십을 동성 간에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자칫 기존의 결혼과 가족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안으로 동성 파트너들을 ‘흡수’ 하자는 주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방식은 여전히 정상적인 가족 모델을 상정하고 그에 편입될 수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분리함으로써, 이성에 핵가족 모델의 보편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가족공동체들 간의 위계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혼인관계와 함께 혼인관계와 유사한 생활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은 결혼제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줄 뿐 아니라 이 둘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방식의 결합들을 다시 주변부로 내몰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기존 결혼제도가 가진 불평등한 속성에 더욱 급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

4) 유럽의회 홈페이지 (http://www.europarl.europa.eu/compar/libe/elsi/charter/art09/default_en.htm)

다.

때문에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제안했던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은 페미니스트 입장을 포함한 기존의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또한 동성결혼 등 특정한 가족의 제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적 경향을 경계하는 가운데 제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가족구성권이라는 말 자체, 즉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가족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라는 문제의식은 기존의 정형화 된 가족형태를 넘어서는 다양한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다. 특히 이는 능동적으로 가족을 ‘구성’해 가는 개인들의 시도를 포착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성을 갖는다. 앞서 언급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동성결혼이나 그에 준하는 이성·동성 간 파트너십이 인정된다면, 이는 공고한 전통적 가족주의를 약화시키고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전환해 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권은 개개인의 선택권의 문제로 협소화될 위험성이 높으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선택, 자율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인권 개념을 뛰어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가족구성권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데 무게를 실어야 할 것이다. 이성에 결혼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적 결합이라고 해서 곧바로 성별, 연령 등에 따른 구성원 간의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한 가족구성권 주장은 기존 가족제도에 내재한 권력관계를 비가시화하고, 그러한 관계의 하층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무력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항상 주의하면서 또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구성해 나가는 개인들의 욕망을 구현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마치 균형 잡기 힘든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처지라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이 글은 어디서부터 첫 발을 내딛을지 찾아내려는 노력들 중 하나라 하겠다. 우리는 먼저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인지하고 대안적 가족제도·담론을 모색하고자 했던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많은 논의들은 분명 가족을 이야기하는 우리사회의 지형을 예전과 다르게 변화시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족주의 담론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거나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는 향후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족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을 위해 착목해야 할 지점이자, 대안적 가족제도를 구상해 갈 수 있는 초보적인 아이디어들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의 문제의식은 다듬어지지 않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함께 대안적 가족제도를 모색해 나갈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면 그나마 적잖은 의의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2. 대안적 가족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검토할 때 페미니스트들의 작업을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오랫동안 가족에 대한 지배적 가정, 즉 가족의 부양자인 남편과 전업주부이자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현대 핵가족만을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가족 형태로 상정하는 ‘전형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반대해왔다. 또한 가족이 젠더와 연령에 따라 구조화되기 때문에 모성과 사랑으로 미화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가족의 이미지로 신비화되어 온 가족경험이 실은 이질적임을 밝히며 가족 내부의 권력 관계의 문제에 천착하였다.

더불어 페미니스트 가족 논의들은 가족의 내적 생활과 경제조직, 국가, 여타 제도들 간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적하면서 가족의 경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가족과 사회라는 일련의 이분법에 도전해왔다.⁵⁾

근래에는 이러한 가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토대 위에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가 가세하면서 복지를 가족에 일임하였던 기존의 가족책임주의에 대한 비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출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가족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 논의들의 한계를 규명하여 가족 논의에 있어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1) 가족기능의 사회화 논의 검토

한국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만혼, 이혼의 증가 등 가족의 변화 현상이 2002년의 출산율 1.17 쇼크와 결합하면서 가족위기론으로 부상하였다. 저출산이라는 ‘문제’적 상황이 인구고령화 문제와 결부되면서, 가족의 재생산이 위기에 처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재생산 노동 부담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대두되었다. 복지부담을 가족에 전가하는 가족책임주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돌봄노동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돌봄노동의 부담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로막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걸림돌로 여겨졌고, 가족정책의 방향성은 가족복지에

5) Thorne, Barrie and Marilyn Yalom eds(1982), *Rethinking The Family—Some Feminist Questions*, 권오주·김선영·노영주·이승미·이진숙 옮김(199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 아카데미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조와 함께 가족기능을 사회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가족기능의 사회화는 가족의 핵심기능인 돌봄노동을 어떻게 구조화하는가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돌봄노동의 구조화에 있어 핵심적 사안은 돌봄노동의 가치가 절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돌봄노동이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설계이다. 김혜경(2005)⁶⁾에 의하면, 돌봄노동의 사회화란 사적인 돌봄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하는 제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화의 전략과 차이화의 전략으로 구분된다.

차이화의 전략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시간제의 형태를 취하며 가정에서 수행한 돌봄역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조한다. 이 전략은 돌봄노동의 가치인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 전략의 근저에는 기존에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경쟁에 기초한 시장의 가치와 대비시키며 돌봄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고가 깔려있다. 그런데 이 차이화의 전략은 자칫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고, 실증적 조사들에 따르면 돌봄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극복하는 데에도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일화의 전략은 국가가 대체하던 시장이 대체하던 어쩔거나 돌봄노동을 탈가속화하는 전략으로, 요근래 한국의 돌봄노동 관련 제도 설계에 있어 기본적 방향성은 동일화의 전략으로 판단된다. 동일화의 전략은 이인소득자 모델을 취하여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돌봄노동의 탈가족화와 보육서비스 증대를 강조한다. 동일화의 전략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도출된 이상인 개인주의와 평등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오랜 요구로서, 가족기능을 최대한 가족 바깥에서 해결하여 여성의 가족부담 감감

6) 김혜경(2005), 「참여정부가 가족정책의 성격과 돌봄노동의 사회화 과제」, <저출산과 가족정책, 새로운 출구를 찾자>

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평등을 쟁취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인소득자 모델을 취하여 가족기능은 사회화하고 여성의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곧바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화의 전략은 한계적이다. 나아가 가족기능을 가족 외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을 정책의 단위로 포함하지 않는 것은 가족이나 관계의 영역이 고려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인소득자 모델은(삭제)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기 힘들다.

가정 내 여성역할의 가치평가를 피하는 차이화 전략과 여성고용을 강조하며 가정 내 여성이 맡고 있던 가족기능을 사회화하고자 하는 동일화 전략 모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남녀 모두가 임금노동자인 동시에 돌봄제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출되고 있다. 즉 현재의 여성의 삶의 패턴이 여성은 물론 남성도 공유해야 할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소득자-이인 돌봄노동자 모델에서 개인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기 보다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다. 대안적 모델에서의 개인은 자율적 존재로 규정되던 근대적 주체 개념을 전복시키는 것으로, 주체 개념에 돌봄이라는 관계 영역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삶의 패턴을 표준으로 삼는 이 대안은 매우 매력적 대안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인소득자-이인 돌봄노동자 모델로 가족기능을 사회화하는 방식의 제도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를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원론적이고 추상적 수준에서는 개인을 소득자인 동시에 돌봄노동자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제도 수준에서는 정교화되지 못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어떠한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가족이라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경유한 개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2) 가족 다양성 담론 검토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가족형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가족정책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가족 다양성의 인정이 부상하고 있다.

변화순(2001)⁷⁾은 가족 전체의 삶을 중요시하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쇠퇴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아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생활이 전적으로 개인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의 독특성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가족생활을 가능케 한 한국사회의 특성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규범으로 관계 형성, 유지, 해체에 대한 규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경 외(2004)⁸⁾는 한국의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일시적 병리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이념의 ‘사적 영역’으로의 확대, 이성에 가족 중심의 가족관의 해체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며 ‘정상가족’과 ‘요보호’ 가족 구분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권 외(2004)⁹⁾ 역시 과거의 다양한 가족유형이 가족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적, 과도기적 산물이었던 데 반해, 최근에는 변

7) 변화순(2001), 『한국 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8) 이재경 외(2004), 『한국 가족의 현실과 변화』, 여성부

9) 김승권 외(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들이 능동적, 자율적으로 다양한 가족유형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출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구조적 측면, 가족원 특성 측면, 생활양식 측면, 탈근대 측면을 기준으로 다음 <표 1-1>과 같이 분류·고찰하면서 이처럼 다양한 가족의 제반 특성에 따른 가족유형별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표 1-1> 가족 유형 분류

분류 기준	분류기준 설명	가족 분류	개념설명
구조적 측면	이성애부부와 미혼 자녀의 전통적 가족구조를 기준으로, 이것과는 상이한 구조를 지니는 가족을 분류함	한부모 가족	-부모 중 일방의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으로 인하여 부자 혹은 모자로 구성된 가족 -전통적 가족구조의 기준으로 볼 때, 자녀의 입장에서 부 또는 모가 부재한 가족
		미혼모 가족	-미혼모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으로 정의 -전통적 가족구조의 기준으로 볼 때, 자녀로서는 부가 부재한 상황의 가족
		무자녀 가족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없는 가족
		노인가족	평생 자녀가 없었거나, 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는 가족
가족원 특성 측면	동일민족 미혼남녀의 혼인과 그들이 출산한 자녀라는 가족구성을 기준으로, 이것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된 가족을 분류함	재혼가족	한 명 이상이 초혼이 아닌 성인남녀의 재결합으로 탄생하는 가족
		입양가족	출산이 아닌 입양이라는 법률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가정
		국제결혼 가족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것
생활양식 측면	부양자인 남편, 전업주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거주를 함께하는	맞벌이 가족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
		맞벌이 주말부부	서로 다른 지역에 직업과 거주지를 두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떨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직업적

탈근대 측면	-최근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는 가족유형 -가족 구성 과정에서의 자발성과 능동성에 초점을 두어 가족유형을 구성원 특성에 따라 분류함 -개인의 자율성 확보와 탈권위적, 민주적 관계 지향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가족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기러기 가족	자녀의 유학을 위해서 부모 중에 한사람과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다른 부모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가족
		미혼독신 가족	미혼독신자를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개념화
		동거가족	법률이 정하는 방식의 혼인을 하지 않고 남매가 결합하여 살고 있는 형태 중 사실혼과는 달리 혼인의사가 없거나 혼인의사가 불명확한 남매결합에 기반을 둔 관계를 동거라 지칭
공동체 가족	공동체 가족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가족의 틀을 벗어나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고, 핵가족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개인 및 가족들의 복합체	
	동성애 가족	동성애자를 자신과 같은 성의 사람에게 감정적·정서적·성적·신체적으로 끌리는 성 지향성을 지닌 사람들로 정의	

출처: 김승권 외(2004)

이와 같은 가족 다양성 인정, 지원의 주장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사회 원리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균열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표 1-1>의 분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는 주장들의 가족 유형 분류 역시 정상가족의 기준과 요건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가족을 유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을 잔여적인 것으로 범주화하면서 가족 형태들 간의 위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심이 되는 기준으로 정상가족 개념을 유지하고 정상가족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족들을 끊임없이 배제와 포함의 논리로 유형화하는 이러한 방식은 결국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한편 제도로서 가족의 새로운 구축 전략으로 동성혼의 인정을 요구

하는 논의들이 근래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이 논의들은 다양한 차별에 처해 있는 동성 커플들에게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여울 외(2005)¹⁰⁾는 “사랑과 신뢰로 두 사람이 동반자 관계를 맺어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거나 직장과 사회에서 부부로 인정받으며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욕구”라며 동성애자에게도 이성애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은우(2006)¹¹⁾ 역시 동성애자의 가족공동체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위해 동성혼을 이성혼과 동등한 혼인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성혼과 동등하게 동성혼을 인정하라는 주장은 법률혼의 유일무이한 지위를 해체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유의미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¹²⁾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동성혼 인정을 통해 이성애적 특권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특권화된 시민권 부여에 성소수자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으로 해독될 수 있다.¹³⁾ 동성혼 인정의 주장은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인정의 요구이지만, ‘정상가족’의 범주를 해체시키려는 시도라기보다는 기존의 ‘정상가족’의 범주에 동성혼도 포함시켜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상과 같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 제도의 틀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정상가족 뿐 아니라 여타의 가족을 인정하여 제도 안으로 포섭하려는 전략은 이성애

10) 조여울 외(200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11)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12) 오가람(2006),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와 전략”, <동성애자의 가족 구성권 토론회>

13) Josephson(2005), “Citizenship, Same-Sex marriage, and Feminist Critiques of Marriage”, *Perspectives on Politics* Vol.3/No.2

결혼과 혈연을 기본으로 하는 정상가족의 기준점 역할을 지속시키며, 이를 유지시키는 조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가족구성권 논의의 출발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정형화된 가족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가족구성권의 논의로 이어 나가는 데는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 먼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에 대응하여 그 형태들을 분류하고 각각에 상응하는 기준과 정책 제안을 제시하려는 접근은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전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즉 기준이 되는 정상가족의 상은 그대로 둔 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특히 은연중에 무엇이 부족한 지를 드러냄으로써 중심과 주변,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가정책 등의 기본 단위를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상정함으로써 가족주의를 유지시키는 물적 토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가족 개념을 해체시키는 효과를 가져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한발 더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관계 영역의 삶, 그리고 가족 구성의 욕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할 점은 이와 같은 담론의 지형은 비판적 가족 논의를 가족의 범위와 경계 설정 또는 가족과 개인 사이의 이분법의 문제에 빠지게 하며, 그 중 어떠한 방식도 삶에 있어서의 관계의 영역과 그 구성에 관한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족구성권의 논의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가족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개인 삶의 관계의 영역을 포괄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개

인, 관계영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관계에 대해 재사유 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가족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가족’ 개념(새로 구성된 개념을 여전히 가족으로 명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을 구성해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구성’, 즉 가족을 둘러싼 개인과 사회 혹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고민 역시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글에서는 먼저 기존의 가족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하지 않거나 그것을 대체할 개념의 구성에 천착하지 않음으로써 놓칠 수밖에 없었던 지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가족구성권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단초를 얻고자 한다.

(1) 관계 구성에 대한 개인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욕구

앞으로 제시될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겠지만, 개인의 관계에 대한 욕구와 각자가 그러한 욕구를 정의하고 실현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들이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보장하는지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정의의 주체를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 상정하게 되면, ‘가족’은 개개인간에 다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도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또한 이제까지 보살핌, 친밀함, 경제적 협력, 성애적 사랑 등을 모두 한꺼번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가족 개념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속성들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파트너가 아닌 친구와 가족 관계를 맺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어느 시점에선가 그가 친구가 아닌 자신의 파트너와 가족이 되어 함께 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예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기존의 법과 제도들이 그러한 다양하고 유동적인 욕구들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암묵적으로 하나의 생애 과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결혼 및 출산과 양육의 시기와 방법을 중심으로(결혼과 출산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삶’의 이미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모범적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진입이 지체되거나 혹은 이미 진입한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문제 또는 사고처럼 다루어진다. 따라서 하나의 모범적인 삶에의 강요는 개인의 삶 전체에 폭넓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가족’에서 벗어나 존재하는 개인은 그들이 맺는 관계 자체가 부정됨으로써 공식적·비공식적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그들이 당연히 ‘감내해야만 하는 것’으로 주어진다. 승인된 관계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들 역시 계속적으로 가족의 신화를 존중하고 지켜낼 것을 요구받는데, 그 규칙을 위반할 경우 그들은 생애 과정의 단절 혹은 그것으로부터의 축출을 감당해내야만 한다.

이러한 가족 개념의 유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조건에 미달하는 관계들’이 혈연 가족에 상응하는 가족애를 증명할 수 없음을 내세워 그들이 가족 범주로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정작 혈연 가족의 가족애는 무엇으로도 검증할 수 없으며(물론 검증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는 그 기준이 철저히 가족에 대한 신화에 근거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듯 누구에게든 가족에 대한 동질한 욕구와 필요가 본성과 같은 것으로 전제되고 특정 가족 형태에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는 현실에서 수없이 많은 ‘다른’ 관계들을 가족의 범주 안에 더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기존의 이성애 혈연 가족 개념에 조금의 균열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심과 위계의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누군가의 배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의 관계 구성과 관련하여 누가, 얼마나 그것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그것을 인정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 또한 질문되지 못한 채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접근은 가족의 해소를 그 구성 및 유지와 동일한 선상에서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방식을 상당 부분 답습하고 있다. 즉 가족의 구성과 유지는 정상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반면 그 해소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일탈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삶을 가족의 구성, 유지, 해소(그 각각은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를 포함하는 유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한 번의 구성과 그것의 유지(혹 그것이 해소되는 사고가 있었다면 다음번의 구성이 당연시되는)로 이루어지는 ‘왜곡된’ 형태로 변형시키고 있다. 정상가족의 이미지가 공고한 상태에서 이러한 왜곡의 발생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런 이유에서 ‘모범적인 삶’의 이미지 자체에 대해 의문시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문제적 상황’을 어떻게 분류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잘못 된 것이거나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지점들로부터 우리는 가족구성권의 논의를 위한 몇 가지 단초를 얻을 수 있다. 먼저 그것은 정상가족의 신화로부터 벗어나 가족 구성의 주체인 개인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관계에의 욕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기존의 가족 개념에 포섭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또한 가족주의를 유지시키던 물적 토대를 해체시키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그것은 가족 논의의 주체를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구성하는 개인’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며, 다시 가족 구성의 주체인 개인들의 삶의 과정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 관계영역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개념을 구성하는 것, 그리

고 그것을 통해 가족 개념에 내재되어 있던 경계와 위계를 허물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해소 없는 혼인과 혈연에 기반 한 기존 정상가족의 이미지는 물론 그러한 가족이 전유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친밀성, 그리고 나아가 가족 구성의 조건으로서의 친밀성 기준 역시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

(2) 정상가족을 경유한 가족 책임과 시민권의 교환

개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관계 구성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관계영역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기존의 가족이 개인과 사회, 혹은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매개하던 역할과 기능들, 나아가 그러한 가족의 기능을 규정해 온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의 가족 개념이 비단 삶의 관계 영역에 대한 부정과 표준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어른됨’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개인이 사회 내에서 온전한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딘지 조금 ‘미숙한’ 사람으로 읽혀지고, 그들이 표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하거나 이기주의적이거나 또는 무책임하다는 등의 평가를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사실이다. 또 이러한 논리에 근거 해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나 책임이 제한되는 사례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혼인과 출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만이 ‘온전한 성인’으로의 인정에 대한 독점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다시 결혼을 통하지 않은 독립,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대한 책임과 헌신은 어떤 점에서 ‘온전한 성인’의 요건에 미달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 물을 수 있다. 예를 들

어, 어떤 이유에서건 혈연이 아닌 아이를 자녀와 비슷한 애정을 담아 키우는 개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의 어른됨은 자녀를 양육하는 누군가의 어른됨에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반대로 부모-자식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된 개인의 어른됨이 보장되는 것인가. 또한 비 혈연관계에 있던 성인-아이의 관계가 입양 등을 통해 부모-자식의 관계로 전환 되었을 때 그 관계는 이전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더 우월한 것일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예를 통해 각 개인들이 그들 삶의 관계 영역에서 지고 있는 모든 책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국가나 사회가 특정 가족 형태를 명명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방식이 언제까지나 수많은 삶의 왜곡과 배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충분한 책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개인의 관계 영역이 어떤 이유에서 그가 '성인'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왔는가에 대한 물음이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

정상가족으로의 진입이 온전한 성인됨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기존의 가족에 부과된 특별한 또는 특권적인 책임과 권한들 때문이다. 여태껏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최대의, 그리고 최후의 안전망 구실을 해 왔으며, 국가와 사회가 부재한 공간을 메워 복지와 보살핌의 제공처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부양자-피부양자 모델은 사실상 가족을 한 단위로 묶어 그 가족을 대표하는 부양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성인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해 왔으며, 피부양자의 지위에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부양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러한 모델은 가족 내 권력 관계에서 약한 지위를 점하는 구성원들의 삶에서 기존의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못 하는 것이 곧 심각한 경제적·정서적 위협에의 노출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개인들로 하여금 기존의 가족 범주 바깥에 존재

하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했다. 이렇듯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국가와의 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가 가족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개인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책임' 과 '개인의 성인됨에 대한 인정' 을 교환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표되지 못 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억압과 소외를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가족구성권 운동은 기존의 가족과는 다른 형태로 인해 '구멍 난' 가족 기능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구멍이 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기존의 가족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가족을 구성하던 '가족 구성원' 으로서의 개개인들이 '사회'의 혹은 국가의 구성원' 으로서 새롭게 사유되어야 하며, 가족이 담당하던 기능 및 권한 역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의 단위를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전환하고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성별 분업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정상가족의 우위 속에서 개인과 정상가족 사이의 모호한 어느 지점에 방치되어 있는 삶의 관계 영역에 좀 더 큰 관심을 두며, 그것의 '적극적인' 개념화를 통해 이러한 위계적 지형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즉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의 권력 구조 안에서 각 개인이 맺는 관계들이 '평등한 사생활' 로 읽힐 수 없고 그 관계 안의 구성원들 역시 결코 평등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개인과 국가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뿐 아니라 삶의 관계 영역을 경유한 개인 시민권의 재구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성애 혈연 집단에 독점적으로 주어졌던 가족이라는 인정이 사실상 허구적 신화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즉 가족애나 책임감과 같은 신화적 믿음들은 그 누구에 의해서

도 완전하게 확인될 수 없는 것임에도 지금껏 국가나 사회는 자의적으로 특정 집단이 그러한 가족의 요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배타적으로 가족에 대한 인정을 부여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삶을 왜곡하거나 특정 삶의 형태를 강제하는 기능을 해 왔다. 따라서 가족의 문제는 다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 했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 개념을 구성할 때, 그것이 수행했던 과도한 기능들과 정상가족이 해체된 뒤에도 남은 삶의 관계의 영역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성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변화의 방향

이상에서 우리는 대안적 가족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과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의 결론은 특정한 가족형태와 가족주의가 개인의 삶을 단일하고 고정된 것으로 사고하게끔 하는 현실을 넘어서서, 다양한 관계에 대한 개인의 욕구로부터 새로운 가족 개념과 제도를 고민해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생애 전반에서 가족을 구성·유지·해소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매순간 그들이 구성해 나가는 여러 관계들을 가족 혹은 다른 확장된 의미의 공동체가 지칭하는 것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동적인 과정으로서 가족, 다양한 속성을 지니는 어떤 관계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가족 개념을 사고해 볼 수 있다. 경제적 협력, 부양, 돌봄, 정서적 친밀성 등 다양한 속성들이 모든 가족에게 동일하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속성에 기반한 또는 몇몇 속성들이 교차하면서 형성되는 구체적인 관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구상하는 동반자관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가족제도의 변화는 단지 혼인·혈연관계에 기초하며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안정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특정 가족의 변종이나 님은꼴을 제도화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시도는 다양한 속성을 갖는 관계들을 가족 개념 안으로 포함시켜 나가면서, 그 가족 개념 자체를 해체·전환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무수한 노력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다 다양한 관계들이 새롭게 가족으로서 의미를 획득해 간다고 할 때, 이러한 관계들을 통칭하여 굳이, 계속 ‘가족’ 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는 논쟁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가족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고 가족을 스스로 규정하는 주체 자신(국가나 다른 어떤 주체가 아닌)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족’ 이란 용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는 작업은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동적인 가족 개념, 즉 끊임없이 구성·유지·해소를 반복하는 과정으로서 가족에 주목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이제까지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사회 재생산과 유지를 위한 기능의 상당 부분은 개별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특정한 가족형태들을 열거하고 이들이 기존에 가족에게 요구되었던 기능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을 형성하는 다양한 관계들이 구성·유지·해소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가족구성원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변화 없이, 단순히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서 가족구성원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은 어떤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가족과 관계영역의 삶의 문제들이 결코 특정한 소수 개인들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실천은 기존 질서와는 다른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매우 개별적이면서도 매우 많은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실천이 보다 집단적이면서 강력한 사회적 흐름으로 규합된다면 과연 그러한 운동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모임 명칭에서부터 제기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가족구성권’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이 용어의 한정적 의미를 넘어설 수 있는,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이름들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가족을 둘러싼 대안적 실천들을 연대의 끈으로 서로 엮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야기 : 제도 밖의 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나비아 언니네트워크
리 언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오가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영희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1. 들어가며

1.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너무나 공고한 틀을 가진다. 제도 영역 속에서 (정상)가족은 이성애 결혼을 통해 맺어진 부부와 그들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자녀들로 이루어진다고 상정하고 국가는 이들 가족의 재생산 기능에 주목한다. 지난 2003년에 통과된 ‘건강가족기본법’은 국가의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건강 가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의무화하고 건강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가족을 둘러싼 국가와 제도의 숨 가쁜 행보가 있는 것은 이성애 기반의 혈연 중심성으로 묶여진 ‘정상가족(the family)’의 형태와 구조의 변화를 가족 전반의 위기, 가족의 해체 현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이혼율과 재혼율,

한부모 가족의 증가와 같은 통계 수치상의 변화에 연연하는 이유 역시 한국 사회를 지탱하던 정상가족 중심주의의 붕괴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가족 중심주의의 위기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가족들의 위기는 아니다. 단지 제도적 영역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가족의 상이 정상가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제도가 인식하는 가족위기는 실제 수많은 가족들을 포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국가와 사회의 목소리는 정상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하며, 가족 중심주의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결국 정상가족 중심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로 한국 사회에 작동하게 되고 이러한 기반은 모든 사회 제도를 통해 더욱 긴밀하게 구조화된다. 결혼과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의 상은 더욱 공고해지며 침범하기 어려운 정상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정상가족이 아닌 수많은 가족들은 요보호 대상 가족이거나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허울을 벗기 어려워진다.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보수화¹⁴⁾의 움직임이 최근 더욱 활발해지는 배경이 이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간극은 정상성을 획득하지 못한 수많은 가족들을 차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가족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갖는다. 그 감정들은 구속과 부담, 의지와 돌봄, 갈등과 증오, 위로와 위안의 수많은 감정들일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가족을 떠올리는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양하듯이 그 모든 형태를 아우르는 하나의 가족은 없고 다양한 수의 가족들이 있을 뿐이란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의 가족만을 상상하면서 삶

을 지속하라는 얘기를 듣는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어떤 형태로 가족과 연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성애 결혼 제도와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 제도가 주는 안정성에 주목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가족 중심의 제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참아내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다른 상상과 실천으로 온전히 가족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자신들만의 다른 가족' 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개인적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삶을 한국 사회에 공고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어떻게 구성해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안정과 혼란, 갈등과 차이의 복잡다단함 속에서 여전히 정상가족의 상과 의미는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마도 가족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서 드는 복잡한 감정들의 실체는 사람들이 의미화하고 있는 정상가족의 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가족은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주고 나는 가족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 역할과 의무, 책임으로 빚어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공고한 틀은 서서히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공고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분석하는 동시에 정형화된 틀 속에서 가족을 상상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다양한 가족의 의미들을 되짚어 보기 위해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갈등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4) 최근 미국에서는 가족주의를 전면적으로 표방하고 반동성애, 낙태 반대 등의 가치를 높이면서 등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있다. 이는 단지 미국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통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다양한 가족상을 드러내고 이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차별을 맥락을 짚기 위해서는 제도 밖의 정말 수많은 가족들을 연구 대상에 모두 포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가족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들 중 몇몇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례 연구로 진행하였다.

본 사례 연구의 대상에 포함된 가족들은 동성애 가족, 트랜스젠더 가족, 이성애자 가족들 중 등록하지 않은 가족, 장애인 가족, (동성애, 장애인) 공동체 가족들이었다. 이 밖에 비혼을 선택한 1인 가구¹⁵⁾의 사례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는데, 1인 가구의 사례를 포함한 이유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예들에 2인 이상의 가구 외에 1인 가구인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혼을 선택한 1인 가구의 사례들도 포함하였다. 그래서 사례 연구에 포함된 사례들로 비혼을 선택한 1인 가구의 사례들은 이성애자 비혼 남성의 사례와 이성애자 비혼 여성의 사례(2사례)를 포함하였고 커플 중심 가족들 중 동성애자 커플 가족의 2사례, 커플 중 한명이 트랜스젠더인 커플 중심 가족의 1사례, 이성애자 커플 가족 중에 등록하지 않은 가족 사례의 2사례, 이성애자 장애인 커플 가족 사례의 1사례를 포함하여 모두 6사례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가족의 사례로는 동성애 공동체 가족의 2사례, 이성애자 장애인 공동체 가족의 2사례를 포함하여 모두 4사례를 포함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전체 사례는 모두 12개의 사례이다.

15) 1인 가구를 비혼 독신 가족으로 볼 것인가는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정의들 속에서 다르게 의미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들을 거론하기보다 1인 가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기 위해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 이외에 1인 가구를 지칭하는 용어를 비혼 독신 가족으로 하기보다는 1인 가구로 칭하기로 한다. 대체로 가구의 사전적 정의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며, 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나 구성원을 의미한다.

사례 연구를 위해 각각의 사례들은 유형별로 동성애자 단체, 장애인 단체, 여성주의 단체 등을 통해 섭외하였다. 연구진들 중에는 섭외를 도와준 해당 단체의 활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 사례 연구의 자료들은 심층 면접을 통해 확보하였고 연구진들이 적어도 한 차례씩 직접 피면접자들을 만나 1-2 시간 분량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확보하였다. 대체로 피면접자들은 연구진들과 구면인 경우가 많아, 심층면접을 하기에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쉬웠지만, 일부 사례들의 경우는 피면접자들을 처음 만나서 심층 면접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기에, 되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심층 면접은 사전에 연구진들이 함께 구성된 구조화된 면접지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모든 질문들은 정해진 순서 없이 피면접자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사례에 따라서는 사전에 준비한 면접지의 질문이 적합하지 않기도 했기에, 즉석에서 가능한 다양한 질문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가능하면, 면접지의 질문들은 모두 질문하는 방향에서 심층 면접이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사례 연구에 포함된 각 사례의 구성원들은 실제의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 해도 법적으로는 모두 비혼인 상태에 있다. 각 사례들이 제도상에 ‘가족’으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사례의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비혼자로 인정된다.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회적 조건이 있다. 제도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님’의 맥락이 공통적인데, 이는 실제 ‘커플 관계가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혼인 상태로 인정할 만한 관계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지지만 이러한 차이와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 제도상의 혼인의 여부는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것은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들)가 있다 해

도 제도적 비혼 상태로 인해 모든 사례의 피면접자들은 사회적으로 비성인으로 인식되었다. 피면접자들은 혼인 여부나 파트너 유무를 등록할 수 없어 직장에서 업무 평가나 승진 심사에 차후로 밀릴 수 있고, 기혼자들을 대신하여 상시적으로 야근을 도맡아야 하며, 제도상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차별이나 세제상의 차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피면접자들이 실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 이 같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각 사례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각 사례들은 연구의 논지 전개에 필요한 몇 가지의 유형을 통해 구분하였다. 크게 1인 가구와 2인 이상의 가구로 구분하였고 이 중에서 2인 이상의 가구들은 커플 중심 가족, 공동체 가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범주화한 이유는 실제 1인 가구 사례와 2인 이상 가구의 사례가 현재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인 이상 가구의 사례들 중 커플 중심 가족과 공동체 가족을 구분한 이유는 각각의 사례들이 현재 구성하고 있고 의미화하는 ‘가족’의 상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범주화한 것은 해석상의 이견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점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이렇게 정리한 각 사례별 인구학적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심층면접 사례의 일반적 현황

사례 번호	사례 유형	가구구성 유형	피면접자의 성정체성	장애 여부	연령	자녀 수	가족 수	동거 연수
1	여성 1인 가구	1인	이성애자 여성	비장애인	40	-	1명	-
2	남성 1인 가구	1인	이성애자 남성	비장애인	31	-	1명	-
3	이성애자 동거커플	커플 중심	이성애자 여성	비장애인	36	-	2명	8년
4	한명이 FTM인 동거 커플	커플 중심	FTM ¹⁶⁾	비장애인	44	-	3명	18년
5	장애인 동거 커플	커플 중심	이성애자 여성	장애인	40대	1명	3명	2년
6	레즈비언 동거 커플	커플 중심	레즈비언 커플	비장애인	34/33	-	2명	3년
7	이성애자 동거 커플	커플 중심	이성애자 여성	비장애인	40	2명	4명	1년 6개월
8	게이 동거 커플	커플 중심	게이 커플	비장애인	36/32	-	2명	1년 9개월
9	게이 공동체	공동체	게이	비장애인	39	-	3명	3년
10	장애 여성 공동체	공동체	이성애자 여성	장애인	48	-	3명	4년
11	장애 남성 공동체	공동체	이성애자 남성	장애인	33	-	4명	9개월
12	레즈비언 공동체	공동체	레즈비언	비장애인	34	-	3명	1년 6개월

II.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들이 말하는 ‘가족’

1. 1인 가구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진 변화 양상 가운데

16)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성별 정체성은 남성인('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를 뜻한다.

데 하나로 꼽힌다.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980년의 경우 총 가구(일반 가구)의 4.8%에서 90년 9.0%, 2000년 15.5%, 2005년 20.0%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5).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세는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미혼 독신 가구의 증가, 이혼, 별거에 따른 단독 가구,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¹⁷⁾

<표 2-2> 연령별·혼인상태별 가구수 및 비율

(단위: 명, %)

연령별	비혼				
	가구	1,442,351	미혼	사별	이혼
계	가구	1,442,351	1,087,825	78,825	275,701
	%	100.0	75.4	5.5	19.1
25-29세	가구	400,002	396,835	257	2,910
	%	27.7	99.2	0.1	0.7
30-34세	가구	336,690	320,504	850	15,336
	%	23.3	95.2	0.3	4.6
35-39세	가구	226,663	184,576	2,485	39,602
	%	15.7	81.4	1.1	17.5
40-44세	가구	178,436	101,615	8,3124.7	68,509
	%	12.4	56.9	4.7	38.4
45-49세	가구	167,043	57,953	23,777	85,313
	%	11.6	34.7	14.2	51.1
50-54세	가구	133,517	26,342	43,144	64,031
	%	9.3	19.7	32.3	48.0

출처: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분석 결과, 2005.

본 1인 가구 부문에서는 ‘비혼’ 으로서 1인 가구의 삶을 ‘선택’ 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성애 혼인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1인 가구의 삶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미혼)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음을 선택한(비혼) 사례를 통해 1인 가구의 선택 과정과 삶의 경험, 차별 사례를 통해 기존의 정상가족 체제에서 문화적, 제도적으로 차별받아온 1인 가구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17) 김혜영(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어성정책연구원.

(1) 1인 가구의 삶과 비혼 선택

<사례1 : 여성 1인 가구>와 <사례2 : 남성 1인 가구>는, 스스로를 ‘미혼’ 이 아닌 ‘비혼’ 으로 호명하고 있다. 특히 <사례2>의 경우 남성 페미니스트이면서 비혼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례1>은 강한 의지의 범주보다는 삶의 과정에서 ‘결혼’ 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다.

<사례2 : 남성 1인 가구>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결혼은 여성주의를 고민하기 이전부터 결혼은 왠지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 1학년 때부터가 집안에서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어 하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때부터도 증매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도 그렇지만 다행인지 어떻게 봐야 할진 모르겠지만 저를 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많이 권유하셨죠. 저는 왠지 결혼은 제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자신이 원래 혼자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기도 해서... 일단 결혼은 주위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부담되거나 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가나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걸 편해하고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여성주의를 만나게 되면서 이른바 결혼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게 결합되면서 비혼식도 하게 된 거였고.

<사례2>의 경우, ‘결혼’ 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 왔으며, 결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성과 독점적인 관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2>의 비혼 독신 남성은 지난 2007년 언니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1회 비혼 여성축제’ 를 통해 비혼 선언을 했고, 앞으로도 비혼 남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비혼(非婚)이라고 말합니다. 비혼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결혼하지 않은[非] 상태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혼은 누구나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고정관념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비혼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편견에 반대합니다. 비혼은 이성간 결합만 허용하는 협소한 혼인제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비혼은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살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우리 자신의 선언입니다. -1회 비혼 여성축제 취지 中”

비혼 여성축제에서 비혼 선언을 하기도 한 <사례2>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미혼’ 이 아닌 ‘비혼’ 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도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구상하고자 한다.

<사례1 : 여성 1인 가구>

비혼인 상태로 40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40세가 되니까, 안정이 되는 느낌이다.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도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직장 내에서 결혼하지 않은 내 또래의 여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외로움. 주변의 시선 또한,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삼십대를 넘기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오히려 40대에 접어들고 나니 내 상태에 대해서도 안정적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 나의 경우에는 나이 드는 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드는 것 같다.

<사례1>의 경우, 비혼에 대해 구체적인 의지나 계획이 있었다기보다 삶의 과정에서 결혼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은 경우

이다. 공무원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기반으로 혼자 살아온 현재 시점에서야 비로소 스스로를 ‘비혼’ 으로 정체화하면서 오히려 안정감을 얻은 케이스이다.

이처럼 혼자서 살아가는 독신 비혼의 경우, 주변으로부터 지지 기반이 부족하거나 비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결혼을 종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결혼 시장에서 ‘팔리는’ 20대에서 30대의 경우 가족들이나 주변 동료들로부터 결혼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주변의 결혼 중심적인 문화는 1인 가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시키기도 한다.

또한 <사례1>의 경우, 이성애자 비혼 여성들끼리의 연대감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비혼’ 상태이면서도 파트너나 친구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비혼 동성애자에 비해 이성애자 비혼 독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좁다는 것이다.

<사례1 : 여성 1인 가구>

결혼하지 않은 이성애자 여성들은 서로 잘 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결혼하지 않은 동성애자 연대체를 보면 부럽기도 한다. 결혼하지 않은 이성애자들은 결혼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지만, 자기는 절대 비주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언니네트워크 페미니즘 캠프(참가한 적이 있음) 같은 경우도 결혼하지 않은 이성애자 여성들이 많이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모임에 나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비주류에 소속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마음은 주류에 가 있다. 언제든지 결혼이라는 버스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외롭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많이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성애자 비혼들은 연대하기가 힘들다. 결혼에 대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이성애자 비혼들도 더 활발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에 비해 ‘비혼’에 대해 좀 더 일찍,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상태로 살고 있는 <사례2>의 경우 ‘여성주의’를 통해 ‘비혼’에 대한 신념이 강화된 사례이기 때문에 여성주의 커뮤니티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신의 ‘비혼’ 선택이 이성애자로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올바름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성’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기득권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사례2 : 남성 1인 가구>

저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남성이기 때문에 젠더 측면에서 이른바 좀 기득권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비혼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단순히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여성들보다 타격을 받는 게 덜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비혼식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구요.

또 하나는 다른 분들(동성애자)한테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투쟁에서 쟁취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결혼은 단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의 하나였고. 그래서 그냥 저의 의지인 거죠.

<사례2>의 비혼 남성은 스스로 비혼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여성이나 성소수자보다 기득권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히 ‘결혼’이 선택의 영역이 아닌 투쟁의 영역에 있는 성소수자들에게 자신의 ‘비혼’ 선언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비혼’ 상태에 대한 불안이나 제도적 차별에 대한 반감을 넘어 자신의 기득권적인 정체성을 ‘비혼’으로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선택한 두 사례는 모두 ‘이성애자’로서 결혼을 다양한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장애인 1인 가구에 비해 선택이 용이하다는 점

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 받는 차별과 편견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인 가구가 겪는 다양한 차별은, 사회문화적·제도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지점은 ‘Ⅲ. 가족상황차별 사례’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2. 커플 중심 가족

(1) 커플 중심 가족의 구성

사례 연구에 포함된 가족들 중에 커플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은 동성애 가족, 커플 중 한명이 FTM인 커플 중심 가족, 등록하지 않은 이성애자 가족, 장애인 가족의 6사례를 포함하였고 모든 사례들은 커플을 중심으로 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성애자 커플 중심 가족의 경우였고, 이 경우는 혈연 관계의 자녀가 있는 경우였다. 대체로 커플 중심 가족들은 연애 관계에 있던 파트너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면서 가족을 구성하게 된 경우였고,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의 가족과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을 제외한 4개의 사례들은 모두 결혼식과 같은 의례를 통하지 않고 커플 관계를 이루었다.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과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의 사례만이 유일하게 결혼식을 통해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커플 관계를 인정받았고, 주변 친인척들이 커플 관계를 혼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의 사례는 18년 동안 커플이 친가의 가족들과 함께 가족을 꾸리며 생활하고 있었다. 다른 사례들 중 커플 외의 다른 친인척들이 함께 가족구성원으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예는 없었다.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과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을 제외한 다른 사례들의 경우, 피면접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거인과의 관계가 커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도 있었고, 피면접자와 동거인과의 관계를 몇몇 친인척들만이 커플 관계로 알고 있는 경우(<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은 커플인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두 사람의 ‘본가’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은 두 사람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여성 파트너의 ‘친가’에서만 알고 있었다.

(2) 결혼의 배제? 결혼으로부터의 배제?

각 사례별로 커플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구성하게 된 맥락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한국 사회가 동성애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레즈비언 커플이나 게이 커플과 같은 동성 커플이 실제 가족을 이루고 공동 거주와 공동생활의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이들 관계는 보호받거나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로부터 배제된 가족이다. 커플 중 한명이 트랜스젠더인 가족도 일부 동성애 가족과 유사한 맥락을 지니는데, 트랜스젠더의 공부(公簿)상 성별 정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커플 가족은 커플 관계를 보호받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가족도 성별 변경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동성애 가족처럼 제도로부터 배제된 가족이다.

그러나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성애자 가족은 사회로부터 배제된 가족의 예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서 등록하지 않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등록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의 경우, 커플 두 사람이 모두 장애인이다.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의 여성 파트너는 이미 첫 번째 혼인 관계로부터 얻은 자녀가 있었고, 첫 번째 혼인 관계를 정리한 후, 한부모 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수급권자로 지정받은 상태에서 두 번째 혼인을 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등록하기 어려웠는데, 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부양자의 급여로 3명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소득이 충분치 않았고, 따라서 여성 파트너가 가지고 있던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었다. 별 수 없이 소득 보장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의 경우, 커플의 혼인 관계를 등록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은 두 사람 모두 이성애 혼인 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형태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 혼인 관계 등록을 하지 않았다.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사례의 경우도 여성 파트너는 첫 번째 혼인 관계로부터 자녀를 얻었지만 파트너와 사별을 하였고, 한부모 가족으로 수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다시 자녀를 출산한 후, 혼인관계의 등록을 할 수도 있었지만, 피면접자는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를 혼인 관계가 아닌 연애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고 단지 둘째 자녀에 관한 부모 책임으로 인해 파트너와의 관계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면접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소득 보장이거나 의료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파트너와의 관계를 등록할 필요도 없었다.

이처럼 동성애자 커플이나 트랜스젠더 커플의 일부 사례와 달리, 이성애자 커플 사례에서 혼인 관계의 등록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자신들의 선택의 지점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차이는 커플 중심 가족의

사회적 인정과 맥이 닿아있다. 애초에 부여되지 않았던 권리의 배제와 박탈이 동성애자 커플 가족의 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면, 트랜스젠더 이성애자 커플 가족의 경우, 공부(公簿)상 성별 정정의 여부에 따라 (국가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얻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성애자 커플의 경우는 혼인 관계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적 선택의 지점으로 남아있다. 그 선택에 대한 개별 가족들의 결정은 국가의 사회 보호 제도상 혜택의 수혜 여부에 근거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족 구성원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가족’이 제도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가족 혹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에 근거하기도 한다.

(3) 결혼이 아니라면?: 가족 구성원들은 무엇을 욕망하고 선택하는가?

통상적으로 ‘가족’은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질적 공동체로 인식된다. 이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바탕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무게 중심은 이성애적 커플 관계에 있다. 이성애 커플이 혼인식을 통해 커플 관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혼인 제도는 성립된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혈연관계의 자녀가 구성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가족 내 이성애 커플 관계에 대한 사회적 가정은 적어도 커플관계는 가족을 구성한 이후, 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운명 공동체적 관계이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기반 위에 있을 것이라는 경제 공동체적 관계이며, 커플의 자유 의사에 따라 혈연관계의 자녀를 두기를 희망하는, 다시 말해, 혈연 공동체적 관계를 지향할 것이라는 것 등의 가정이 있다. 커플 관계의 운명 공동체적 속성, 경제 공동체적 속성, 혈연 공동체적 속성은 모두 가족 이데올로기의 근

간을 이루는데, 이러한 특징은 1인 가구나 공동체 가족과 달리 성애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커플 중심 가족의 경우 강력하게 강제된다. 사회적으로 성애적 결합에서 비롯된 커플 관계는 동질적 속성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 전제하기 때문이다. 혼인식 주례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와 같은 말은 실제의 커플 관계들이 갖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상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정말 실제 수많은 커플 관계가 과연 운명적, 경제적 공동체이며, 혈연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특히 본 사례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들 중 커플 중심의 가족들은 구성원들 각자의 삶을 어느 정도 동질적 기반 속에서 가족의 삶과 연계시키고 있는가? 커플 중심 가족의 경우, 공동체 가족과 달리 성애적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공간이며,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요구하는 장이기 때문에 커플 중심 가족의 사례들을 가족 이데올로기가 기반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들이 기반으로 하는 가족의 상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커플 중심 가족 사례들은 가족 이데올로기가 기반하고 있는 몇 가지 가정들, 즉 운명적, 경제적, 혈연적 공동체라는 가정들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커플 중심 가족들의 모습의 변화와 갈등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먼저, 8년 이상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의 피면접자는 자신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이유로, 혼인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면, 가족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

면접자: 두 분의 갈등은 없었나요? 가족 간의 왕래나...

피면접자: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서로 각자가 해결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려고 결혼 안 하는 건데... 남자 친구 집은 저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든요. 우리 집은 제가 무남 독녀 외동딸이라서 부모님이 박탈감이 심할 거 같아서 우리 집을 안 와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쪽 집은 왕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거고, 서로의 집에 명절이라서 인사 가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서로 각자가...

그렇다고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의 두 사람은 헤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커플 관계를 혼인으로 국가에 등록한 경우와 달리,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은 다양한 제도상의 불이익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커플 관계가 제도적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상의 불이익들은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의 경우, 자신들의 다른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의 피면접자 여성은 아직 자신의 연령이 30대의 학생이기에, 자신들의 관계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경험할 수 있었던 차별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고 자발적으로 혼인 제도를 통해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기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불이익을 ‘불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남들과 ‘다른 상상’을 하는 것으로 ‘불편’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의 피면접자가 말하는 ‘다른 상상’은 예를 들어, 미래에 자신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 각자 청약 저축을 부어서 각각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꿈을 떠올리는 것이다. 피면접자의 말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하는 것으로 현재 경험하는 차별을 ‘불편’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

피면접자 : 전세금 대출 이런 것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아예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막상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확실히 주택이나 이런데서 (차별이) 많은 거 같아요. 대출이나 이런 거 못 받고 청약 순위에서 밀리고 이런 게 큰 거 같아요. 계획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꾸리죠. 저희가 특별히 헤어질 것을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언젠가 따로 살자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집에서 살까하는 고민할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도 청약 저축 부어서 둘 다 청약 저축으로 동일 아파트를 만들어서 하나는 작업실로 쓰고 이런 식의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게 더 낫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불리한 것들 어떻게 캐나갈까 하는 거고.

또한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의 경우, 재산 관리나 재정 운영 전반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한다고 밝혔는데, 재정 운영을 공동으로 하지 않는 것 역시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이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했고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불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했다. 이렇게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은 헤어질 것을 전제하지 않는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갖지만, 경제 공동체적 성격은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은 자녀 계획에 있어서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자녀를 둘 것을 고려하고 있어, 혈연 공동체적 지향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를 등록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이나 독신자의 입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들 커플이 자녀를 계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은 트랜스젠더인 파트너가 공부(公簿)상 성별 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친인척 관계나 ‘본가’와의 관계에서 커플은 혼인한 부부 관계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의 가족은 함께 재정 운영도 하고 함께 지출도 하는 경제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며 또한 노후도 함께 준비하는 운명 공동체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커플이 함께 살고 있는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은 ‘본가’, ‘처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커플의 모든 주변 사회적 관계에서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은 ‘등록된 부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커플 관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세금과 보험 등의 배우자 부양이나 배우자 지정이 어렵고 입양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차별은 운명적, 경제적 공동체로서 ‘본가’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극복된다. 예를 들어, 커플 중 누군가 먼저 죽더라도 ‘본가’에서 자신들의 커플 관계를 인정해주고 이를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본가’에 요구하였다.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

“내가 죽고 나면, 나한테 있는 거 조그맣지만 용인에 있는 집, 집 사람에게 줘”라고 형제들에게는 얘기해요. 동생하고 형한테 그런 얘기는 했어요. (면접자 : 그러자 하시나요?) 워낙에 집사람이 고생도 했고 같이 산지도 오래됐고, 사실 그 집을 나 혼자 마련한 게 아니니까. 집사람 만나고 나서 마련한 거라서….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의 경우가 다른 사례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커플 중심 가족이 주변의 친인척 관계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커플 중심

가족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관계의 불안정성은 이를 통해 극복되고, 경제적, 운명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특히 트랜스젠더인 파트너의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커플인 두 사람의 공동체적 성격이 확실하지 않으면, 거래 계약이나 지출 업무 등 모든 상황에서 비트랜스젠더인 파트너가 트랜스젠더인 파트너를 보조하기 힘들다.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집을 지금 현재 제 명의로 된 집이 용인에 있거든요. 용인에 있는데 계약할 때 전세를 줬는데,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요새는 전세 들어오면서 다 떼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번호랑 나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계약할 때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나라고 그러고 가서 계약서 쓰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그리고 보험 회사라든지 자동차 보험 회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보험 회사라든지 계약할 때나 전화오고 할 때도 나라고 하고 통화하고 은행 갈 때, 적금 해지할 때라든지 어쩔 수 없이 내가 갈 때는 빼고.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 역시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성 파트너가 첫 번째 혼인 관계 이후, 자녀와 함께 두 번째 혼인을 했지만, 국가의 경제 보조의 문제로 인해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현재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의 경우, 커플 모두 장애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남성 파트너의 수입은 매우 낮고 여성 파트너는 일을 하지 않지만 국가의 경제적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은 가족 단위 경제생활을 유지하려면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야만 가능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 함께 지출을 하는 경제 공동체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 관계를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공동체의 성격을 바탕으로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은 커플인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남성 파트너의 혈연 자녀는 아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었다.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

남편이름으로 (세대주를 결정한) 한 이유는 남편이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아이랑 수급권자로 살았다.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혼인 신고를 하면 수급권이 탈락이 된다. 수급권으로 받던 생계비랑 남편이 버는 거랑 합해서 금액이 나오므로 혼인 신고는 안 되어 있다.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

불편한 점은 (내가) 지체 장애이고 (남편이) 시각 장애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편한 점은 있다. 그러나 남편이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크게는 없다. 마음 편하게 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인격적으로 억압받는 게 제일 힘들다. 2004년도에 만나 200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도 (지금 남편과) 싸운 게 한 번도 없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은 운명 공동체의 성격도 약하고 경제 공동체나 혈연 공동체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의 두 사람은 혹시나 헤어질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재정 운영을 분리하여 각자 전담하도록 했고, 자녀 양육도 입양을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혈연 공동체적 성격을 지향하지도 않고 있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재산을 공유하면 나중에 헤어질 때, 특히 레즈비언 커플인 경우

혼인 신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헤어지면 연애하다 헤어지는 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재산을 공유하지 말자. 집은 없지만 다른 건 분리하자. 이렇게 된 거지.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이 이러한 가족상을 갖는 것은 실제 동성혼이나 동성 파트너 간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제도적 여건과 더불어 동성 간 결합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것이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은 친인척들로부터 결혼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친구 관계’라고 소개를 할 수밖에 없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야근을 벗어나기 어렵고 중요한 직급으로 승진도 하기 어렵다. 이런 차별에도 불구하고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의 커플 관계나 자신들이 구성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말할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자연히 가족 내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은 경제적인 부담을 각자 분리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피면접자1 : 둘이 엄마가 집에 온다고 하셨을 때 연애 관계가 드러날 만한 건 다 치운다거나 하는 정도의 어려움이랄까?

면접자: 이성애자 친구들이나 직장동료에게 서로를 소개한 적이 있는지?

피면접자1: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준 적 없어. 내가 친구랑 같이 산다는 건 알아. 근데 그 친구랑 그런 관계인 건 모르는 거지.

피면접자2: 나도. 주변 레즈비언 친구들 말고는 소개시켜 준 적 없어. 그냥 친구랑 같이 산다는 거,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더라. 레즈비언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냥 눈치인데, 지금 직장에서 내가 친구랑 같이 산다니까 약간 그런 눈초리를 보낸 사람이 있어. (중략) 일단 그냥 친구랑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결혼 안한 거 가지고 문제가 많지. 근데 직접적으로는 없었어. 근데 부서 안에서 그런 갈등이 심해지는 게 있지. 분위기가.

피면접자1: 경조사비. 결혼 안 하고 그만두는 직원한테는 낸 경조사비만큼 줬으면 좋겠는데, 기혼자들은 씌더라. 그럼 결혼하던가, 이런 식인거지. 그러면 빈정 상하는 거지.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의 경우, 여성 파트너가 사별한 후, 자녀 1명과 함께 새로 가족을 구성하였는데, 현재의 커플 관계에서 새로 자녀가 태어나면서 2명의 자녀와 커플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이들이 커플 관계를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커플인 두 사람이 현재까지 결혼 제도로 묶이고 싶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남성 파트너의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여성 파트너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를 국가의 경제 보조를 통해 지원받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이유는 커플 관계인 두 사람이 결혼 제도로 묶이고 싶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은 자신들의 연애 관계를 서로에 대해 책임을 갖는 가족 관계로 이어가자는 합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관계에서도 새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책임은 서로 갖고 있으며, 스스로의 관계를 '가족' 이지만 '다른 형태의 가족' 이라고 지칭하였다. 함께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관계는 '가족' 이지만 '결혼을 통한 가족' 이 갖는 부담감으로부터는 자신들의 관계는 훨씬 자유로운 형태라고 지칭했다.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

꼭 경제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를 포기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결혼으로 아직은 묶이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못하겠어요. (중략) 아이 아빠의 의사가 지지해주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결

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냥 어느 날 얼떨떨하게 '누군가와 사귀다',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랑 '아기를 낳겠다' 내지는 '누군가의 남편이 되겠다' 내지는 '누군가와 함께 살겠다'라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게 그게 하나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나와 사귀겠다는 것까지 동의를 했지만, 아기를 낳는 건 동의하지 않았었고, 이런 거. 결혼하는 건 생각이 없었고 그랬는데 아기를 낳다보니깐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하다보니깐 남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고 따라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입장을 바꿔 놓고 봐도 그건 되게 싫을 거 같아. 그래서 스스로가 '누군가와 함께 살겠다', '가족을 이루겠다'는 거에 동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건 그 다음 순서인거 같아. (중략) 어떻게 보면 결혼과 동시에 다른 걸 모두 다 해야 하는 다른 가족의 형태보다 우린 좀 더 편리하긴 한 거 같아요. 일단 같이 생활한다는 그 중심에서의 내용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야하고 저기도 가야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운 거 같아요.

일면,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은 재혼 가족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방 파트너에게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가족' 으로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심층 면접에 임해준 여성 파트너는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꾸릴 만큼의 여건이 (커플) 각자에게 마련되어 있고 이를 지지하고 보완해줄 수 있는 관계망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현재 구성하고 있는 '가족' 이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해도 불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결혼을 전제로

하고 사권 건 아니었으니까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생겼을 때 내가 건강이 대개 안 좋았어요. 임신 중독 증세 비슷하게 증상이 생겨가지고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생활하기 시작한 게 같이 살게 된 거죠. (중략) 두 사람 사이에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끝까지 간다고 전제하지 말고 살아보자. 살아보다가 중간에 변수가 생길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하자' 뭐냐면 '나랑 큰애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관계라고.' 끝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활을 같이 하는 동안에 일정부분, 예를 들면 당신 50%, 나 50% 수입을 합쳐 생활비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건 동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진짜 둘이 사는 건 서로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책임지는 걸로 못을 박았냐면, 작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가라. 대신 나랑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에 끝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나는 경제적이든 사회적 지위든 아니면 내 자아나 자율성이든 간에 어쨌든 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쪽에 기대는 상태로 살림을 합쳤다면 내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컸을 거야.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을 텐데, 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나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스스로 경제력이 있었고 스스로 내 의사를 결정하는 거에 대한 훈련을 한 10년 가까이 해왔고 내가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약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된 결과나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스스로 무너지기보다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이 현재의 관계에서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함께 생활하는 현재는 경제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출산한 자녀와 관련해서는 혈연 공동체적 성격도 띠고 있다. 특히나 여성 파트너의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생활은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가족

으로서의 전략으로 보인다. 설령 평생을 지속적으로 함께 생활할 것이란 전제는 없지만, 함께 생활하는 한,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수입을 가진 남성 파트너와 특수 고용 계약직(텔레마케팅 업무)의 일마저도 하기 힘든 여성 파트너가 자신들의 수입을 합쳐 배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의 경우, 커플은 서로 헤어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의 노후 계획도 함께 세울 만큼 장기적인 전망도 함께하고 있는 운명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가족이다. 또한 현재 함께 살면서 드는 지출을 커플 중 수입이 있는 한 사람이 담당할 만큼 경제 공동체적 성격도 강하다. 이들 가족의 경우도 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어서,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나 보험이나 연금 문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내하고 있었다. 제도상의 불이익을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이 감내하는 이유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남성 파트너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남성 파트너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의미가 크다. 함께 생을 같이 한다면, 커플이 모두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커플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은 앞으로 두 사람이 경제력을 갖게 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는 두 사람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의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렇게 함께 생을 같이 한다는 운명 공동체로서 가족 관계를 합의한다면, 시기별로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가족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에 대응할 수 있다.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

피면접자1: 헤어질 생각은 안 해 봤어요. 많이 겪어 봤고. 제가 사소한 것에 싸우고 헤어지자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고 보면 그게 우스운 것이라구요. 서로 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헤어질 것 같아요.

면접자: 두 분이서 같이 집을 살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피면접자1: 다른 사람은 투자할 수도 있고요. 공동재산으로 하면 복잡할 걸요. 사소한 걸로 싸울 때도 그걸 거들먹거리며 치사하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싸워봐서 알아요.

피면접자2: 지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잘 와닿지 않는데 나중에 피부로 진짜 와 닿으면. 내가 이천만원 대학원비 냈는데 교육비 공제를 못 받는다 하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따로 넣으니까 장점도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집을 두 개 만들 수 있잖아. 둘이 경제력이 있으면 세금도 쉽게 탈루할 수 있고. 우리는 전혀 추적이 안 되잖아요. 경제력이 있으면...

3. 공동체 가족

이 연구에서 말하는 ‘공동체 가족’이란 혈연이나 애정적/성애적 결합이 아닌 관계가 중심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구를 뜻한다. 공동체는 현재의 혈연 중심적이고 커플 중심적인 가족 제도 바깥에서, 그 가족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필요와 의미를 가지고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비장애 여성 공동체, 장애 여성 공동체(현재는 각자 독립함), 장애 남성 공동체, 비장애 게이 공동체 등 네 공동체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네 공동체는 자신들이 구성한 공동체 관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 스스로를 모두가 ‘가족’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만큼 이들을 ‘공동체 가족’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관계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각 사례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름붙이고 인식하는지, 어떻게 현재의 관계를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는지 등을 중심으로 ‘공동체 가족’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 왜 공동체를 선택하는가? : 독립의 상황

이 연구에서 면담한 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비혼,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른바 ‘정상가족’의 이성애, 혼인, 혈연, 비장애 중심적인 이념 바깥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은 제도적 가족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그러한 가족 구성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그 바깥에서 다른 방식의 ‘같이 살기’를 기획한다. 그러한 방식 중의 하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가족’이 포괄하지 못하는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를 찾아 가거나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이들이 먼저 맞닥뜨리는 상황은 독립이다. 그러나 ‘본가’에서 나와 혼자 살아가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상황적 필요에 의해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사례12 : 레즈비언 공동체>

꼭 이 멤버로 같이 살아야겠다고 정하고 가구를 꾸렸다고보다는 각자 각각의 이유로 새로운 거주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마침 비어있는 방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결합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례9 : 게이 공동체>

같이 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에서 서로 필요했고 정서적으로도 통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가족을 이루어도 좋겠

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중략) (공동체를 구성하기 전 힘들었던 것은) 그거야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듯이 외로울 때, 말상대가 필요할 때 의지할 구석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집에 개새끼 한마리라도 뛰어오는 거랑 벗어놓은 간 옷이 그대로 날 맞는 거랑은 다르죠.

또한 이들의 존재 조건이 ‘본가’에서 살아가지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본가’에 있을 경우 가족들이 열악한 사회 복지 체계 속에서 그 개인의 사정을 전면적으로 인정해 주거나 배려해 주지 못한 상황도 발생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취급당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생활상의 편의가 있는 곳,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감이 있는 곳, 보다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동체를 꾸리기도 한다.

<사례11 : 장애 남성 공동체>

가족들도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다 배려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살기 좋은데가 있다면, 여기가 나한테는 환경이 집보다는 좋으니까, 가족들도 편하게 생각해요. (중략) 저희 집(‘본가’)이 3층 구조라서 혼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천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오니까, (1층이고 문턱도 없어) 혼자서도 나갈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런 걸 떠나서, 집밖을 나갈 수 있다는 게...(좋아요). 워낙 기본이 안 되어 있는 환경에서 지냈다 보니, 오히려 여기 오니 불편함이 없어요. 더군다나 활동보조인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좋아요.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예전 ‘본가’ 가족과 함께 살았을 때 불편한 점은) 내 시간이 없죠. 나의 시간이나 나의 결정권이 별로 없죠. (중략) 내 친구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 집에 와서 지내고 싶은 사람이 오려면 나보다는 부모님의 허락이 우선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오고 싶은 시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오느냐는 시간의 관리를

받는 거.

따라서 독립이라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꾸렸다고보다 독립을 위하여 그 과정으로서 공동체를 일시적으로 꾸리기도 한다.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독립과 같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같이 살게 된 계기는) 각자의 독립을 위하여. 저희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살아볼래? 그럴까? 그러자, 그래서 살게 되었는데.

<사례11 : 장애 남성 공동체>

(여기는) ‘자립생활체험실’이라고 (한다). 시설이나 집에서 몇 년째 있다가. 바깥을 전혀 못나가니까 (외부 활동을 못 하다가) 대부분 여기서 활동하다가 (장애인 자립) 센터에서 활동하게 된다. 10년, 20년을 그렇게 있는 이유가 밖으로 못나가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서 직업도 찾아보고 한다. 밖에 계신 분(공동체 구성원 중 한 명)은 직업이 있다. **뉴스(장애인인터넷신문)기자로.

(2) 공동체가 말하는 ‘공동체 가족’

이렇게 구성된 ‘공동체 가족’이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와 성격은 몇 가지 층위로 나뉜다. 이들은 ‘공동체 가족’이라는 제도 밖의 가족으로서 기존 ‘가족’과 유사하면서도 독특한 모습을 지니기도 한다.

① 공동 생활자

이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체 가족의 의미로 삼는 것은 우선 공동 생

활자의 의미이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 조건이 맞아 가구(家口)를 구성하여 함께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꼭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기도 한다. 특히 <사례11>의 경우는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알고 지내다가 같이 살자고 뭉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체험실’에 들어와 살게 된 경우여서 이러한 의미가 강했다.

<사례11 : 장애 남성 공동체>

가족이라기보다는 가구, 같이 사는 집, 이런 개념으로 살고 있어요.

이들은 결합이 크게 어렵지 않았던 만큼 해소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다.

<사례9 : 게이 공동체>

지금은 (특별히 불만이라든가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해체가 가능한 공동체라 생각하니까요.

<사례12 : 레즈비언 공동체>

언제까지 같이 살자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동체 가족’은 기존의 가족 제도보다 느슨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관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같은 주거 공간에 사는 사이만인 것도 아니다.

<사례12 : 레즈비언 공동체>

같이 살게 될 다른 한 멤버를 수용할 때에는 항상 나머지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며 지향과 이념 또한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

기는 해요. 그러므로 완전히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결합했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들은 그저 같이 산다는 의미에서의 룸메이트나 하우스 메이트와는 달리 어느 정도 같은 가치 지향이나 목표를 지니고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② 유대와 이해의 관계 : ‘가장 든든한 사람’

이 연구에서 접한 ‘공동체 가족’은 성별, 성적 정체성, 장애 상황 등을 바탕으로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인 공동체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의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단지 같은 장애인, 여성, 성적 소수자라는 동질감을 넘어 특수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다.

<사례11 : 장애 남성 공동체>

피면접자 : 혼자 있을 때에는 대부분 (본가) 가족이 있어도 가족 이랑 얘기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런(자신의 삶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면접자 :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커지는 건가요?

피면접자 : 그렇죠.

면접자 : (같은 장애인 자립) 센터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과는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피면접자 :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친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더 유대감이 있어요.”

<사례11>의 경우에서처럼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은 가까이에서 소통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보다 강한 결합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유대감은 매우 든든한 ‘인생의 지지자’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들면 멀리서 고민을 나눠요. 또 다른 인생의 지지자로 있는 거죠. 가족과는 다른, 혈연관계랑 다른. 집안에 (공동체 구성원이었던) 세 명의 대한 경조사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함께 참여해서 가고 든든하죠.

또한 이들은 ‘혈연 가족 못지않은’ 유대감을 지니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존의 ‘가족’ 과 별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례9 : 게이 공동체>

피면접자 : 형제가 시집장가가고 나와 살아도 형제이듯 우리는 게이 커뮤니티에서 재사회화 과정을 거칠 때 같이 자란 형제이기 때문에 혈연 가족 못지않은 유대감이 있어요. 친구와도 다르고 애인과는 다른….

면접자 : 그러면 해소될 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나요? 불편하다거나.

피면접자 : 멀리 살면 보고 싶겠죠. 형이 좋아하던 거 보면 생각날 거고. 그럼 사들고 가기도 할 거고…. 다른 가족처럼. (중략) 적어도 싸워서 찢어질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가족이라고도 생각하는 것이 친구들은 맘 안 맞아서 싸우면 룸메이트 하다가 갈라서지만 가족은 그런 이유로는 안 갈라서잖아요. 독립이 필요하다든가 직장 문제, 배우자 문제가 걸리면 그건 헤어지는 거고.

③ 열린 가족

한편 ‘공동체 가족’ 들은 기존의 ‘가족’ 이 구획하는 경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가족이 혈연이나 혼인과 같은 것으로만 구성되는 닫힌 형태가 아니라 그 경계가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미 이들의 공동체가 제도화된 가족에서 벗어난 형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고정적인 가족 개념을 지니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가족

을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열려 있는 구성체로 바라본다.

<사례9 : 게이 공동체>

면접자 : 가족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두 명? 세 명?

피면접자 : 지금 현재 상시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은 두 명입니다. 만 가족처럼 찾아와서 지내다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면접자 : 이를테면 누구?

피면접자 : 같이 사는 형의 애인이 일주일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요, 그 형의 옛날 애인도 일주일에 서너 번 왔던 거 같고, 이 년 전이지만. 친하게 지내는 지방에 사는 동생이 주말이면 와서 같이 지내고 가고요. 예전에 커밍아웃 때문에 어머니에게 쫓겨난 친구랑도 한 달간 같이 지냈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거의 일 년 가까이 같이 산 적 있었어요.

면접자 : 가족 구성원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네요.

피면접자 : 그게 저희 가족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면접자 : 그때 같이 살던 분들도 모두 서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나요?

피면접자 : 가족이라기보다는 식구라고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요. 뭐… 이성애자 가족의 경우 결혼해서 며느리나 사위, 사돈들과 같이 살 경우 가족이라고 하니까 저도 위에 언급했던 사람들은 다 일시적이지만 가족이었다고 생각해요. 넓은 의미에서요.

<사례9>의 경우, 이전에 함께 살았던 ‘친구’ 나 ‘친한 동생’ 등 여러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두 ‘가족’ 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피면접자는 혈연이나 혼인과 같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다고 해도 ‘가족’ 이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동체에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 이 얼마든지 새로 유입될 수 있고, 고정적이지도 않다.

공동체는 ‘가족’ 이라는 이름이나 경계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공동체 주변의 ‘지지 네트워크’ 를 공동체의 확장으로 보기도 하고, 가족이나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도 여긴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면접자 : 저는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가족 대 비가족이라는 관계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관계 말고도 살면서 아까 (말씀하신) 지지 네트워크(처럼)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에 준하는 다양한 관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굳이 가족 대 비가족으로 나눠야 할 것인가(하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피면접자 : 맞아요. 예, 저는 그래서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있고 그리고 제가 아프거나 어떻게 하면 지지 네트워크들이 언제든지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든든한 삶이거든요. 가족이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이런 게 아니라.

(3) 공동체의 생활

‘공동체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 같이 구속력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요인으로 묶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가정”이라는 기존 가족 제도의 모습을 띠지 않는다. ‘공동체 가족’은 이렇이러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지배하는 가족 제도의 외부에 존재한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가족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존의 ‘가족’이 보여 주는 생활은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이다. 이러한 모습은 장애인 시설에도 반영되어 시설장을 ‘아버지’로 하는 위계 체계가 놓인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실질적으로 장애인 시설의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은 공동체라고 불리거든요. 장애인 공동체 ‘우리는 한 가족’이래요. (중략)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가족의 질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가족의 질서가 어떻게 생기느냐, 큰형이 동생을 돌보고 둘째가 막내를

돌봄이 있다, 그건 서열의 질서가 있는 가족인 거죠. 자연스런 평등의 가족구조가 아니고 그런 가족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시설장이 주인이 아버지고 부모가 엄마의 역할, 언제나 아버지 엄마 자녀 가족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 가족’은 이러한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같이 살게 될 다른 한 멤버를 수용할 때에는 항상 나머지 두 사람이 함께 결정” (사례12 : 레즈비언 공동체) 듯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공동체를 구성한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장애인들이 모여서 평등하게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폭력은 절대 안 되” (사례12 : 레즈비언 공동체)는 등의 상호 존중, 사생활의 보호의 원칙을 세우고 “설거지는 어떻게, 빨래는 어떻게” (사례9 : 게이 공동체) 등의 규칙들을 구성원들 각자에 맞게 자치적으로 만들어 낸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전화 와서 ‘언니 나 오늘 못 들어가’ 그러면 묻지 않기, (웃음) 왜 못 들어가는지 안 묻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자기가 말하기 전에는 안 물어보기. 그런 규칙을 정했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함께 식사하거나 얘기를 꼭 하기, 자기의 상태 이런 정도로 얘기하기. (중략) 한 친구는 빨래에 예민하고 (그래서 빨래를 담당하고) 아니면 냉장고 관리(에 관심이) 있으면 냉장고 관리하고.

(4) 공동체 가족의 의미: 가족 제도 외부의 대안적 공동체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동체 가족’ 들은 단순히 거주 생활을 함께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들은 동성애자나 장애인과 같이 ‘정상가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유된 조건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통한 독립을 기획한다. 독립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립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정서적, 물리적 유지 체계와 연대망을 꾸리는 것이다.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의 공동체 참여는 소수자들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대안적 전략이기도 하다.

물론 이 네 ‘공동체 가족’은 가족 구성의 적극성 정도도 다르고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 맥락에서도 서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게이 공동체인 <사례9>는 가족을 구성하기 이전부터 ‘형제’와 같은 관계였었던 만큼 공동체적 유대감이 매우 강하고 스스로를 ‘가족’이라고 호명하는 반면, 장애 남성 공동체인 <사례11>의 경우는 ‘자립생활체협실’에 ‘계약’의 형태로 들어와 구성되었으며 스스로를 ‘가족’이라고 명명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네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함께 살아가기를 공동으로 기획함으로써 서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점, 같은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서로가 비슷한 처지이거나 서로를 잘 이해하는 상황에서 동질감을 가진다는 점, 독립과 같이 유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함께 생활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한시적이건 인생 전반에 걸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경우 언제든지 같이 살 수 있고 결합할 수 있다는 ‘열린 가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가족 구성이 평등성과 주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구성원들이 민주적 생활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가족’은 폐쇄적이

고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의 바깥에서 오히려 ‘정상가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대안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 준다.

4. 변화하는 가족상

사례 연구에 포함되는 1인 가구, 커플 중심 가족, 공동체 가족의 구성원들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모두 비혼자이다. 1인 가구의 경우를 제외하면, 누군가와 함께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성애자나 공부(公簿)상 성별정정을 하지 못한 트랜스젠더의 경우, 비혼은 선택이 아니라 결혼으로부터 배제된 비혼일 수 있지만, 그 외의 커플 중심 가족이나 동성애 가족은 비혼의 삶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비혼자로 배제된 사람들이나 적극적인 선택으로서 비혼을 꿈꾸며, 다양한 형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혹은 ‘가족’들이 있다. 그러나 이성애 중심의 법적 혼인과 혈연관계가 전제된 ‘정상가족’만이 제도화된 사회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애초에 배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차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과 다양한 삶의 방식에 의해 동질적이라 여겨져 왔던 집합적 관계로서의 ‘가족’은 변화한다. ‘가족’은 그동안 사회에서 역할과 책임, 기능으로서 여겨졌던 장소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놓여있는 사회적 환경 아래-동성애자이건 트랜스젠더이건, 장애인이건, 한부모 가장이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는 관계로서, 자기 전략으로서의 나름의 삶의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주목해볼 때, ‘전문화 된 형태로서의 가족’은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고, 개인에게 개별화된 맥락으로서 ‘가족’이 등장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들이 전하고 있는 ‘가족 이야기’는 각 사례별 가족들이 놓인 사회적 환경과 가족구성원의 가족 이해와 자기 전략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개인이 놓인 사회적 환경과 자기 의미화 속에서 ‘가족’이란 공간과 관계는 정형성을 탈피하여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재구성된 ‘가족’ 속에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관계로서의 가족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그 결과 ‘전형화 된 가족’은 다양화될 수 있다. ‘전형화 된 가족’이란 기반 아래 묶여있던 ‘가족’의 공통 정의와 기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개인에게 개별화된 맥락에서 ‘가족’이 재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은 개인에게 유의미한 관계로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수많은 다양한 가족들 중 제도 밖에 있는 가족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가족 이데올로기와 어떠한 상호 작용을 통해 가족과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다.

III. 가족상황차별 사례

가족상황차별은 사회·문화적인 차별에서부터 제도적 차별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사례로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기존 사회의 ‘정상가족’이 배제하는 다양한 맥락을 짚어냄으로써 차별의 구체적인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문화적 차별

가족형태나 가족상황으로 인해 받는 차별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회·문화적인 차별’이다. 소위 ‘정상가족’에 편입되지 않음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시선, 주변 관계로부터의 편견, 이성 간 결혼 중심 문화로부터의 배제로 드러난다. 이러한 차별은 비혼 상태를 전제로 하여, 성별 및 성적 지향, 장애 유무에 따라 각각의 특수한 맥락을 드러낸다. 성별이나, 성적 지향, 장애 유무에 따른 각 차별 지점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점을 전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본 장에서는 정상가족에 편입되지 않음으로 인한 총체적인 사회·문화적 차별 지점을 드러내고,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성소수자, 장애인)에 따른 차별의 맥락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1) 비혼 상태를 배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족상황차별

제도 밖의 가족(1인 가구, 동거 커플, 공동체)들이 겪는 사회·문화적 차별은, 우선적으로 ‘결혼하지 않음’에 대한 다양한 편견이다. 특히 스스로 ‘비혼’을 선택의 영역으로 긍정하는 경우 미완의 의미를 담은 ‘미혼’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상가족에 편입되지 않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결혼에 대한 중용을 받거나, 미성년 취급을 받게 되는 문화적인 편견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1 : 여성 1인 가구>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쉽게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변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결혼 안한 여자에 대해 끊임없이 가십거리처럼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과 연결시키려고 하거나, 엮어주려고 하면서 내 의사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문화적인 편견이 불편하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독립된 한 개인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와 결혼시켜야 하는 미완의 존재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무척 불쾌하다. 이런 시각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례1>은 40세의 비혼 여성이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끊임 없이 결혼을 종용받거나, 선불 것을 강요당하기도 하는 등 불쾌한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주변에서의 결혼 종용은 단순한 정서적 편견의 영역을 넘어, 실제 업무 과정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혼자들이 부양가족으로 인해 업무에서 빠지게 될 경우 나머지 몫을 비혼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비혼 여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차별은 직장 내에서 기혼 여성들과의 미묘한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여성들이 어려운 일을 비혼 여성들에게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결혼한 여자들은 애가 아프다거나 시부모님이 아프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휴가 내거나 일찍 퇴근하는데, 나는 그럴 핑계가 없어.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다고 해서 일찍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겠어? 나한테 소중한 존재들인데 이성애자들처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거지.

비혼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함께 사는 동반자나 반려 동물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화는 파트너와 관련된 경조사를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 있는 가족 체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다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또한 경조사비 문화에 있어서도 비혼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용을 각출당하기만 하는 입장에 서기도 한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 비혼자들은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잖아. 내가 비혼식을 하거나 동성 애인이랑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기혼자들이나 가족들이 축의금을 줄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할 사람한테는 경조사비를 아예 건지 않거나, 퇴직할 때 경조사비 낸 만큼 돌려주거나 했으면 좋겠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남의 결혼식이다, 애 돌잔치다 이런 걸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 일방적으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나 이런 건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런데 내가 결혼하지도 않을 거고 축의금 돌려받을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비혼 여성에 대한 차별은 레즈비언의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작동한다. 결국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인한 차별은 성적 지향을 넘어 '비혼 여성'이라는 틀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에게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 역시 존재하는데, 결혼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혼을 원치 않는 남성 역시 비정상적 존재로 치부된다.

<사례2 : 남성 1인 가구>

일단 학교 동료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압력이 많죠. 그것 빼고는 아직까지는. 결혼을 빨리 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죠. 학교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음... 이야기를 제가 직접 막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다지 없는데 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음... 뭐랄까 약간 마땅치 않아 하는 눈치죠.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응인 거죠. 생각을 지지한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깐 연애나 이런 걸 자유롭게 하지 위해서이냐 같은 반응이 오거나 하죠. 자유 연애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꽤 불편하더라고요.

<사례2> 경우, 결혼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선택했으며 자신의 신념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 동료들로부터 결혼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것은 물론, 결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자유로운 연애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주변으로부터의 오해와 편견은 비혼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결혼 위주의 가치관에 의해 재단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혈연 가족 체계 내에서 받는 편견과 차별 역시 존재하는데,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성인이 아닌 존재로 간주되거나 끊임없이 결혼 중용을 받게 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례2 : 남성 1인 가구>

친척들이 결혼을 빨리 하라고 하시는 편이에요.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단 최대한 가지 않죠. 명절 때나 이런 때는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 올라온 이후로는 거의 간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일단은 서로 스트레스나간 간단히 전화로 하거나 하지 가족 모임은 될 수 있으면 안 가죠. 아직까지는 집안에서는 결혼하지 않겠다, 라고 말은 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고 집안에서는 언젠가는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기존 혈연 가족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비혼에 대한 문화적 편견은 비혼들을 기존 가족 체계에서 배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비혼들은 기존 혈연 가족과 되도록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가족과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사례1 : 여성 1인 가구>

명절 때 자주 가지 않고, 이따금 어머니 생신이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만난다. 명절 때 오빠나 언니들이 집에 내려와서 가사를 돕기 바랄 때가 많은데, 내 나이가 벌써 40인데 그런 뒤치다꺼리 하고 싶겠나. 나도 내 할 말 똑바로 하고, 가족들도 될 수 있는 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나는 가족들과 그다지 친밀감이 있는 편은 아니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서로 가족들끼리

피해를 주지 말자는 주의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오빠 같은 경우 장남에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결혼하지 않은 막내 여동생에 대해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 혼자 있기 때문에 가족들 행사에 있어서 개인 스케줄이 별로 존중받지 못할 때도 있다.

가족들 사이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애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끊임없이 가족들의 골칫거리나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선이 사라져야겠지만 가족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다.

비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문화적 차별은 기존 가족 체계 내에서의 배제에서부터 학교 및 직장 내 동료들 사이에서 받는 편견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물론 업무 배분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차별을 받게 된다.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 기존의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별에 대해서는 개선에 대한 의지보다는, 관계에 대해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기혼자들과의 문화적 차별은 단순한 편견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상의 일 배분 문제까지 연결되는 등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1 : 여성 1인 가구>

업무에 있어서 결혼한 여성들의 뒤치다꺼리를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배려와 부가 노동으로 채워야 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잘 분담되었으면 좋겠다. 업무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결혼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구조가 불편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인사 조건에 있어서는 애 아빠, 애 엄마인 기혼자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또한 결혼한 직장 동료들이 결혼하지 않은 동료를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인식들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직장 내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별은 단순한 언어적 차별의 수준을 넘어선다. 비혼자를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기혼자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조사비의 경우 비혼자들은 돌려받지 못할 돈을 동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각출해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비혼자들은 기혼자와의 구도에서 경제적 부담과 직장 내 업무 부담이 대등한 관계로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특히 비혼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 편견이 여성들 내부의 분열을 야기할 뿐 아니라 원치 않게 기혼/비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2) 성소수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족상황차별

기존 사회의 ‘정상성’은 비장애, 이성애, 혈연 중심의 가족 체계를 통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성’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각종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문화적 차별은 다양한 맥락에서 작동된다.

성정체성에 대한 편견 역시 가족 형태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함께 사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커플의 경우 각각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편견에 노출된다. 특히 강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맺으며 살아가는 성소수자 가족의 경우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숨기면서 주변 이웃과 관계를 맺거나, 가족들에게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

피면접자2: 그런 것 같아요. 호텔에서 방 줄 때 남자 둘이니까 싱글 침대로 주겠다고 하면 저흰 필요 없다고, 더블 주라고, 그러

면 낮 뜨겁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는 바람에 게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처럼 집을 구할 때 남자 둘이 집을 구할 때에 말하기 어색했던 것 같아요.

피면접자1: 대형마트 갈 때 서로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 관리인이 있으면 우린 그러지 못하지.

피면접자2: 대형마트에서 팔짱끼고 다녀도 거긴 모르는 사람들이데, 집주인은 자주 보는데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당연한 거지.

게이 동거 커플의 경우 남성들의 스킨십에 민감한 사회분위기상,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숙박업소에 가거나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둘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

대체적으로 주변에 집사람(파트너)을 다 그렇게(부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공공 기관이나 은행이라든지 보험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친구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죠. 공공 기관 같은 데 갔을 때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물으면 그럴 때 “친구예요”라고 얘기를 해야 했지요.

저는 호르몬 한지는 2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도 외형이 좀 여성스럽고 여자 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남자로는 안 보고 남자 같다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가게하면서 부부가 하는지 알면서도 손님들이 여자 손님들이 스욱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 같아. 여자 아니에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말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트랜스젠더 커플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화적 차별은 함께 존재한다. FTM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公

簿)상 성별 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파트너와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해 공공 기관이나 일반 직장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로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피면접자는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성정체성을 묻거나 확인하려고 할 때마다 파트너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공공 기관이나 은행 등에 방문할 경우에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다양한 편견의 시선을 받기도 한다.

기존의 가족 개념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차별은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감당해내야 하는 문제로 다가온다. 이러한 차별은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 없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 및 사람들의 인식 개선, 성소수자 혐오(호모포비아) 방지에 대한 법적 조치와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장애인을 배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족상황차별

‘본가’ 또는 시설을 나와 독자적, 혹은 공동체 단위로 자립하는 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정상가족’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화적 차별과 동시에 ‘장애’로 인한 이중의 편견에 직면하게 된다. 자립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일상에서 느끼는 차별은 장애의 종류, 성별,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장애 여성들의 경우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처음에 장애 여성들끼리 함께 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반대했죠. 저는 그것도 왜냐면 비장애인하고 너를 보호해줄 누구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장애인끼리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 거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먹고 살 거냐, 생계 걱정 어떻게 살 거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질렀었어요, 다 반대했거든요. 다른 친구들 집도 반대하고 세 명 다 가족들이 반대해서 한 친구는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서 온 가족에게 회유하는데 편지를 쓰고, 한 친구는 난 나간다 뿌리치고 오기도 하구요.

장애 여성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 피면접자는 처음 공동체로 자립해 나올 때부터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보호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장애인이 가족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되는 결과를 낳는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일단 궁금해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왜 나와서 살지? 왜 식구들과 안 살고 나와 살지? 좋은 데 시설 있는데 왜 힘들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리고 와서 우리집 딱 와보고 “집이 너무 깨끗하다, 우리집보다 더 깨끗하네” 하거든요. 장애 여성들끼리 살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나름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세 명이 살면은. 각자가 가진 역할이 있는 건데 약간이라도 걷는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살고 있다고 보이는 거, 그런 게 불편하죠.

장애 여성 공동체의 경우 장애인이 시설이나 혈연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것에 대한 편견과 우려를 듣는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보살피는 역할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위의 시선은 장애 여성 공동체를 하나의 수평적이고 소통 가능한 ‘가족 체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사람과 의존하는 사람이 구별되는 구조처럼 보이게 한다.

또한 장애 여성들의 경우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지지 네트워크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웃관계가 단절된 도시 생활에서 장애 여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동네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장애인에게는 지지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독립한 장애 여성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그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문제가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나가거나 겨울에 갑자기 동파되거나 수도가 얼어 버리거나 그랬을 때 꼼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이 밤이라도 쫓아와서 보일러를 어떻게 해 준다거나 전기 장판을 구해준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했지요. 저희가 살면서 지역에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폭력, 그런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같은 공감하고 있거나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리면서 이 사람이 혼자 아니라고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그런 지지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음식 배달 오는 사람까지도 불안하거든요. 우리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철물점의 아저씨가 형광등을 고쳐주러 와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누구한테 편하게 와달라고 얘기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특히 장애 여성 공동체의 경우 ‘장애’가 있는 ‘여성’ 들만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치안에 대한 문제 및 각종 여성에 대한 폭력에 더 큰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장애여성들로만 구성된 가족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불완전’, ‘비정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점은 피면접자의 말처럼,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일반 세상으로 나와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고 일상적 지지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10>의 면접자는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자신의 생활의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집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고 한다. 장애 여성은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내 친구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 집에 와서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이 오려면 나보다는 부모님의 허락이 우선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오고 싶은 시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 오느냐는 시간의 관리를 받는 거죠. 내가 술을 마시고 들어가든 내가 뭘 하든 이런 거보다는 부모님의 통제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 세 명이 같이 살면서도 끊임없이 했던 말은 그런 거였어요. “관심이 아니라 관리가 되지 말자” 관심과 간섭이 중간선을 넘나드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간섭하지 않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 들을 어떻게 선을 잘 그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장애에 대한 편견 역시, 정상성의 범주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정상성’을 기반으로 한 ‘정상가족’은 생계를 부양하는 이성애자 남성 가장을 필두로, 가사 전담자 혹은 경제적 조력자로서의 여성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상성은 혼인 여부, 성정체성, 장애를 넘나들며 일상과 공적 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작동한다. 이러한 정상성의 논리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별은 각종 사회 제도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제도상의 차별은 조세, 준조세, 고용, 재산, 의료, 입양, 주거 등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2. 제도상의 차별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 살고 있다면, 어떤 가족의 형태든지 제도상의 차별 경험을 가지게 된다. 비혼 여성이나, 비혼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나 공동체, 트랜스젠더 커플, 장애인이 포함된 커플 등 거의 모든 사례에서 차별적인 경험들을 짚을 수 있다. 사회 제도별로 조세, 준조세, 고용, 재산, 의료, 입양, 주거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례별로 차별들을 살펴보자.

(1) 조세 및 준조세

세금 지출 방식(건강 보험, 국민 연금, 기타 세금과 수당)과 세금 부담의 차별(소득 공제, 종합토지세, 국민 연금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사례 연구 대상의 개인적 직업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례 연구 대상은 비혼 상태이어서 정상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

저는 학원 강사를 아르바이트로 하거든요. 자영업으로 분류되는데 아무것도 혜택 같은 게 전혀 없죠. 예를 들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면. 아무튼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세금 환급이나 소득 공제 등은 하나도 없죠. 동일 수준에서 내는 4인 가족 사람들 보면 빠지는 게 많고 환급받는데 저는 더 내거든요. 그게 그런 거 보면... 건강 보험료도 아무튼 많이 내죠.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

애가 만약 나의 (등록된) 부양가족이었으면 의료 보험을 직장에서 내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따로 내지요. (중략) 또 소득 공제 같은 거. 부양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많이 차

이 나가거든요. 부부라면 혜택을 받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소위 ‘정상가족’의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함께 살더라도 각각 단독 세대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다. 그런 탓에 경제적, 정서적 공동체를 꾸리고 있어도 국민 연금이나 건강 보험 등은 개인 단위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가스 요금 등은 부담하지만 이것도 누구 한 사람의 독립적 명의일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이성애, 혈연, 결혼중심의 차별적인 상황을 말해 준다. 사회적으로는 독신의 증가, 단독 세대의 증가로 보이게 되고, 이를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의 증가, 즉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는 결론을 도출하곤 한다. 그러나 단독 세대의 증가는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연대 의식이 부족한 파편화된 개인의 증가가 아니라 ‘정상가족-부양자가 있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결과이다.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

4대 보험은 남편 이름으로 남편 것은 나가고, 아이랑 나는 기초수급권자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지출이 된다. 재산상의 혜택은 전혀 받고 있지 않다. 기초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받을 수 없다. 내가 돈버는 뭔가를 하려면 기초수급권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동거 커플의 경우는 다른 맥락이 있다. 기초수급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 때문에 이들은 부부로서 혼인 신고도 할 수 없다. 혼인 신고를 할 경우 부양자가 생김으로서 기초수급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제도적으로 가족으로서 인정받기가 어렵다. 다른 ‘제도 밖의 가족’ 들도 모두 미

등록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은 세제상의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2) 고용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 “왜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외모가 일치하지 않느냐?” “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느냐?” 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들을 피해 실사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근무 상에 있어 기혼과는 다른 처지에 놓인다. 경조사 적용 범위, 육아 휴직 등 기혼자들이 적용받는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부양가족이 없는 좀 더 자유로운 미혼이나 독신이라는 이유로 근무 시간상의 불리한 배치, 연장 근무 등이 할당되기 쉽고 특히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승진 대상에는 밀려나거나 양보를 요구받는다.

특히 호르몬 투여나 수술 등으로 외모의 변화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직업 선택에 있어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 택배, 퀵 서비스와 같은 배달업 등 위험하고 수입은 낮지만 까다로운 취업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직종이나 트랜스젠더 바와 같이 유흥업소 등이 선택지로 남게 되기가 쉽다. 또한 혼자 사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없이 사는 것으로 쉽게 간주되거나 장애인이므로 고용해주는 것만으로 특혜를 베푸는 양 지나치게 많은 근무 시간과 업무량을 부과하는 등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노동력 착취와 자아실현 불능의 상실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3) 재산

재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구성원들이 각자 혹은 함께 유지하고 불려

나가는 것임을 상기해볼 때 가족 단위로 ‘공동 재산’ 인정을 받지 못하여 각자가 재산 관리를 해야 하는 것부터가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공동 재산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조건 속에서 각자의 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앞서 살펴본 조세상의 차별을 포함하여 재산 분할, 유산 상속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가족 관계의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진다.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

면접자: 부동산, 저축 보험 같은 경우, 명의는 따로?

피면접자: 관리는 내가 다하고, 공식적인 것은 따로따로.

면접자: 명의는 다르지만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나?

피면접자: 그렇다.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략) 공동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4) 의료

사례 조사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차별이 바로 의료상의 차별이었다. 이는 의료권이 단지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라는 관계의 시스템상의 매우 강력한 관리 요소임을 눈치 채게 한다.

제도 밖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가족 구성원이 아프더라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급박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한 개인이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의 결정권을 가지고 환자의 상황에 대해 들을 권리, 입원 시 면회할 수 있는 권리, 수술 시 이를 동의하고 보증할 수 있는 권리, 임종 시 입회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혼인 등록을 한 배우자와 혈연 가족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점과 동시에 치료비를 누가 낼 것인가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러한 보호자 시스템은 결혼 제도의 강화와 종속을 만들어낸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갑자기 같이 살던 사람 아팠어요. 우리가 가서 간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략) 특히나 독립해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또 막판에 가족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발생해요.) 간병(할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보호자 사인이 필요할 때.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혈연) 가족이 와서 사인을 해야 되고 (혈연) 가족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본가') 가족이 중간에는 그냥 있고 우리가 의사랑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 빨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가족들 연락이 안 돼서 그냥 핸드폰만 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5) 입양

입양을 둘러싼 차별은 단순히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맥락에 놓여있다. 결혼한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 최상이며 그 외는 모두 비틀린 양육으로 간주되므로 단지 법적으로 비혼자도 입양을 할 권리를 획득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제도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결혼 여부에 따른 차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제 입양 기관에서는 '정상 부부'가 아니면 관례상으로 입양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결혼 밖의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편견이 강하므로 이 역시 극복하기 쉽지 않다.

출산, 입양, 양육이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할 때, 입양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

(독신자로서 입양을 하려면) 내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 하고, (중략) (입양한 아이에게) 내 부모가 양육자가 되고 제가 부양자가 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쪽(입양 기관)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생각보다 재산상의 요구는 많이 요구하지 않는데 (중략) 이제 뭐 입양 보내는 사람이 보통 10대 미혼모잖아요. 10대 미혼모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누구한테 입양되었으면 좋겠느냐, 해외, 국내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미혼모라서 못 키우는 건데 싱글마더한테 아이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올 기회는 없는 거고. 황당했던 게 내가 10년 정도를 같이 산 남자 친구가 양육자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원천적으로 아이 입양을 못하는... 사실 70대 노인네들보다 훨씬 더 부양 능력, 양육 능력이 큰데... (중략) 힘들 거 같긴 하더라고요, 입양은.

(6) 주거

주거는 안정적이고 안전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은 재산으로서의 의미도 크므로 구입과 처분도 용이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소유와 관리 등의 권리 역시 명확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제도 밖의 가족들이 평생 가도 꽤 많은 아파트에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단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택 청약의 경우 가구원의 수가 매우 중요하다. 청약 가점제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장애인 공동체나 동성 간 공동체의 경우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구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 마련에서 제도 밖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또한 서류상에 부양자가 없는 경우나(단독 세대주)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 임대 주택에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므로 장기 주택이 아닌 일반 월세 주택을 택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생활비를 더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임대를 잘 주지 않으려는 것 역시 장애인들의 독립과 보다 좋은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다.

주거 구조 역시 결혼 가정을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 공동체 등 공동체를 꾸렸을 때 보일러 작동 등의 사소한 문제부터 불편함을 경험한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면접자: 주거 관련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거 형태에 있어서 편하겠다는 것이 있다면?

피면접자: 장기 임대 주택이 활성화되어서, 내가 장기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세나 월세는 계속 올라가는데, 평생 가다가 아파트에 한 번 살아보지 못하고, 부모님이랑 살 때는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중략) 그런데 레즈비언 커플로 살면 부모님한테서 독립을 한 거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이 큰 거지.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주택이 생기면 도움이 되겠다.

3. 가족구성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한국 사회에서 가족 구성에 대한 인정 체계는 법적 결혼과 혈연, 이성애주의¹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족 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공동체의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가족구성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인식한다.

18) 이성애주의(heterosexism)이란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오로지 이성애만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

(1) 성소수자

현행 가족 체계는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성적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한다. 그리고 특히나 동성애자 커플의 경우에는 관계가 우정으로만 치환이 되어서 가족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며 인정받지 못한다.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성간의 우정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동성애를 이성애와 달리 우정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이것이 성적체성으로 인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다.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도 차별인 거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차별 아닌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상가족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제도상의 차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게이 동거 커플인 <사례8>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면접자 : 인구 조사가 왔을 때 어떤 관계냐, 그런 질문 받거나 한 적 없었어?

피면접자1 : 센서스 왔을 때 그런 질문 한 사람은 없었어.

피면접자2 : 친구 둘이 사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서울에.

레즈비언 동거 커플의 경우, 3년 정도 같이 살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결혼하지 못한 여성 둘이 사는 친구 관계로 인식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동반자나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친구

관계로 규정되는 것이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면접자 : 레즈비언 친구들 말고 헤테로(이성애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한테 서로를 소개한 적 있는지?

피면접자1,2 : 없어.

피면접자1: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준 적 없고. 내가 친구랑 같이 사는 건 알아. 근데 그 친구랑 그런(애정적) 관계인 건 모르는 거지.

피면접자2: 나도. 주변 레즈비언 친구들 말고는 소개시켜 준 적 없어. 그냥 친구랑 같이 산다는 거.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더라. 레즈비언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냥 눈치인데, 지금 직장에서 내가 친구랑 같이 산다니까 약간 그런 눈초리를 보낸 사람이 있어.

실형 사회가 두 사람을 친구 관계가 아닌 커플 관계로 인식하더라도, 이들 관계를 보통의 이성애자 커플이나 혈연 중심의 정상가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파트너를 소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른 여성과 성애적 관계를 갖는 레즈비언으로 인식되는 것과 이성애 사회에서의 삶의 동반자로서의 부부로 인식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진다. 여성 둘이 산다는 것은 가족의 수위에 도달하지 못하는 단순한 우정 관계이거나,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자로 이 두 가지 관계로만 사회적으로 해석된다.

여성과는 달리 남성들끼리 동거로 할 경우는 다르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간의 관계가 쉽게 우정으로 치환되는 반면, 남성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의 관계가 불쌍한 존재로 규정되거나 그들의 모습 자체가 혐오적인 시선을 받게 된다.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커플>과 같은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커플은 공부(公簿)상 성별 정정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동거를 했어도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가족을 인정하는 경우는 성별 정정이 이루어진 이성애자 커플인 경우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상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성별 정정이 되지 않은 트랜스젠더 커플인 경우 결혼중심, 혈연중심, 이성애중심주의로 묶여진 정상가족 범위에서 배제된다.

(2) 공동체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는 하나의 ‘가족’의 모습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가족’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시설이나 혈연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기 위해서 장애인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장애인 공동체가 결혼 중심이나 혈연 중심이 아니며, 장애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장애인 공동체는 독립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왜 나와서 살지? 왜 식구들과 안 살고 나와 살지? 좋은 데 시설 있는데 왜 힘들게 살까 어떻게 살까.

장애인 셋이서 모여 살고 있는 장애 여성 공동체의 피면접자는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보호대상으로만 여긴다고 말한다. 이렇듯 장애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 혹은 비정상의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장애인들끼리 모여 사는 것을 독립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편견은 한 사람을 온전

한 존재로 보지 않고 무엇인가 모자란 존재,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정상성을 가진 가족이라는 개념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사례9 : 게이 공동체>

면접자 : 부모님은 친한 형이랑 같이 산다고 알고 있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또 누나는?

피면접자 : 내 애인인줄 의심했어요. 그리고 집구석 보고 속상했다고 했어요. 다만 그 형이랑 이야기해보고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셨으므로 좀 안심이 된 듯 했어요.

게이 공동체의 경우 함께 사는 사람이 애인일거라 가족들에게 의심받아야 하며, 그런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숨기거나 따로 사는 척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의 친밀성은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혈연 중심이나 가족 중심이 아닌, 남성들과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모여 사는 것에 대해 사회는 불편한 시선들을 던진다. 사회가 이들을 보는 시선은 가족으로 인정받기보다는 피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비정상”의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혈연 중심적이고 결혼 중심적이며 이성애 중심적인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회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에게 가족구성권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 성소수자로서 구성한 가족들과 ‘공동체 가족’ 들은 이러한 것을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V. 개선의 욕구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제도 밖의 가족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변화의 욕구를 지닌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어떤 점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지, 또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우려점은 무엇인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1. 개선의 방향

제도 밖의 가족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지점들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점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부터 일상적 사회문화적 체제나 인식에까지 넓게 걸쳐 있다. 그만큼 이들은 개선의 방향이 사회 구조의 전반적이고 전면적인 변화여야 한다고 인식한다.

(1) 가족 형태에 따른 세제 등의 제도적 차별 해소

제도 밖의 ‘가족’ 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제도화된 가족, ‘정상가족’ 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는 제도적 차별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국가가 ‘정상가족’ 만을 진정한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그 형태만을 권장하고 강화하려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실질적인 차별에 노출된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결혼 안 한 여자들끼리 사는 데 있어서 일단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는 세제 혜택에서의 차별이 없어져야지.

특히 세제 혜택이라든가 국민연금의 상속, 의료보험 부담에 있어 받는 차별들을 많이 언급하였다. 특별히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제도화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세금에 있어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소수자 소득 공제를 없애고 다자녀 소득 공제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세금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도 아닌데도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가족들을 차별한다고 지적한다.

<사례1 : 여성 1인 가구>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과의 문제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선택할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런 방식으로 차등을 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독신이든 독신이 아니든, 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건 혼자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교육비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산아 제한을 했다가, 출산 장려를 했다가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로 정책을 바꾸는 건 국가의 책임 아닌가요. 왜 그것을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국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정상가족’을 강화하려고 하는 정책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복지 시스템 역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가족’만을 전제하여 막상 다양한 가족들이 그 현실에 맞게 지원받지 못하는 것 또한 제도적 차별로 인식된다. 사회 복지가 각 가족의 특색에 맞도록 지원되는 것 역시 가족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

기초생활수급권이나 사회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라는 기준으로 모든 걸 통합해놨잖아요. 특징이 따로 없어요. 장애인 가족인지 노인 가족인지 소년소녀가족인지 이게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가족 특유의 고민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 강화돼서 지원이 되는 게 맞는데, 그냥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를 통틀어서 다 집어넣다보니깐 그 가족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도 안 되는 채로 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 지점은 그게 특화되어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원이 되길 바라는 거고.

(2)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제도적 보장

3장의 차별 사례에서도 설명되듯이 제도 밖의 가족들은 객관적으로 하나의 '가족'을 꾸리고 있음에도 가족구성권 자체가 박탈되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절실하게 느끼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차별이 없도록 이들은 대안적인 가족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

대안가족제도가 정착되면 좋겠어요. 혈연만을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지 말고, 장애 여성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형태로 살고 있잖아요.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인정해 달라고.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

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면 동성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안정될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살면서. (중략) 그런데 우리는 동거잖아요. 말 그대로. 엄마도 저한테 동거라고 하더라고요. 동거 개념. 동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수많은 남자들이 왜 결혼을 해요? 그냥 동거하면서 애 낳고 살면 되지. 일단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일 뿐이지 금전적인 것 한두 가지 따져서 결혼할 필요성을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혼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보는, 뭐라고 할까요, 법적인 부부다, 우발적으로 싸워서 우습게 헤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녜요. 한번쯤 더 생각해 보는 기회도 생기고. 그런 것을 널리 본다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되면 우리 부모님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 제도적으로 가족구성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동성 결혼’이나 ‘생활동반자 등록제’와 같은 가족구성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금전적인 것 한두 가지 따져서 결혼할 필요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사례8 : 게이 동거 커플>)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느낌, 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충족감,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떳떳할 수 있음 등도 이들이 가족구성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이다.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

지금은 가족구성권을 만들어야 하구요. (중략) 이성애자가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야 하긴 하죠. 제 파트너처럼 가족을 이루는 게 나의 로망이었다, 이런 것을 이루게 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못하면 피해지.

<사례4 :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

(혹시 공부(公簿)상 성별 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동성 커플 등록 제도가 생기면 등록하겠냐는 질문에) 난 했으면 좋겠거든요.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왜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공공기관이나 어디 갔을 때 그냥 떳떳하게 집사람이라고 밝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중략)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 치지만, 그렇게라도 인정을 받는다는 게 떳떳한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3) 가족= ‘정상가족’ 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제도 밖의 가족들은 ‘정상가족’의 형태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비정상’의 낙인을 찍힌다. 가족은 무조건 ‘정상가족’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결핍된 가족이라는 편견에 시달린다.

<사례7 : 이성애자 동거 커플>

(큰애가) ‘나하고 우리 동생은 아빠가 달라,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이야’라고 말할 때 부담이 적어지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게 어렵고. 보니까 지(큰애)가 제일 마음이 통하고 내지는 입장이나 처지가 비슷한 지 친구 몇 명한테만 말을 해요. 자기의 그런 상황을. 가장 큰 비밀인 것처럼 가족의 형태를 얘기하는걸 보면 애한테 있어서는 아직도 그게 가장 큰 짐인 거예요.

아동들은 이러한 인식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성인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형태가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비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가족’의 형태가 아니면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편견을 사회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가족 형태를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편견 때문에 제도 밖의 가족들은 스스로 가족과 관련한 상황에서 위축되고 부담을 느낀다.

한편 이러한 편견은 제도 밖의 가족들이 입양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양육은 ‘정상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만나본 많은 가족들—한 명이 트랜스젠더인 동거

커플, 게이 동거 커플, 게이 공동체, 이성애자 동거 커플 등—은 입양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그러나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가족들에 대한 양육과 관련한 편견은 이들의 입양을 가로막고 있다.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

이제 뭐 입양 보내는 사람이 보통 10대 미혼모잖아요. 10대 미혼모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누구한테 입양되었으면 좋겠느냐, 해외, 국내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미혼모라서 못 키우는 건데 싱글마더한테 아이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올 기회는 없는 거고.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난 결혼도 안 할 거고 애도 안 낳을 건데 종신보험 든단 말이야. 그게 나한테 적합한 보험 형태인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지. 혼자 사는 여자나 혼인 제도 안에 없는 여자를 위해서 적합한 보험 상품이 다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인생 설계 자체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들은 각종 상품에서부터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정상가족’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맞추어 그 가족에게 맞도록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12 : 레즈비언 공동체>

주거지 개선점이지요? 요즘 집들은 보일러 조절장치가 (안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실로 나와 있던데 그런 경향이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나 조정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해요. 그리고 방 사이즈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해요. 어떤 집에 ‘누가’ 사는가에 대한 가정이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

가족으로서, 또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꼭 제도적인 변화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다.(<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한 피면접자는 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결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의식이 편중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의식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우선되어야 할 점은, 의식교육이 따라야 한다고 봐요. 다른 가족들의 의식 교육도 필요해요. 나 이외의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배려나 생각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4) 결혼=성인이라는 인식 전환

제도 밖의 가족들은 겉으로 보기에 사실상 비혼/미혼 상태인 경우가 많다.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 속에서 이들은 일상 속에서 광범위한 차별에 노출된다. 가장 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성인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발생한다.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

피면접자1 :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혼을 안 하면 애 취급을 해요.

피면접자2 :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미혼인 사람들은 청년부에 있어야 하거든요? 제 동기들은 다 결혼해서 장년부 갔단 말예요. 그러면 계속 청년부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레이드가 올라가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들은 직장 내에서, 교회와 같은 사회생활에서, 또 가

족 내에서 ‘미완의 존재’로 여겨진다. 사적 관계에서부터 공적 관계에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들은 이러한 차별을 경험한다. 특히 여성일 경우에 관리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위치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결혼=성인’의 등식이 사라져야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정당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례1 : 여성 1인 가구>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독립된 한 개인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와 결혼시켜야 하는 미완의 존재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무척 불쾌해요. 이런 시각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중략) 가족들 사이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애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끊임없이 가족들의 골칫거리나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시선이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5) 가족상황차별로 이어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전환

제도 밖의 가족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들이 가진 사회적 소수자라는 조건 때문인 경우가 많다. 가족 제도가 가정하는 ‘정상가족’이 이성애, 혈연, 제도적 혼인, 유자녀, 비장애 등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성적 소수자나 장애인은 애초부터 가족 제도에 설 자리가 많지 않다. 그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정상’이라며 ‘우습게’ 인식하고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의 결과로 자신의 가족이 차별받다고 인식한다.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

부모가 다 장애가 있는 경우, 집과 아이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부모를 놀리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

를 많이 줘요.

따라서 제도 밖의 가족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면 현재의 가족 이데올로기도 변화할 것이고, 그렇다면 가족상황차별도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제도적 교육 등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그냥, 레즈비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가족과 관련한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야겠지만,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지.

<사례5 : 장애인 동거 커플>

(우리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면) 학교(에서)나 (제도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봐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음(을 위한 교육)과 소수자들에 대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선행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요.

(6) 보호자—피보호자 중심의 가족 개념 전환

제도 밖의 가족들은 보호자와 피보호자로 구성된 가족생활의 모습 역시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서로 평등하게 구성된 가족인 데도 가족 내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같은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당연하게 전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가족의 진정한 모습은 누군가가 반드시 가족을 대표해야 하고 보호를 하는 자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가족생활 구조를 가족의 모습이라고 보는 인식으로 인해 평등한 가족은 오히려 ‘자취생’ 정도에 머무는 것처럼 위계화 된다.

<사례12 : 레즈비언 공동체>

우리는 공동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세대를 대표할 수 없고 이를 원하지 않는데 ‘세대주’를 정해야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대주-세대원 개념은 혼인한 이성애 커플을 가정하고 있고, 부양자-세대주, 피부양자-세대원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가구 구성과는 맞지 않아요.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나름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세 명이 살면은. 각자가 가진 역할이 있는 건데 약간이라도 걷는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살고 있다고 보이는 거. (중략) 장애인들이 모여서 평등하게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도 뭐지 함께 모여 사는 자취생인가.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정 체계를 보여준다. 가장 또는 보호자가 없으면 아예 가족이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유대감의 가족 관계는 진정한 가족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정 체계를 변화시켜야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2. 개선의 우려점

제도 밖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가족상황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결과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을 할 때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1) 또 다른 배제

제도 밖의 가족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있을 때 그것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른 가족의 형태나 개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족상황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구성권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든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짓는 형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가족 제도는 그 자체로 ‘권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 변화의 노력은 ‘일차적 목표’ 여야 하고, 가족 개념이 확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상가족’ 이념이 다양한 가족들을 차별하게 하는 것처럼 또 다른 배제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피면접자 : 난 어떻게 보면 결혼제도 안의 혜택이 없어지면서 싱글이든 결혼을 하든 한부모든 상관없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면접자 : 어떤 면에서 가족이라는 단위로 사람들을 묶는다는 거 자체에 대해 반대?

피면접자 : 그렇지. 일단 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니까.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

저는 가족들이 받는 혜택들이 있다면 가족을 못 구성하는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나 장애인이라든가 가족을 만들어 내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제지. 가족이 받는 혜택을 가족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구성권은 일차적인 목표지. 궁극적으로는 가족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해도 권리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인권 신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묶어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차별적이라고 인식한다. 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들을 제도화하여 혜택을 주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을 얻기가 힘든 1인 가구를 차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례2 : 남성 1인 가구>

동반자 등록법 같은 게 생긴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가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를 기초로 정책이나 사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개인 기반 사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가족상황차별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례3 : 이성애자 동거 커플>

가족 형태가 왜 예를 들면 4인 가족이 있고 2인 가족이 있는데 가족 형태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국가의 제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주는 이런 방식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형태가 너무나 규칙적으로 정상적인 가족 형태에 기반해 있어서 개인을 단위를 한 복지 정책이나 세금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근간(입니디.)

(2) ‘정상가족’ 중심 이데올로기의 강화

제도 밖의 가족들은 이렇게 ‘가족’ 이라는 테두리를 강조할 경우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가족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정상가족’ 을 여

전히 중심에 두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가족들을 위계적으로 제도화시키는 방식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것은 다양한 가족들이 ‘정상가족’ 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체제에 편입되는 일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정상가족’ 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성을 강화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2 : 남성 1인 가구>

가족구성권이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는 분들이 밖에서 보면, 가족구성권 하나만 이른바 정상가족을 생각하면서 기존 가족에 편입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따라서 이들은 제도적 개선의 흐름이 ‘정상가족’ 중심적인 가족 제도와 이념을 변화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가족 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어내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사례10 : 장애 여성 공동체>

가족 제도에 그 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제도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립하고 바꾸는 작업도 많이 있는 가운데서 (제도적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3) 소수자 정체성의 ‘아우팅’

성적 소수자들은 동성간 결혼이나 동성 동반자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들이 생기는 제도적 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을 표시한다. 등록하는 순간 ‘아우팅’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편견과 차별이 많은 상황에서 제도가 있다고 해서 활용할 수는 없다.

<사례6 : 레즈비언 동거 커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커밍아웃하면 불이익을 당할게 너무 뻔하잖아. 시민결합법이 생기면 회사에 서류를 내잖아, 회사에서는 애가 여자랑 시민결합법에 들어가 있네, 그러는 거지. 그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지.

따라서 동성간 등록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할 때에는 자신의 소수자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성간이건 동성간이건, 애정적 결합이 있건 없건 동거자들을 등록하여 일정 정도의 지위와 권리를 상호 부여하는 방식이 된다면 아우팅의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한다.

<사례8 : 게이 동거 커플>

특히 생각 안 해봤는데. 결혼을 했다거나 하면 가족 상황을 적어내라, 호구 조사를 할 때 동거남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반이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지 않을까 하는데. 등록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하는 거잖아. 커밍아웃하지 않고 싶은 사람인 경우에는, (중략) 동거권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중략)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직장 동료다 이랬을 때 애꿎을 때 일정한 보호자권을 준다든가 하는 일반적으로 동거자로서의 부분적인 권리를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게이를 위한 동거등록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키는 제도로 가부장적인 호적 제도를 벗어나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게이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겠지요.

V. 나가며: 새로운 가족 개념에 대한 상상과 가족구성권 운동의 전략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은 이성애 결혼을 통해 맺어진 부부와 그들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가족 개념을 사회의 기본 체계로 간주함으로써 사회적 재생산 및 복지 기능을 사적 영역으로 환원시킨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03년에 통과된 ‘건강가족기본법’은 국가의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정상/비정상의 흑백논리로 획일화하며, 기존의 정상가족 체계에 편입될 수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끊임없이 배제하고 소외시킨다. 본문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1인, 커플, 공동체’ 등의 형태로서 ‘성별, 성적 정체성, 장애유무’ 등 다양한 가족 상황 및 개인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구성된 가족의 예이다. 이에 따른 차별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상의 문제들과, 결혼하지 않은 혹은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문화적 편견으로 드러난다.

최근 들어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가족 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현상은 ‘정상성’을 기반으로 위기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해체는 가족의 위기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획일화된 구도로 분류하려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가족 상황을 배제하고 차별하게 되는 지점이다. 이는 오히려 가족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끊임없이 ‘비정상적 가족’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정상가족 이데

올로기'가 결과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가족 상황에 따른 사례들을 통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한 차별의 맥락을 짚어내고 다양한 가족들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각각의 사례들은 성별과 성정체성, 장애유무를 막론하고 '결혼하지 않은, 혹은 못한 상태'로 인해 '제도 밖의 가족'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통해 그동안 배제되고 차별받아온 다양한 소수자들의 시민권이 보장되고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가족구성권이 단순히 '정상가족'의 제도적 영역과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답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욱 다양한 상상력과 운동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가족구성권의 개념과 전략은 무엇보다 이성애 결혼 중심의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가족 체계를 답습하는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자율적인 인간 관계와 공동체 단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족구성권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족 형태에 따른 세제 등의 제도적 차별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정상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결혼=성인'이라는 인식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대한 전환을 필요로 하며, 뿐만 아니라 '보호자-피보호자 중심의 가족개념'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의 사례들에서 보았을 때, '가족구성권'이 활발한 운동의 영역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권 운동이 단순한 제도적 개선,

권리의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올바른 가족구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해체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 인정 체계,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 구축,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문화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구성권의 정책적 변화와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지속되고 발전될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국가주의, 집단주의, 가족주의, 이성애주의를 포함한 모든 정상성의 경계를 해체하고 보다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제도 안의 가족 들여다보기 : 현황과 개선 방향

김원정 전 민주노동당 여성정책연구원
김태욱 전 민주노동당 인권사법정책연구원
류임량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수로
이수정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1. 들어가며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한 정책을 하나의 독자적 분야·영역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가족업무 담당인 여성가족부가 신설된 이후 가족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2007년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으로 통합적인 가족정책의 틀이 마련되었지만, 정작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법과 제도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자원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여러 사회정책과 제도에는 수혜 단위 또는 작동 원리로서 특정한 가족 모델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그러한 가족 모델에서 제외되는 개인이나 가족공동체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한 가족 모델을 내면화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때문에 ‘정책 또는 제도로서 가족’을 말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빠질 수 없으며,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관점으로 몇 가지 사회정책을 검토·분석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이 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가족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으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족구성권은 1차적으로 혼인·혈연관계에 기초한 가족만을 인정하는 현행 법·제도를 비판하고 다양한 가족공동체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족공동체가 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와 공동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지 가족관련 법·제도에서 확장된 가족공동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소극적인 권리 보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 사회정책 법·제도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법·제도 안에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가족 이외의 가족공동체로 확대하는 간단한(?) 대안 뿐 아니라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그 설계와 시행의 원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 네 가지 제도-건강보험, 임대주택정책, 고용관련 법·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우선적으로 다룬 이유는 그동안 혼인·혈연관계 외의 가족공동체들이 직접 겪은 차별과 불편 사례들이 가장 흔하게 제기되었던 영역들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사회보장정책 중에서도 사회보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자주 접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또 건강보험은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고유한 부양-피부양 체계를 보험 가입과 혜택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제도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반면 임대주택정책은 여러 법령, 조례, 사업에 걸쳐 있는 방대한 정책영역으로 그 현황을 일일 다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임대주택정책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개인 또는 가족공동체가 기초적인 생활(최소한의 의·식·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택 자원의 사회적 분배는 사회가 강제하는 특정한 가족 모델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을 배제하거나 아예 공동 거주를 제한하기도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자 했다.¹⁹⁾ 따라서 임대주택 관련 법·제도에 나타난 ‘세대’ 또는 ‘가구’ 개념, 제도 시행 상의 일반적 관행들이 어떤 가족 모델을 전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다양한 가족공동체의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 어떤 주택정책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고용관련법은 개별노동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각종 제도들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과 마찬가지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제도들이다. 따라서 가족상황별로 법·제도의 적용효과가 동일하지 않다. 특히 성별분업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을 가족의 책임으로 묶어 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개념이 확대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관련법·제도가 어떻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은 가족구성권의 인정과 이에 따른 권리보장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각종 제도에서 드러나는 가족상황차별과 마찬가지로 고용관련법·제도가 ‘가족 밖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 책임’에 근거하여 법·제도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배제하거나 박탈하는 상황을 ‘가족상황차별’로 보고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법·제도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19) 이러한 예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주택청약 분양시 임대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특정한 가족 특성(자녀수·부모부양여부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잔여적 복지 전통으로 인해 가족이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복지제도 내에서 가족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족의 부양의무와 국가의 의무 범위는 달라진다. 특히 개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법의 경우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가족 의무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수급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법은 어떠한 영역까지 가족으로 정의하며, 그 정의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정의에 따른 복지 수급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분석하고자 했다.

II. 건강보험제도 안의 가족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건강보험 외에도 「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산재보험제도가 있으나, 여기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건강보험의 일반적 현황과 문제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수차례 법 개정과 제도 변화를 거쳐 1999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

장을 증진함' 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미등록 외국인을 제외한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을 강제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의료급여대상자²⁰⁾ 등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모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법 제5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나 교직원, 월 노동시간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및 공무원·교직원이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법 제6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직장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법 제5조).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의 97%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외 3% 안팎의 인구가 의료급여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가입자 종류별로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가입자 종류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및 구성비 (2006년 6월 현재) (단위: 명, %)

계	직장			지역
	적용인구	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47,545,055 (100.0)	27,976,552 (55.8)	10,156,710 (21.4)	17,819,842 (37.5)	19,568,503 (41.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급여제도가 빈곤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이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보장을

20) 의료급여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재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과 그 외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을 말한다(「의료급여법」 제3조).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2003년 총 가입자의 4.6%가 장기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생계의 어려움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다.²¹⁾

또한 여전히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가 많고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본인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2004년 김정희 등의 연구에 따르면 187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적용 환자 중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43.6%이며, 2004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3%로 주요 선진국의 보장률(85~80%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²²⁾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 부족과 지역별 의료기관의 불균형도 의료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상비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62.1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 농촌지역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와 질적 수준이 떨어져 이들 지역 주민들이 의료를 이용해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교통비·숙박비 등 간접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²³⁾

이상과 같이 건강보험은 국민 대다수를 가입자로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낮고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는 등 공적 의료보장체제로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

21) 홍춘택(2006), "저소득계층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민주노동당 <2006년 무상의료 정책자료집>.

22) 김정희·정종찬·김성욱(2004),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원선(2006),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정책 방안", 민주노동당 <2006년 무상의료 정책자료집>에서 재인용.

23) 홍춘택, 앞의 글.

선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은 본 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나아가 가장 바람직한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방향은 현재 건강보험 시행 원리에 포함된 특정한 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방향과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의의 핵심적인 주장이기도 하다.

다음에서 건강보험에 포함된 가족, 부양자-피부양자라는 가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건강보험의 부양-피부양 체계와 개선 방향

이제까지 많은 페미니즘 연구는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속성을 비판하고, 여러 사회정책 안에 내재하고 있는 젠더 관계, 즉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피부양자라는 성별분업 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을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남성노동자를 1차적인 수급권자로 보고 그 배우자 여성과 자녀는 피부양자로서 파생적·간접적 수급권을 갖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불안정하고 여성의 무급노동을 비가시화 하는 젠더 불평등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이러한 성별화 된 수급권 규칙은 독신, 맞벌이 부부 가족보다 남성 부양자 가족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특정 유형의 가족형태를 조장하는 일종의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²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건강보험은 확대가족에 기초한 방대한 범위로 피부양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자격 인정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가입

24) 마경희(2003), “한국 사회보험의 부양자 가정에 대한 검토”, 『페미니즘연구』 2004년 제4권, (사)한국여성연구소.

자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직장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면 최소 5대까지 직계혈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확인되는 다음 소득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 피부양자인정기준 중

제3조 (소득요건 인정기준)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은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②피부양자로 되고자 하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종합소득, 폐업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직계혈족 중에서도 근로소득이 있는 이들은 자동으로 각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위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소

득이 발생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부여는 지역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가구 단위로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며 세대원은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즉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는 체계이다(법제68조).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가 주 부양자라 하더라도 같은 세대안의 지역가입자를 대표하여 보험료 납부, 자격상실·취득 등의 신고를 책임지는 것이지 직장가입자처럼 자신의 소득 기여로 피부양자를 부양한다는 가정은 아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체계가 형성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원탁(2002)²⁵⁾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변화는 확대기(1977년 최초 의료보험 실시~1998년 의료보험 통합)와 축소기(의료보험 통합 이후~현재까지)로 나누어진다. 98년 이전까지 피부양자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온 이유는 초기 의료보장 우선적용 계층이 500인 이상 사업장(1977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1979년) 등 상대적으로 상위계층이고 피부양자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 의료보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계층(농어촌 거주 노인 등)에게 불평등이 발생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확대된 이후에는 소득에 기여한 사회보험이라는 원리가 강조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가입장의 경우 통합 이전이나 이

25) 조원탁(2002),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정기준 변화의 정책적 의미", 『보건과 복지』 제5집, 한국보건복지학회.

후 모두 피부양자인 세대원의 재산까지 부과기준에 포함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엄격히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확충한다는 것이 이러한 정책 전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통합 이후 소득에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축소시킴으로써 '소득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의 원리'를 보다 강화해 왔다. 이 기준에서 보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에 어느 정도 형평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직장가입자는 개인별 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소득·재산의 합산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이중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득 기여의 원칙은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강보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등으로 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시민권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보장의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재산,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제정을 부담하게 하고, 모든 국민이 재정 기여와 무관하게 '시민의 자격'으로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영국의 국가 의료보장시스템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⁶⁾ 1948년부터 실시된 영국 NHS는 국가의 예산을 통해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직업,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무료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건강유지, 장기요양에 이르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26) 이하 이용갑·허순임·전창배·김경하·임의현·박지연·구미경(2005),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NHS England 홈페이지(<http://www.nhs.uk>) 참고

NHS의 재원은 95% 이상이 일반조세(74%), 사회보험료(21.5%)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서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성격의 목적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이 대부분 공공의료기관(2002년 현재 공공병상비율 96%)이라는 점도 우리와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조세에 의한 공적 재원조달과 공공병원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결합은 의료보장의 보편성, 의료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높은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 행정관리의 효율성 등을 담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공적 의료보장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포함)은 주소지 관할의 기관에 환자로 등록하면 NHS 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간략한 정보가 적힌 의료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 이용시 NHS에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영국 NHS는 사실상 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이 없는 제도로, 다만 약제처방을 받을 경우 약간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내는데 이 역시 광범위한 면제 조치²⁷⁾를 취하고 있어 부담 수준은 매우 낮다. 치과서비스와 안과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역시 면제 대상이 많아 사실상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면 건강보험 내의 가족체제나 부양자 가정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해 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보장체제의 근본적 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현행 제도 안에서 공적 의료보장을 최대한 확대하고 가입 자격에 있어서도 가족(또는 세대)의 범위를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에

27) 16세 이하 어린이, 노인, 1세 미만 어린이를 둔 산모, 저소득 환자, 임산부, 만성병 환자, 피임약 구매자 등은 본인부담금 면제

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

3. 가입자-피부양자 규정의 특징과 개선 방향

다음은 건강보험 이용 중 특정한 가족공동체의 조건 때문에 차별과 불편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다.²⁸⁾

가. 차별내용(간접경험) : 동성커플의 의료보험, 각종세제 혜택, 보험, 연금 등 생활전반에 있어 인정받을 수 없는 '가족'의 범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은 경제적 의미 단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차별이 발생하는 가족 형태- 동성커플 /장소-공공기관(제도적) /기타 사회전반(의식적)]
 ▷ 해결방법 : ① '개인'을 중심으로(단위)하는 정책 → 실질적 평등 개선을 가져온다고 생각함.
 현재의 '이성애 정상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가족 →개인'으로
 ② 동성커플의 법적 인정

나. 차별내용 : 이혼한 동생네 가족과 함께 사는데 의료보험이 따로 하게 돼 있어 서로 딴 주머니 차고 있는 느낌이다. 같이 산다면 의료보험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부터 살펴보자.

<표 3-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²⁹⁾

가입자와의 관계	부 양 요 건	
	동거시	비동거시
1. 배우자	•부양인정	•부양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28) 한국여성민우회, 2005.12. <'가족' 차별 드러내기, 실천적 대안찾기 토론회> 자료집 중
 29)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소득요건 인정기준은 '소득이나 보수가 없는 자'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를 말한다.

가. 부모(호적에 등재된 계모를 포함한다)	◦부양인정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부모(이하 “생부모”라 한다)	◦부양인정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다. 모가 부와 사별 또는 이혼 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이하 “계부”라 한다), 부가 모와 사별 또는 이혼 후 재혼한 처, 생부의 처(이하 “계모”라 한다)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 불인정
3. 자녀인 직계비속		
가. 자녀	◦부양인정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나.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이하 “생자녀”라 한다)	◦부양인정	◦미혼인 경우로서 그의 부모·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없거나, 그의 부모 또는 모와 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4.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인정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없거나,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인정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이하인 직계비속		
가. 친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인정

나. 외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 불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며느리 등 여자인 경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사위 등 남자인 경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 등)	◦부양인정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아니함) 경우 부양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가 없거나, 배우자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부양 불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	◦부양 불인정
10. 형제·자매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11. 배우자,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위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인정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부양요건을 확인받기 위하여 호적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호주제 원리에 근거한 부양요건 비꾸기

위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방대한 혈연 가족을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것 외에 일부 호주제 원리에 따라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에게 인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의 나와 다, 3.의 나의 경우 법률상 부모나 자녀가 아닌 생부모·생자녀³⁰⁾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1차적인 부양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부모나 형제·자매이지만 그 중에서 결혼한 여성(딸, 자매)은 제외하고 있다. 반대로 4.의 경우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 있는 부(외조부모)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에겐 1차적인 부양의무를 부여한다. 또 6.의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는 사위와 며느리의 경우, 같이 살고 있으면 모두 부양을 인정하지만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사위는 부양을 인정하지 않고 며느리는 자녀가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하고 있다. 며느리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호적상 ‘입적’을 근거로 부가(夫家)의 부모에게 부양책임을 부여하는 셈이다.

이와 같이 기혼 여성을 부가에 입적한 자, 그래서 본가에 적을 두지 않은 자로 보는 일부 규정은 호주제 폐지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소득이 없는 국민들을 최대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포함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러나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가는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 ‘동거여부’ 확대 적용, 생계를 같이 하는 비혈연 가족구성원에게도 부양요건 적용하기

위 부양요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거’ 여부는 혈연가족 중에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1차적인 판단 기준이다. 여기서 ‘동거’란 주민등록상 동거를 의미하는 동시에 피부양자의 생활근거지가 가입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아야 함을 의미하는데,³¹⁾ 주민등록상

30) 여기에는 호적에 같이 기재되지 않은 이혼한 부모와 그 자녀도 포함된다.

동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주민등록표 상에는 함께 거주하는 혈연·비혈연 동거인이 모두 포함되지만 동성에 커플 등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석이다.³²⁾

그러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동거’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예를 들어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는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비동거인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³³⁾ 거꾸로 혈연관계와 무관하게 동거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체로 본다면, 그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구성원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동성에 커플, 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등 민법 상 가족 범위 바깥의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어느 한 사람 또는 구성원 모두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혈연가족 누군가의 피부양자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사실혼 배우자는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하면(친인척 및 통반장의 인우보증 등) 배우자 본인과 직계존속까지 동거인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다.³⁴⁾ 어차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개별 가입자가 되는 제도에서, 이를 다양한 가족공동체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비혈연 가족공동체들의 불편을 한층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3) 가입자-피부양자로 자격을 나누지 않는 보험체계 만들기

3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FAQ

32)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부양요건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이혼한 여성이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그 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FAQ)

3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FAQ

3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FAQ

마지막으로 보험체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가입자격을 개인단위로 할 수는 없을까?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결혼여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어지는 방안은 없을까? 가족 내 돌봄을 전담하는 여성의 노동을 부양자 소득 기여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변화될 수 없을까?

이병운(2004)³⁵⁾은 건강보험의 개인단위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예컨대 부부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일방이 다른 일방을 ‘부양’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결정에 따른 연대 책임으로서 소득활동을 하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부부간 합의가 불안정한 경우에 대비해 소득이 없는 일방의 보험료를 다른 모든 보험가입자와 국가, 사회가 일부 분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로 개별 가입자격을 부여하되 부모 등 친권자가 보호책임 하에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다른 가입자와 국가, 지자체 등이 분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부양-피부양 관계로 보는 용어 대신 연대와 책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면 최소한의 상징적 효과는 거둘 수 있다. 물론 이런 대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늘려서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국가의 의료보장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소결

35) 이병운(2004), “민법상 부양의무와 사회보장법상 가족책임의 사회적 평가와 조정”,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건강보험이 가정하고 있는 가족체계를 넘어서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열려 있다. 이미 지금 제도 자체가 온전한 부양자 체계를 가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피부양자로 국민의 자격을 분리하지 않는 보다 나은 공공 의료보장체계로의 전환은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국민의 소득에 의한 기여를 전제로 하는 보험체계를 전환시켜 조세 방식으로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체계를 만드는 것,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안에서 친족관계 중심의(때로는 호주제 원리에 기반한) 부양체계를 동거 혹은 함께 생계를 영위하는 보다 확장된 가족과 생활공동체로 확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각에서 이러한 공적 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용하는 동성에 커플이 쉽게 아웃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공적 제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동성에 커플 외에 많은 비혈연 가족공동체도 공적 제도상 ‘가족’ 또는 ‘동반자 관계’로 인정된다면 동성 간의 공동체를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III. 임대주택제도에 있어서의 “가족”

1. 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이란 “주택의 소유자가 일정한 경제적 급부를 전제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이를 공급목적, 임대 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의, 협의, 최협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³⁶⁾

광의의 임대주택은 “사실상 임차인의 거주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즉 주택을 직접 소유할 능력이거나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임차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광의의 주택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사인간의 민사법적 문제이기는 하나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임차인을 보호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 한다.)이다.

협 의와 최협의의 임대주택의 개념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 틀 속에서 공급되고 통용되는 주택으로서 협의와 최협의의 구별은 임대기간에 따라서 구별된다. 즉 최협의의 임대주택은 주택의 수명이 존재하는 한 임대료만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구 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협의의 임대주택은 일시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협의·최협의의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 바로 임대주택법, 주택법이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주임법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임대주택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건설임대주택은 정부 등의 지원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뉜다.³⁷⁾

36) 설 혁(2004), “국민임대주택공급정책의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16.

이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및 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국민임대주택³⁸⁾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임대주택들을 규율하는 법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임대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³⁹⁾

이러한 법령 등의 공통점은 모두 “세대”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세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종 주택관련 제도들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주민등록법에 그 정의가 규정되어있지는 않고 행정사무 지침인 주민등록사무편람 상에 “주민등록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임. 세대는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며 타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주”에 대해서는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호적법상 호적의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세대원의 기재순서를 호적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호주인 자가 세대주가 된다. 그러나 호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신고할 수도 있

37)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30,10,5년 등으로 되어있고 매입임대주택은 5년인 차이가 있다.

38) 건설교통부(2007), “국민임대주택편람 1권”, p.17.

39) 이외에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등 많은 법령이 있으나 본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논외로 함.

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주민등록상의 세대개념은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비혈연공동체의 구성원의 경우는 위 규정형식상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이며 또한 그 표시도 비혈연공동체 구성원간의 실질이 어떠한지와 무관하게 “동거인” 으로 표기하게 되어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차별적인 점은 주택 관련 법령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주택 관련 법령에서는 위와 같은 주민등록상의 세대 개념을 원용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그보다 더 좁게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혹은 비혈연공동체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주민등록이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⁴⁰⁾이라는 그 허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차별을 조장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개별 법령 및 사례를 중심으로 1인 가구 혹은 비혈연공동체가 “세대” 혹은 “가족” 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지 못하여 소위 “정상” 가족에 비하여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는지 결국 이러한 주택 관련 제도들이 얼마나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위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여 보겠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상 대항력⁴¹⁾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그 주택을 인도받

40) 주민등록법은 1조(목적)에서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다.

41)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고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한다.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취지는 제3자에게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공시제도의 기능).

그런데 이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판례⁴²⁾가 해석하고 있다. 즉 원래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존속요건이기도 하여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주택의 주소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일시적으로)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지 않아 세대별 주민등록표 한 세대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대항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비혈연공동체의 경우 “동거인” 으로 등록되게 되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를 구성했는지라도 일시적으로 그 동거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비혈연공동체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임차인 사망 시에 임차권의 상속⁴³⁾에 있어서도 비혈연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주임법 제9조 제1,2항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동거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보호범위를 사실혼으로만 좁게 설정하고 있어서 비혈연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한다.

42) 대법원1996.1.26.선고 95다30338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판결등 다수

43) 주임법 제9조 제①항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②항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에 있는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및 전대에 있어서

(1) 입주자격에 있어서의 차별

다음은 실제로 모 국민임대주택에서 있었던 사례⁴⁴⁾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려가서...”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호주제 폐지 후 대안신분등록제 논의를 지켜보면서 사실 나오는 직접적으로 당장 관련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연가족으로부터 독립한 지 한달만에 공고한 사회의 틀을 실감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꿈에 그리던 공공임대주택 당첨을 받고, 공간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생이라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를 반반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친구와의 동거는 비단 생활비 측면에서뿐 아니라, 처음 혈연가족으로부터 떨어진 저에게 심리적으로 커다란 지원이 되었고, 혈연가족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의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임대주택 계약 등 모든 것은 저의 단독 명의입니다. 친구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살면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독신가구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누구와 같이 살고 있고, 어떻게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친구와의 동거사실을 알고 저를 불렀습니다. 아파트 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직계존속 외에 어떤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만일 단독세대라도 결혼 등으로 법적 가족이 된 이후에 동거가 가능하다.”

“타인에게 전대 등 불법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철저하게 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관리비를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 부담하는 것도 불법행위이다.”

다수의 무주택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정책이고, 여기서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내가 가족이 아닌 누구와 함께 사는지 관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개인의 사생활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혈연이나 혼인 등 제도가 인정하는 형태만을 '가족'이라고 할 때, 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는 임대아파트에 살아서도 안된다는 논리. 특히 여기서 이성 혼인에 의한 가족만 인정해주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관리사무소로부터 당장 친구에게 퇴거하라고 통보된 상태에서 '우리 가족'은 너무나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 시민단체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더니 담당자가 제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본인이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가족과 살든 타인과 살든 무슨 상관이고, 관리실에 누가 그런 것까지 관리하라고 권한을 위임해줬습니까?”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분은 “여자 두 명이 사는 거죠?”라고 물으며, 아무래도 학생 신분의 여자 둘이 사니까 ‘무시해서 그런 것’일 거라고 추측하더군요. 그러면서 임대주택에는 나처럼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하고, 결혼할 형편이 안 되어 사실혼 관계의 부부나,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직계존속끼리만 살아야 하고, 결혼 후 동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군요.

그제서야 친구와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불려가 “(친구가) 당장 퇴거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도 막막했거든요. 관련 법에 근거한 것도 아니면서 직계존속, 혈연가족끼리만 살아야 한다며, “불법을 막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늘어놓는 관리실 직원들이 너무나 패쇄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주택법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동법 제2조)고 하고 있어서 주택관련법령에서는 “세대”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주택관련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세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주택법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주택법의 여러 규정⁴⁵⁾들

45) 주택법 제2조 제10호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주택공급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주택관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련된 규정)에는 주택의 소유자
 다.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4)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7.1.4. 기사.

을 보았을 때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주택법에는 세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세대주에 대한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 8호에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9.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세대의 개념을 여전히 가족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호주제의 잔재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민등록법 및 사무지침상의 규정보다 더욱 좁게 “세대”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썸인데 비혈연공동체의 구성원은 주택관련 법령에서 “없는 존재”인 썸이다. 다만 현 규정 형식만으로 보았을 때 동거하고 있는 비혈연공동체의 구성원(즉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밖에 표기될 수 없다.)도 주택관련 법령상 “세대”에 속함을 주장하지 못할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주택관련 법령들 탓에 현실에서는 동거인으로 기재되어있는 비혈연공동체의 구성원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과정에 있어서 주장할 권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SH공

사에서 공급한 장지10단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입주자격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5.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 주중 주민등록등본 구성이 ①이혼녀와 자녀 ②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③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④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⑤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단독세대주의 경우 4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입주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그 예외조항들이 바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나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즉 반대해석을 하면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과 동거하는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9조 등을 보면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되어서 우선순위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바, 이는 1인 가구 및 비혈연공동체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3> 국민임대주택 입주 가점제도

구 분	가점순위
동일순위 경쟁 시 각 점수를 합산하여 입주자 선정 (합산점수 동일시 추천)	1. 세대주 나이 ① 50세이상: 3점 ② 40-50세: 2점 ③ 30-40세: 1점
	2. 부양가족수 ① 3인이상: 3점 ② 2인: 2점 ③ 1인: 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① 5년이상: 3점 ② 3-5년: 2점 ③ 1-3년: 1점
	4.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시 : 3점
	5. 미성년 자녀수 ① 3자녀이상: 3점 ② 2자녀이상: 2점
	6. 청약저축납입회수 : 각순위별 납입회수 보다 12회이상 추가 2점, 6회이상 추가 1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신청자만 해당)
	7.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거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8. 사회취약계층 가. 제31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 제7호, 제8호에 해당자 : 3점 (전용면적 40㎡미만 주택신청자만 해당)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 3점 (전용면적 40㎡이상 50㎡미만 주택신청자만 해당)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신청자만 해당)
	9.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전용면적 40㎡이상 50㎡미만 주택신청자만 해당)
	* 4호, 7호 및 8호의 규정은 우선공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가족중심적인 세대개념은 주거권 보장이라는 주택관련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세법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을 위하여 세법의 취지에 맞게 세대 개념을 재구성⁴⁶⁾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인구조

- 46)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의 8호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사 등의 지침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규칙은 통계조사의 필요에 맞게 "가구"라는 개념⁴⁷⁾을 사용하고 있다.

민법상의 가족 개념이 유지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관련법령에서 그 개념을 사실상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것은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사실상 소위 "정상가족"을 강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전대 및 양도에 있어서의 차별

위 임대아파트의 전대를 임대주택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의하면 상속,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나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전할 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세대주로 변경한 후 세대주를 임차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임차권의 전대가 불가능하다.

법 제13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47) 동 규칙 제2조 3호 "가구"라 함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0조 (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1.13, 2000.7.22, 2002.9.11, 2003.6.25, 2004.3.17, 2005.9.16>

1.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 특별공급받은 임대주택을 근무·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상호 교환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우선 분양에 있어서의 차별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개정 2005.7.13>)

①임대사업자는 임대무기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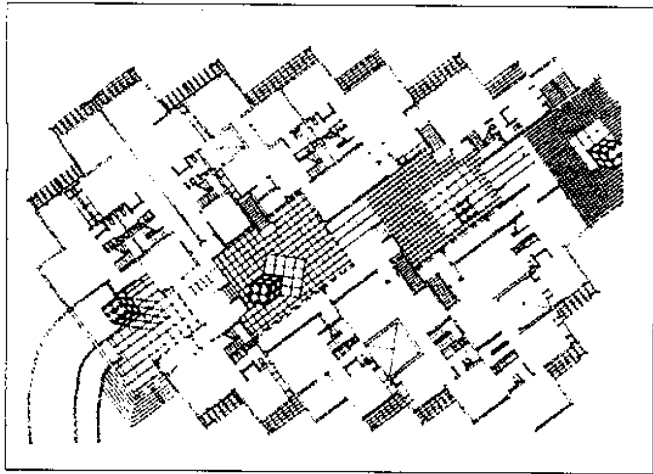
5. 주택 공간의 문제

위와 같은 주택관련 각종 법제도상의 문제 뿐 아니라 주택의 구조 또한 소위 “정상가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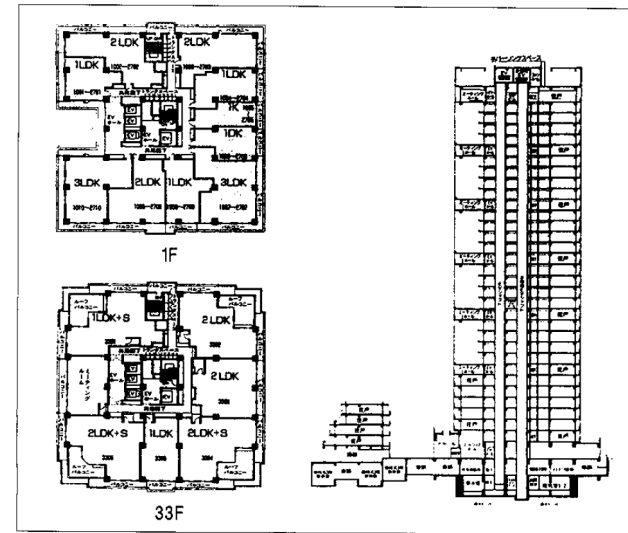
이에 대한 주택구조에 있어서 대안으로서 파스퐀⁴⁸⁾과 같은 공동체에 적합한 집합주택,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일본의 타마신도시, 20-30 가족을 위한 협동주택, 1인 가구를 위한 협동주택, 2가구 주택 등 여러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⁴⁹⁾ 이러한 여러 시도들을 임대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8) “오래된미래”에 나오는 라다크에서 출생, 사망, 혼인시에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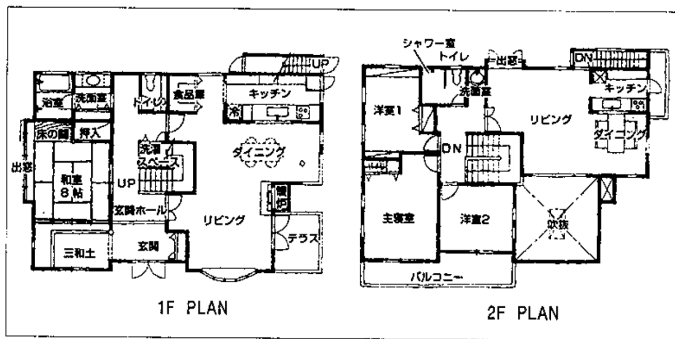
49) 아래 그림 등 홍형욱(1997), “가족공동체문화 육성을 위한 미래주택”, 『건축』 214호, 대한건축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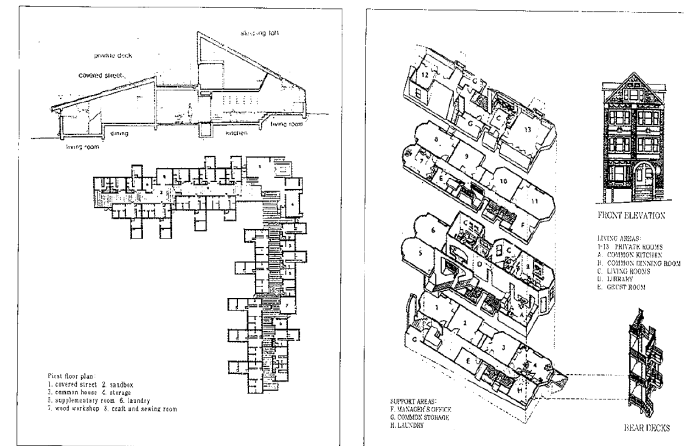
<그림 3-1> 집합주택(박연식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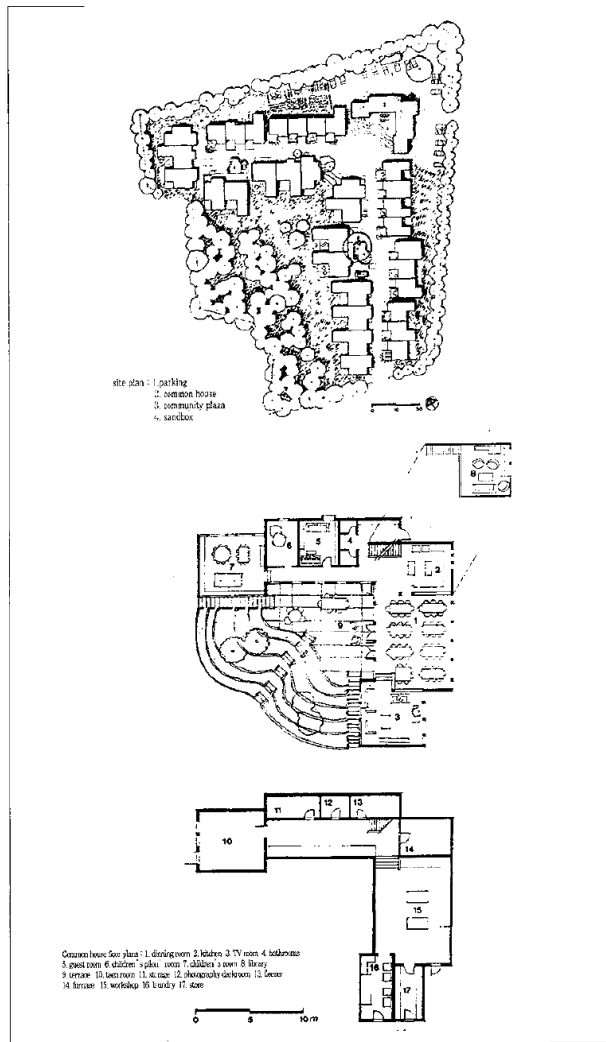
<그림 3-3> 일본のお臺場 三善街の 공용공간(meeting room) 위치와 평면도



<그림 3-2> 2가구주택(増田林業舎)



<그림 3-4> 21가족을 위한 cohousing(덴마크-좌) 및 독신자를 위한 cohousing(우-미국)



<그림 3-5> 33가족을 위한 cohousing과 common house 평면(덴마크)

그러나 현재 임대주택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보호자를 위한 정책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⁵⁰⁾.

(1) 그룹홈

○ 저소득층인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다음 관련법·규칙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등”이라 함)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

(2) 단신가구

○ 자활의지가 높고, 객관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같이 입주할 필요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을 포함)

○ 노숙인, 쪽방거주 단신자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당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

(3) 장애인 및 노인

○ 최초 분양자 가족 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신청하는 가구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3급 이상의 중증 지체 장애인

50) 건설교통부(2007), “국민임대주택편람 2권”, p.216-227.

-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구조에 관한 방안은 요보호자를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주택들일 뿐으로서 현재의 소위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한 주택 공급 정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100~500세대 규모로 도심이나 대중교통, 쇼핑,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 고령자용 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여러 계층의 노인들이 자기능력 및 정부보조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토록 설계된 특수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가구에 공급토록 하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우대받도록 개선함으로써 1인 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원의 수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산정하여서 1인 가구도 적절한 크기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공급하고 있다.

<참조자료>51)

구분	영국	독일(괄호는 건설 할당률)	프랑스	일본
비율	18.8(평균)	1인 : 13.6 (약 10% 내외)	가구원별로 5.5~34.5	공영주택
		2인 : 16.6 (약 20% 내외)		5.7~24.3,
		3인 : 21.2 (약 45% 내외)		6인 이상시
		4인 : 25.7 (약 20% 내외)		25.7까지
		5인 이상 : 1인당 4.5씩 증가 (5%)		

51) 건설교통부, 앞의 글, p.227.

IV. 고용관련법제도 안의 가족

우리가 경계하고 해체하고자 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미 모든 법·제도문화 등에 혼연일체 되어 어찌면 전체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부분 개조가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사회 가족(관련) 정책은 ‘정상가족의 규범’과 ‘성별분업’을 지지하는 범위에서 시행⁵²⁾(이재경, 2005)되어 왔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고용보험법(이하 “고보법”) 등 고용관련법은 개별노동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을 근거로 생겨난 각종 제도들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상가족 밖의 가족들은 불합리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한계는 있겠지만 근기법,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고보법 등 3법의 여성/가족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고용관련법·제도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징후를 읽어내고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고용관련법·제도와 가족 ‘관련’ 정책을 개별법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모집·채용 과정의 가족상황차별(family status discrimination) 관행과 고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가족상황차별을 사례⁵³⁾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52) 이재경(2005), “공사 영역의 변화와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 정책”, 『여성연구』 2005년 제1호 통권 제68호, 한국여성개발원.

53) 이 글에서 인용하는 사례는 앞 장의 ‘사례연구팀’의 인터뷰 내용이 추가 되고, 기타 사례는 김소임(2007), “인정 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가족 관련 법 및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7~28면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용관련법·제도와 가족 ‘관련’ 정책

민법의 가족 개념을 따르고 있는 고용관련법·제도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사수’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⁵⁴⁾의 규정들은 여성과 연소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에 대한 사회의 규범과 노동시장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 보호주의 관점에서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권을 규정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노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면, 과거 ‘연장야간·휴일 노동’은 비단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게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었다.

정상가족의 권리를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과 제도 역시 그 밖의 가족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육아휴직을 여성노동자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던 법 규정이나 가족임금 제도 등 <표 3-4>와 같이 고용관련 법·제도와 가족 ‘관련’ 규정들이 그것이다.

<표 3-4> 각 법의 목적과 ‘가족’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고용보험법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54) 2001년 법 개정당시 여성노동단체에서 ‘여성’과 ‘소년’의 분리를 요구(이 외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금지, 유산산휴가제 도입 등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2003년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임신과 출산의 보호’와 ‘연소근로자’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⁵⁵⁾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제개정 내용	·1997.3.13. 제정 (구 근로기준법 폐지) ·2007.04.11 전부 개정 ·2001.08.14 개정 제5장 여자와 소년→여성과 소년	·1987.12.04. 제정 무급육아휴직제도 도입 ·2001 개정 산전후휴가기간의 연장과 비용 일부의 사회화, 육아휴직제도 유급화 ·2007 전부 개정 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 간호휴직제도 등 신설	·1993.12.27. 제정 ·2007.05.11. 전부개정
‘가족’ 관련 규정 등	제5장 여성과 소년, 친권자(후견인)의 동의, 유족의 범위	모성보호, 간접차별,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법정대리인

아래에서는 고용관련법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족 ‘관련’ 규정들은 무엇이 있고, 이 규정들에 대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징후(徵候)로 읽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민법의 ‘가족 범위’와 고용관련법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5) 전부 개정 법률안(2007.3.)에서는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해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모든 근로자의 직장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였다.(법시행일 2008.6.22.)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근기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⁵⁶⁾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근기법 제82조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 **근기법 시행령 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①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한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고보법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고용관련법의 가족 ‘관련’ 규정은 위와 같이 「민법」 제779조의

56) 개정(2007.5.17.) 전 “호적증명서”.

가족 범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각종 보상 체계의 대리인이나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범위는 물론 유족 범위 역시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법상 가족 ‘밖의 가족’은 각종 법적 권리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2) 각종 고용관련법제도에 나타나는 징후들

가족 밖의 가족에 대한 법 규정상 배제 외에 법을 근거로 한 제도의 가족상황차별은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내재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가족임금제도’이다. 가족임금은 3~4인의 부부(생계책임자인 남성과 생계보조자인 여성)와 자녀(이하 “3~4인 모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임금은 3~4인 모델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닐뿐더러 3~4인 모델을 우리사회의 정상적인 가족으로 상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비정상의 범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임금인상 산출을 “연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를 산출하면서 “여성=피부양자”라는 모델에 입각하여 산출하고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가장(32세), 주부(29세), 남자유아(3세)로, 4인 가구인 경우 가장(36세), 주부(33세), 남자초등학생(7세), 여자유치원생(5세)으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상가족은 남성이 연상인 부부와 그 자녀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남자아이가 우선이다. 이처럼 가족임금제도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함께 성별 분업, 성별 임금 격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행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갖가지 고용차별을 낳게 된다.

‘가족수당’ 또한 성차별과 함께 대표적인 가족상황차별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대해 ‘성차별’로만 인식하고 있다. 즉 ‘가족수당 등 생활보조적 금품지급의 성차별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가족수당, 주택수당, 주택대여 등과 같은 생활보조적 금품 지급 또는 생활보조적 지원을 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가족수당을 가족상황차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임금제도와 가족수당 외에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제도에서도 가족상황차별은 존재한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법령이 바뀌고 법내용이 전면 개정되면서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몇 가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신설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법 제18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법 제19조의2~제19조의6)와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도’ (법 제22조의2) 등이 그것이다.

○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3. 연장근로의 제한
4.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5. 그 밖의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빠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⁵⁷⁾ 진입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맞물려 있다는 인식이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결혼과 아이를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

57)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14% 미만인 경우, 14% 이상 20% 미만인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함.

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키우는 등 정상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 정부 대책의 골자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1989년부터 실시해 온 일본의 경우를 보면 18년이 지난 지금 출산율 상승은커녕 보육시설이 민영화되고 보육사 등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 되는 등 여성노동권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여전히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족 내의 위치와 가족상황상 양육을 포함한 돌봄 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노동자는 채용, 승진/승급, 임금, 해고 등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적 처우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상 규정하고 있는 가족 밖의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될 것인지도 미지수다.

2. 모집·채용과정의 ‘가족상황차별’ 관행

(1) 이력서와 면접과정의 가족상황차별

「근기법」(제6조 균등한 처우)에서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제2조 정의)에서는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사례 9 : 게이공동체>

외국 사람들은 면접볼 때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왜 결혼 안 했느냐는 것 등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걸 따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동성애자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과 아무 상관없으므로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대답했죠. 웃긴 것은 이혼한적 있다고 대답하면(이전에 집의 강요로 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었고요) 질문을 딱 접어요.

<사례 9>와 같이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상황별 차별 관행은 모집·채용 단계부터 시작된다. 입사 면접 과정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가족관계, 결혼 계획,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를 채용여부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면 면접자의 취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나라는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여성을 채용할 때 직무와 무관한 용모와 나이, 결혼여부를 중시하는 관행이 팽배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2007년 11월 노동부에서는 '개방형 표준 이력서'와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이는 2006년 12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개인의 경력과 능력이 우선시되는 채용 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방형 표준 이력서의 요구 항목 구성 원칙을 보면, '개인 정보 중 주소, 전화 번호 등 연락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성별, 혼인 여부, 가족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이력서상의 항목이 외형상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채용 결정 과정에서 특정성이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결과(간접 차별)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이력서상의 질문 항목이 지원자의 능력

이나 직무 수행과 자격을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질문인지 확인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첫째, 면접 과정은 표준화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면접 평가는 공정하게 평가 하고, 둘째,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 구성부터 공정해야 하며 질문 사항도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셋째,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나이와 가족 사항 등 개인적 사정은 업무 수행과 연관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은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면접관 구성 비율과 면접 과정, 평가 항목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2005년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대 그룹 계열사 177곳의 입사지원양식을 조사한 결과 74.6%에 해당하는 132곳이 구직자의 가족관계와 가족의 학력,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프레스이안, 2005.5.24). 신세계의 경우 가족 이름, 구직자와의 관계는 물론 부모의 생존여부, 가족의 월수입과 주거형태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와 함께 “기업이 채용 시 과도한 가족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구직자 특히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가족관계, 결혼 여부, 이혼·재혼 등 결혼 이력이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에 대한 편견을 낳고 간접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2005)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채용 과정의 가족상황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1조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7조를 근거로 배우자가 전임교수로 있는 대학교 초빙교수 임용에서 진정인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판단하고 재심사 등 구제조치 할 것을 권고(04진차244 결정, 2005.2.28)하였다.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 중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대한 판단은 위의 사례가 유일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국의 경우 전과를 가진 남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여성의 고용이 거부되거나, 성희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무관리직에 응시한 비혼여성을 거부한 것은 ‘가족상황’과 ‘혼인상황’을 근거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보고 금지하고 있다.

3. 고용상태에서의 ‘가족상황차별’ 관행

(1) 직장문화에 뿌리 깊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법정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354시간으로 세계 1위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도 주당 54시간이상 노동하는 노동자는 전체노동자의 35%, 45~53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27%로 전체 노동자 60%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직장문화가 노동자 개인의 삶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가족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다양성은 무시한 채 이성애 중심의 결혼만을 권하고 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처음 만나는 이에게 결혼유무와 자녀유무에 따라 갖가지 조건을 하는 사회다. 직장문화 역시 다르지 않다.

<사례 1 : 여성 1인 가구>

결혼하지 않은 여성으로서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위축감’이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결혼에 관련된 관계성을 맺고 있는데, 나 자신은 그들의 고민에 동참하기 어렵다. 가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 직장 내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결혼한 여성들보다 업무상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이유로(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있어서의 자유로움) 결혼한 여성들과 경쟁의 구도에 놓여 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결혼한 직장 동료들이 ‘***씨는 결혼을 안 해봐서 몰라.’, ‘***씨는 집에 가서 봐야할 애도 없는데 이런 일은 자기가 말아야 하지 않겠어?’라는 식으로 업무를 가중시킬 때 위축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 결혼을 해서 좋은 점에 대해 굳이 내 앞에서 과시할 때,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경계를 지을 때가 많다. 뿐만 아니라 결혼했다는 이유로 배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무척 서운하다.

획일화된 결혼관에 부합하는 ‘정상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은 직장생활에서 갖가지 부당함을 감당해야 한다. <사례 1>과 같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 혹은 남성이 겪는 정서적 ‘위축감’ 외에도 결혼유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문화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성별 연대의식이나 노동자간의 연대의식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례 9 : 게이공동체>

싱글이면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또한, <사례 9>처럼 독신인 경우 ‘일을 더 많이 해도 된다’ 는 의식이 팽배해 독신자들이 과다한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정작 승진 인사고과에서는 그 기준이 결혼여부와 자녀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심각한 차별로 이어진다.

“결혼한 사람들은 비혼인 나에게 결혼의 장점, 아이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가르치려 한다. 결혼 안한 것 자체에 대해 무시하는 것 같다. 비혼은 불완전한 것, 결혼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냥 나를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비혼 여성)

“직장 동료들이 애인과 함께 사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며 빨리 결혼하고 아이 낳으라고 한다.”(비혼 여성, 동거 커플)

게다가 <비혼 여성>, <비혼 여성, 동거 커플>과 같이 ‘비혼은 불완전한 것’ 이고 ‘결혼을 위한 과정’ 정도로만 인식하다보니 비혼인 이들은 ‘덜 자란 어른’ 정도로 취급되며 직장 생활 일상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은 업무와 무관할 수 없다.

(2) 노동조건별 가족상황차별

① 가족수당⁵⁸⁾

‘가족수당’ 은 임금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논란⁵⁹⁾ 외에도 성차별

58) 이수정(2007), 「일과 건강」 11월호, “‘가족수당’, 남녀차별적이지만 한가?” 요약 인용.

59) ‘가족수당’에 대해 대법원은 가족 수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부는 독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

적 ‘생활보조적 금품지급’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즉 “가족수당은 세대주에 한해 지급한다” 등의 규정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성차별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9조에서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용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37조 제3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로써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동자’,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노동자는 제외’ 등의 조건이 있거나,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로써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노동자는 배우자가 불구·폐질인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가 있는 자, 단 여성노동자는 배우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등의 조건이 있거나, 어떠한 형식으로도든 ‘남성’, ‘남편’, ‘여성’, ‘부인’, ‘주부’, ‘딸’, ‘아들’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성차별에 해당된다.

반면, 남녀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즉 ‘배우자가 있는 자’ 를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하면서 ‘기혼독신 남녀’ 또는 ‘미혼남녀’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즉 ‘배우자가 있는 자, 다만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한 결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성차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세대주’ 판단에 대한 남성중심적 사고와 ‘가족구성권’ 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가족’ 의 범위를 정하는 관행

등을 따져보면 “가족수당”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상 간접차별의 소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의 소지 또한 안고 있는 것이다.

② 육아 휴직, 돌봄 노동을 위한 휴직 등

“결혼하면 결혼 휴가, 출산하면 출산 휴가, 애 낳으면 육아 휴직, 이성에 가족을 꾸리는데 참으로 부여되는 것이 많다. 비혼에게도 휴가를 달라. 비혼도 힘들다. 몇 세 이상이 되면 비혼 휴가를 달라.”(비혼 여성)

<사례 1 : 여성 1인 가구>

특별한 차별이러기보다는, 결혼한 여성들이 결혼휴가, 유아휴직 등 많은 혜택을 받을 때, 직장생활 10년 넘게 했는데도 안식년은커녕 안식월도 없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결혼해라’는 식으로만 말한다.

<사례 9 : 게이공동체>

휴가는 차이가 나지요. 배우자와 관련된 건 하나도 못 받으니까. 형제자매와 관련된 건 받을 수 있지만.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비혼자와 기혼자, 독신자와 비독신자를 차별하는 노동조건 중에 각종 휴가제도가 있다. 직장 내의 각종 휴가제도는 <비혼 여성>, <사례 1>, <사례 9>와 같이 결혼 휴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기혼자의 생애주기별로 휴가가 설계되어 있다. 비혼자의 경우 연·월차 휴가 정도가 재충진을 위해 고용관련법상 보장된 휴가인데 반해 기혼자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따른 생애 주기별 휴가를 누릴 수가 있다. 최근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역시 이를 크게 벗어나

지 않고 있다.

돌봄 노동의 가족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또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한 가족 책임을 상정하고 있어 성차별적 요소 뿐 아니라 가족상황차별적 요소를 안고 있다.

자녀 양육 책임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둔 한 여성이 “월차나 병가를 내면 팀 전체 점수가 깎이게 되어” 직장을 12년 다니는 동안에 휴가를 쓴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여성은 가족 내 책임을 위해 휴가를 쓰거나 휴직을 하는 것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치부되는 직장 문화로 인해 가족상황차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문제 또한 가족 내의 지위나 가족 내의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직장 문화라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노동시간의 단축, 실질적인 휴가일수의 산정·부여와 급여 보장, ‘정상’ 가족만을 지원하는 체계의 수정,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없이는 성별, 가족 내 지위, 가족 책임 등에 관계없이 관련 법·제도를 누리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사례 5 : 장애인 동거 커플>

장애가 있는 자녀가 그 집에 생겼을 때 그 몫이 전적으로 엄마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장애 있는 자녀가 있으며 그 엄마에게는 완전 그게 형벌이 되는 거예요. 형벌...

<사례 5>의 여성은 장애아를 위한 돌봄 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업권과 노동권을 박탈당한 경우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 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 부과함으로써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가족책임에 따른 차별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호주의 「동등기회법」은 10년 동안 계속 일한 남성노동자가 내부 승진 면접 동

안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휴직한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 사례에 대하여 ‘가족책임’에 기반한 차별로 보고 있다.

호주에서는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자의 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여 가족상황에 따라 돌봄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이 이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③ 승진과 기타 노동조건

<사례 1 : 여성 1인 가구>

혼자 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인사상에서도 불이익이 있는 것 같다.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한 남성들이나 여성들보다 순서가 쳐지는 경우가 있다. (중략) 인사조건에 있어서는 애아빠, 애엄마인 기혼자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사례 1>의 독신 비혼여성의 경우 합리적인 인사고과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비혼자보다는 기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가족상황’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하거나 일시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가변적 지위임에도 불구하고(김소임, 2007) 직장 내 각종 제도와 혜택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있다.

<사례 6 : 레즈비언 동거커플>

할 말 많아. 경조사비가 문제. 결혼할 때 얼마, 출산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결혼제도랑 맞춰서.. 나는 기껏 받아봤자 부모 환갑, 돌아가셨을 때, 형제자매 결혼 때. 결혼하면 일주일동안 신혼여행 휴가가 나온다.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거. (중략) 각종 경조사 있을 때 돈을 걷는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야. 결혼제도 중심으로 돼있으니까. 또 진짜 문제가 됐던 게, 여자들이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결혼 안한 여자들이 일을 다 맡으면서 거의 죽는 거지.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직원이 일하기 좋은 회사라서 결혼도 일찍 하고 애도 잘 낳아. 출산휴가 나가면 한 부서에 5-6명인데 2명이 동시에 나가면 나머지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절대 한 사람이 출산휴가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휴가 안 내는 거고. 그런 게 시스템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

또한, <사례 6>은 고용관련법상 강제되는 사항 외에 휴가와 맞물려 복귀후생적인 성격이 강한 경조사비의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등 직장 내 모든 휴가와 각종 수당 제도가 가족상황차별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4. 소결

국가인권위원회(2004)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중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관행”에 대하여 이를 가족상황차별로 보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고용관련법-제도의 가족상황차별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용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 규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고용관련법의 가족 개념과 범위는 민법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민법의 가족 개념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회적 신분’과 ‘가족 내에서

의 지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관련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정상가족 밖의 가족의 취업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력서 항목의 구성과 면접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족상황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기혼자와 '정상가족'의 생애주기별로 마련되어 있는 직장 내 각종 휴가제도와 수당 체계의 차별적인 요소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상황', '가족 내 지위', '가족 책임'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고 가족 내에서 주되게 보살핌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은 서둘러야 한다.

우리사회 고용 관행 중 성차별적인 관행에 대하여는 점진적인 법 개정과 제도적 개선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와 중첩되어 나타나는 고용관련법·제도에서의 '가족상황차별'에 대하여는 그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족상황차별 해소를 위한 고용관련법의 개정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제도 마련과 함께 가족 형태, 가족의 구성 과정, 가족 내 지위, 가족 책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고용 관행을 고용상 가족상황차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V. 복지제도 안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반적 현황과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제정, 2000년 10월부터 시행

되었으며, 1961년에 제정되어 40여 년간 실시되었던 생활보호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에 의해서 보호적인 성격으로 복지가 이루어졌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저소득층인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권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칙과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에게 줄 것인가(선정)', 무엇을 얼마나 줄 것인가(급여)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한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 중 상당부분은 정책결정자들 간의 가치갈등과 제정적 제약 등에 의해 의도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⁶⁰⁾. 선정의 문제에서는 가족부양의무자 기준이 연관되고, 급여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이 연관될 수 있다.

특히 가족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에 기반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보호를 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며 저소득층이 수급기준에서 탈락되는 중요한 사유가 되어왔다.

수급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가 크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01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135만, 137만으로 줄었다가 2004년 142만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축소되어 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 7월부

60) 여유진(2004), "국민기초생활제도 부양자기준과 빈곤사각지대-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4권 1호.

터는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좀 더 증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3-5>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 명)

시 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01	698,075	1,419,995	698,075	1,345,526	74,469
2002	691,018	1,351,185	691,018	1,275,625	75,560
2003	717,861	1,374,405	717,861	1,292,690	81,715
2004	753,681	1,424,088	753,681	1,337,714	86,374
2005	809,745	1,513,352	809,745	1,425,684	87,668
2006	831,692	1,534,950	831,692	1,449,832	85,118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에서 부양의무자인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복지제도에서 가족을 누구로 정의하고 그 가족의 의무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복지제도의 수급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또한 제도에서의 가족의 정의가 현재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변화와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전통적인 가족 부양체제가 부양관계의 규범적인 기반이 되어 왔다는⁶¹⁾ 점에서 볼 때 이런 규범을 계속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통해서 현재 복지제도에서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며 현재의 보장 수준이 얼마나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61) 장경섭(1992),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제 15권, 한국산업사회학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

(1) 변화하는 가족, 부양에 대한 국가와 가족의 갈등

국가 책임의 정도에 대한 논의는 가족의 변화와 함께 바뀌어 왔다.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동의 부양에 대한 의무는 더 커지고, 혼인율은 감소하는 데 비해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등도 모두 가족부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90년대 후반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은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을 급증시키기도 했다⁶²⁾. 이런 문제는 가족 내의 사적 부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로 부양에 대한 기대 또한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노인 생활비의 경우에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46.3%) 것보다 자녀(53.3%)가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이미 노인 스스로의 시각은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1980년에 생활비를 ‘가족에 의존하겠다’는 응답은 49.4%였지만 2000년에는 19.5%로 크게 줄었으며, 반대로 ‘사회보장에 의존하겠다’는 1980년의 8.2%에서 32.7%로 크게 증가했다⁶³⁾. 생계비의 증가와 이전과 다른 가족 부양의 의미 등으로 인해서 노인 스스로도 가족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적 부양의 변화에 대해서 공적 부양은 얼마나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 외에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가족의 관

62) 또한 가족 부양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출하는 남편이 늘면서 이를 문제삼아 이혼하는 아내도 많아졌다. (경향신문 2008년 2월 19일자 “60년대는 ‘간통 이혼’- 2000년대는 ‘경제 이혼’”)

63) 석재은·유은주(2007),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가족법연구』 제21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계적 측면이다. 가족이 단순히 도구적인 기능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친밀한 집단으로서 정이 내려지며, 친밀성이 기반되지 않고, 자발적인 감정이 바탕이 되지 않은 가족이라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⁶⁴⁾. 이전에 부모-자녀 사이의 부양관계는 사회 전반의 도덕적 분위기에 내지 압력에 의해 그 근간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⁶⁵⁾, 더 이상 그러한 효 등의 사상으로 포장되는 것도 도덕적인 의무라는 것도 많이 희석되고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에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로 인해 공적 부양의 의지 혹은 능력이 사회적 부양 실태의 급격한 감소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부양의 수요-공급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 괴리는 ‘욕구충족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⁶⁶⁾

이러한 괴리의 부분을 분석함에 있어 부양의 의무가 다양한 차원이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무는 태도, 행동, 정책의 세 가지 수준으로 정의된다. 태도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 행동은 의무를 실행해야 할 때 실제로 하는 것, 정책은 사람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은 절대적인 의무를 지각한 결과가 아니라 시간을 걸쳐서 발전된 관계의 복합적인 산물이며, 상호성, 평판, 공정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에서 사람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실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급격한 가족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 격차가 더 늘어나게 된다⁶⁷⁾. 따라서 한국 사회와 같이 급격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은 사회에서 사람들의 태도, 행동, 그리고 정책 수준에서는 큰 격차를

64) 장경섭(1992)은 (시)부모-자녀 관계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순수한 친애감과 민주적 교호를 바탕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노년기와 아동기 및 청소년기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다.

65) 장경섭, 앞의 글, p.182.

66) 여유진, 앞의 글, p.5.

67) Millar, Jane and Warman, Andrea(1996), "Family Obligation in Europe", *Social Policy Research*, Vol. 107. p.7.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적인 규정과 사람들이 실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를 얼마나 인지하는가에 따라서 법적인 의무, 즉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나타난 복지의 경향은 국가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소득 계층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된 삶을 비교적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된 상호부조를 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가족 복지 즉 가족 부양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 가족 복지는 가족을 위한 복지와 가족을 통한 복지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한국의 가족 복지는 가족이 노인, 아동, 장애인, 병약자 등의 안녕을 돕기 위한 정책 도구가 되는 것이다⁶⁸⁾.

현재 기초보장체계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법률로 부양의무자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관계를 명시하고 시행령 및 지침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여 부양비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는 생활유지적 부양과 생활부조적 부양으로 구분되는데, 생활유지적 부양이란 설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더라도 부양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것이 이에 해당하고, 생활부조적 부양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이외의 친족 간에 발생하는 부양의무로 요부양자가 자기 자력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발생하게 된다.⁶⁹⁾

즉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부양의무를 지는 대상이 달라지게 되고,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은 그 부양의무자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부양을 요구하는 지를 결정하게 된다.

68) 가족부양 강조 입장은 가족의 가족구성원을 사랑과 보살핌의 원리 위에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와 같은 가족부양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사회부양을 강조하는 입장은 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논의되어 국가는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모든 가족을 위한 복지라는 특성을 가진다(송다영, 2005 : 148).

69) 여유진외(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양의무자와 그 정도에 대한 정의는 또한 국가 책임과 가족 책임의 경계를 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부양의무자가 확대되고,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이 낮을수록 가족 책임은 더 크게 부과되며, 반대로 부양의무자가 축소되고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높을수록 국가 책임은 더 커지게 된다.

(2) 가족 부양의무의 유형화

Millar and Warman(1996)에 따르면 유럽국가의 가족부양의무의 범위는 개별, 핵가족, 확대가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개별 유형 국가의 경우는 국가급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며, 둘째 핵가족 유형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별화가 덜 되어 있고, 셋째 확대가족 유형 국가는 부양의무를 핵가족 이상으로 확대한 경우이다. 개별 유형 국가의 경우는 현금 급여가 개별화되어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가족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핵가족 유형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을 의무화하는 국가와 성년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국가로 나뉘어진다. 확대가족 유형은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국가 유형은 혈연과 결혼으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개별 유형 국가는 성인들 간의 관계를 사적인 것으로 보고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규제도 제한적이고, 결혼에 기반하지 않은 관계(이성에, 동성에 모두 포함)를 인정하려고 한다. 핵가족 유형 국가는 동거에 대한 대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동거는 결혼과 같은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확대가족 유형 국가에서는 동거와 같이 가족이 아닌 관계를 친족 관계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고 인지하지 않는다.

결국 확대가족 유형의 국가로 갈수록 가족 부양의무는 확대되고 국

가의 공적 부양은 줄어들게 된다. 가족에 대한 정의도 혈연과 결혼에 기반한 가족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가족 유형이 논의될 여지가 없으며, 그들이 가족 지원을 받을 권리도 제한되게 된다. 복지혜택의 개별화와 가족 정의의 확대가 같이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유형의 국가의 경우 다양한 가족이 현재 인정되고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표 3-6> 가족 부양의무의 유형화

유형	해당국가	부양의무 내용
개별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 국가 급여가 개별화되어 있으나,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가족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정. 노인에 대한 성년 자녀의 돌봄은 의무로 포함하지 않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돌봄은 국가의 중재가 이루어짐.
핵가족	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독일·아일랜드·룩셈부르크·네덜란드·영국	- 국가별 편차 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만 의무로 규정(아일랜드, 영국) ② 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지원도 의무로 규정(나머지 국가)
확대가족	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 가족 부양의 의무가 조부모, 형제, 삼촌, 이모의 친족까지 포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복지혜택을 받음. - 노인에 대한 부양은 가족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만 국가 지원을 받음 - 아동의 경우는 국가에 따라 편차가 있음.

자료 : Millar and Warman, 1996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전의 생활보호법에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활보호법 제정에서는 부양의무 면제조항만을 명기하였고, 이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통해 당시 민법이 가족 정의인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④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⑤ 처의 부모, ⑥ 배우자라는 친족집단을 포함하게 되었다. 생활보호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같이 적용되었으며, <표 3-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는 확대가족을 포함한 포괄

적인 기준에서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현재 부양자기준은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딸·아들)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혈연과 결혼으로 인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민법이 가족 정의를 평등하게 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진 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계 혈통에 더 치우쳐져서 부양의무자를 규정짓고 있다⁷⁰⁾.

부양의무자라는 것이 단순히 의무를 해야 할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양을 가족 의무로 보고 부양의무자는 가족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는 결국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습이 반영되거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거와 같이 결혼에 기반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 적이 없었다.

<표 3-7>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관련 법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부양의무 면제 조항만 명기 ⁷¹⁾
1982년 생활보호법 개정	민법의 규정에 의해 보호대상자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 -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④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 처의 부모, ⑥ 배우자
1990년 가족법 개정	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가 평등하게 확대 -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 생계를 같이 하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1991년 생활보호사업지침	민법의 포괄성으로 인해 운용상의 자율성 가짐 - 4촌 이내의 혈족, 남편의 4촌 이내 혈족, 처의 부모

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구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 분리 시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는 가구원에 출가한 딸 또는 이혼 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를 명시하고 있다. 즉 시부모의 부양이 친정부모의 부양에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다.

1992년 생활보호사업지침	생계를 같이 하는 출가한 딸 추가
1995년 생활보호사업지침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친족(2촌 이내의 혈족, '출가한 딸')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① 직계혈족 및 배우자 ②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친족(2촌 이내의 혈족, '출가한 딸')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①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자료 : 김수정, 2003 참조하여 재구성⁷²⁾

이러한 혈연에 기반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양한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순히 혈연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그 가족의 부양의무를 지우거나, 다른 혈연가족의 존재로 인해 개인이 수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이 탈락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모두를 빈곤에 빠뜨리는 효과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는 현재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에 의한 것이다.

(3) 부양의무자 기준과 빈곤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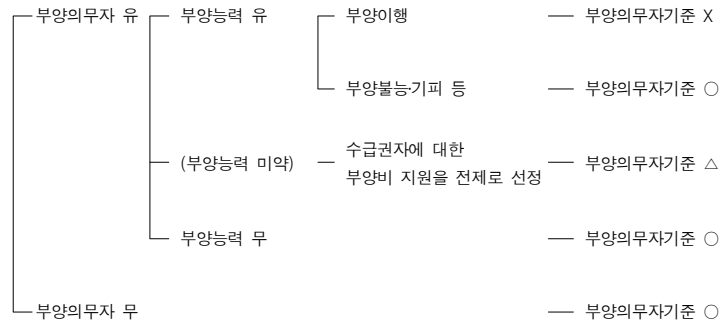
<그림 3-6>에서 보듯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 실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양능력은 부양능력이 전혀 없음과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나뉘어서 급여가 결정되게 되며,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기

71) 부양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는 ① 남자로서 연령 65세 이상 ②부녀자로서 50세 이상 ③심신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

72) 김수정(2003), "한국의 빈곤정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와 쟁점: 가족부양 '범위' 및 '부양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59권, 한국산업사회학회.

피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부양자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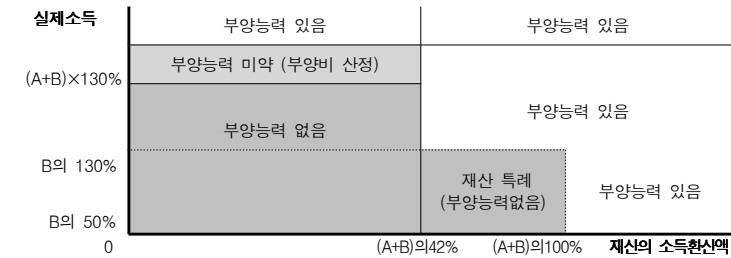
<그림 3-6>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자료 :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결정으로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를 넘지 않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더한 금액의 130%를 넘지 못하는 경우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아 부양비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재산소득의 환산액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의 42%가 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게 된다.

<그림 3-7>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자료 :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되는데, 이 기준이 최저생계비라는 것도 큰 문제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는 방식은 절대빈곤개념이다.

또한 2007년에 부양비 부과 판정 기준이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변화한 것은 수급권자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130% 수준이라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다. 2007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소득기준은 1,205,535이며, 이 금액의 130%인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2007년도 도시근로자 4인 가구 평균 소득 398만원의 40%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으로는 개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지는 모르나,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는 미흡하다. 게다가 그 최소한의 생활보장마저도 턱없이 낮은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으로 인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부양비 부과는 자신이 빈곤함에도 불

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빈곤하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만들어내게 되며, 결국 부양비 지급이 생활부조의무를 넘어 생활 유지의무로까지 강제되는 것이다.

또한 낮은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가족 관계의 단절을 이루어지게 하기도 한다.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비 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급권을 포기하는 노인들도 많다. 73)74).

3. 소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보호법에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화해왔고, 크게는 확대가족 규정에서 1촌만을 포함하는 핵가족의 형태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철저하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또한 여러 변화에서 다양한 가족의 변화와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이전의 혈연이나 결혼에 의한 가족과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친밀성의 정도에 따라 법적 규정보다 더 줄어들 수도,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루어지는 부양과는 달리 법적으로 부양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국민기초생활

73) 여유진의, 앞의 글, p.18.

74) 인터뷰 조사 사례에서도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동거의 형태를 따른 것은 아니었으나, 반대로 결혼을 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결혼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지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답했다. 즉 파트너가 소득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기초생활수급지정을 받는 것보다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빈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들조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권 기준에 따라 현재 가족이 해체되거나 스스로 법적 가족 구성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삭제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것과 관계없이 개인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개인이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계속 부양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부양을 받는 개개인도 무력한 피부양자일 뿐이다. 그러나 개인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생애과정에 걸쳐서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빈곤의 문제는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양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득 보장으로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개인의 삶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을 때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을 통해 빈곤에 빠진 개인을 피부양자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

VI. 결론을 대신하며

이 글은 건강보험과 임대주택정책, 고용관련법·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상 네 가지 제도 안의 가족에 대한 전제를 살펴보고 이를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 모임이 지향하는 바대로 법률 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특히 가족 관련 법률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민법을 변화시킨다면 이 제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회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가족 범위나 관념들을 일일이 바꿀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도 여러 가족관련 법률은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도 가족증명서에 담기는 가족의 범위⁷⁵⁾가 민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 다른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구, 세대, 가족의 개념 또한 앞의 세 법률의 가족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 각 제도마다 사용하는 개념 또한 다르다. 건강보험과 주택관련 법의 경우 오히려 가구, 세대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개념들이 사실상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한적인 ‘통념’이나 ‘관행’에 의존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고 있고 특히 (의무가 아닌) 권리 주체를 명시할 때는 매우 좁은 의미의 가족 관계가 전제되고 있다. 점차 축소되긴 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역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민법 등 가족 관련 기본법 상 가족의 정의와 범주를 확장하는 것과 함께, 개별 법률에서 정의하는 가족과 그 유사한 개념들을 반드시 통합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분석들이 충분하지 못하여 세밀하게 제도를 재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주택정책의 경우 기존 연구가 매우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혼인·혈연·친족으로 구성된 가구, 그 중에서도 3-4인의 부모-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을 거의 절대적인 수혜자로 보는 우리 사회의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용관련법·제도의 경우 법·제도 외에 노동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노동관행이나 기업문화 속의 가족주의를 보다 풍부하게 분석하

고 문제제기하는 것을 이후의 과제로 남긴 셈이다. 이러한 인식이 하류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보다 많은 제도 안의 가족을 들여다보고, 문제제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의식이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

75)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파트너십 관련 해외법률 동향과 시사점 : 생활동반자관계 그리고 동성혼

김태욱 전 민주노동당 인권사법정책연구원
이종현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장서연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파트너십 관련한 해외 입법은 주로 법률혼을 할 수 없었던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서 발달한 측면이 있다. 동성간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는 각국의 입법례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즉 (i) 혼인제도를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네덜란드 등)과 (ii) 혼인제도와 유사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독일의 동성간 생활동반자관계,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 PACS 등)으로 나뉜다.

향후 한국에서도 전통적 법률혼외의 생활동반자관계를 둘러싼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다양한 파트너십 관련한 법적 규율을 (i) 현재 혼인 및 가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ii) 아니면 혼인에 준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전자의 방식은 다양한 관계의 욕구에 반하는 것이며, 기존 법률혼의 경직성 및 불합리성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방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혼인과 가족만이 ‘정상’이며

그 외의 파트너십 관계는 열등하고 제한적인 관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비판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 글에서는 2가지 방식의 입법례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보호에 관한 해외입법동향 및 시사점: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및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PACS)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 법률혼 외에도 사실혼, 혼외동거 커플, 동성 커플, 장애인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혼을 통한 가족관계 외에는 전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의 관계로만 머물러 있다.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는 누군가에게는 기존 법률혼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경직성 또는 불합리성으로 인한 대안적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어 동성 커플과 같이) 이성애중심, 혈연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이 될 수 없는 법적 소외 계층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법률혼이 아닌 다양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법률혼 외의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와 법적 보호의 필요성도 점차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덴마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 서구사회

에서는 이미 전통적 법률혼 외의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파트너십 관련한 해외 입법은 주로 법률혼을 할 수 없었던 동성(同性)간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서 발달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동성(同性)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혼인에 준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한 해외 입법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전통적 법률혼 및 가족개념과 다른 생활공동체의 법적보호를 위한 향후 국내 입법에 참고하고자 한다.

다만, 아쉽게도 국내에 파트너십 관련한 해외입법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경우가 각국 해외 입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그치고 있어, 본 글에서는 각국 입법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김민중 교수의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2001), 명순구 교수의 「프랑스법에서의 동성간 공동생활약정(PACS)」(2002)을 참고하여 해외입법례 중에서도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와, 프랑스 공동생활약정의 예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파트너십 관계의 성립의 요건 및 절차

(1) 성립요건으로서 동성(同性)이어야 하는지 여부

앞서 언급하였듯이 파트너십(생활동반자)과 관련한 해외 입법은 주로 동성(同性)간 생활동반자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달한 측면이 있다.⁷⁶⁾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과정에서 파트너십 성립요건으로서 동성(同性)사이의 결합만 인정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동성사이 뿐만

아니라 이성(異性)사이의 결합도 인정하는 예가 있다.

1) 독일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요건으로 파트너가 동성(同性)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요건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 성적지향이 동성애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성애자 사이에서도 동성 간이면 생활동반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⁷⁷⁾ 즉 생활동반자법의 성립요건으로 성적지향이나 성애적 관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다만 생활동반자관계의 당사자가 단지 동성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의 당사자는 동성일 필요는 없다. 프랑스 공동생활약정 PACS에 관한 법률은 “공동생활약정이란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의 자연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네덜란드에서 1998년 1월부터 시행하였던 ‘동반자 등록법 National Registered Partnership’ 역시 동성뿐만 아니라, 2인의 이성도 등록할 수 있었다. 미국 일부 주의 ‘가정적 동반자관계 Domestic Partnership’도 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4) 시사점

파트너십 성립요건으로서 동성(同性)사이의 결합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전통적 법률혼을 선택할 수 있는 이성(異性) 커플에 대하여도 전통적 혼인의 관계 외에 다른 파트너십 관계를 선

76) 파트너십 관련한 최초의 입법은 1989년 덴마크에서 이루어졌으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동성 사이의 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77) 김민중(2001), “독일의 새로운 가족법상의 제도로서의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가족법 연구』 제 15권 2호, 396면.

택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 둘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파트너십 관련한 법률 제정이 법률혼 외의 다양한 생활공동체를 둘러싼 법적 관계의 규율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점, 경직된 법률혼 외 다른 관계를 선택하고자 하는 이성 커플들의 욕구가 존재하는 점, 실제로 동거, 사실혼 커플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보면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요건으로 반드시 동성(同性)사이의 결합만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립요건으로 이성사이의 결합도 인정하는 경우, 생활동반자 관계를 이성사이의 전통적 혼인과 동일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동성 커플의 욕구와 전통적 혼인의 경직성과 차이를 두고 싶어 하는 이성 또는 동성 커플의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사이만을 전제로 하는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이 프랑스의 공동생활 약정 보다 전통적 혼인과 유사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는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과 달리 파트너십을 해소하는 방식이 전통적 이혼의 방식처럼 까다로우며, 해소 후 상대방의 부양청구권과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까지 예정하고 있고, 생활동반자관계의 당사자는 제한적이거나 상대방의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방의 사망시 상대방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트너십의 성립요건을 동성간 결합에 한정할 것인지 이성간 결합에도 인정할 것인지가 곧 생활동반자관계의 안정성 및 그에 따른 효과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생활동반자관계를 현행 법률혼과 유사 또는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여 관계의 안정성을 증시할 것인가 또는 관계의 안정성 보다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및 계약을 중시할 것인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다. 다양한 파트너십의 상에 따른 관계의 안정성의 정도에 대한 요구는 파트너십 성립의 요건, 해소의

사유 및 방식, 상대방의 친족과의 인척관계 발생 등 신분상 효과, 상속 등 재산상 효과, 입양 및 공동친권의 행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약정의 당사자는 2인 사이에서만 성립하는지 여부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는 오직 2인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고, 다수인 사이에서 서로 성립할 수 없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로 등록된 관계를 긴밀한 책임공동체로 파악하고, 혼인에서의 일부일처제와 같이, 일쌍—雙의 원칙이 적용되어 단지 2인 사이에서만 생활동반체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⁸⁾

2)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은 이성 혹은 동성의 2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여, 2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다수인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해외 입법사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4) 시사점

일쌍의 원칙, 일부일처제에 대한 전통은 여전히 파트너십(생활동반자)과 관련한 해외입법에서 반영되고 있다.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은 성립요건으로서 성애(性愛)적 관계sexual love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후 살펴보듯이 법률혼과 달리 파트너십 당사자의 의무로써 성애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동거의무, 정조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쌍의 원칙에 따라 약정의 당사자로서 2인 사이의 결합만

78) 김민중, 앞의 글, 397면.

인정하고 있는 점, 후술할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의 장애사유로 중혼적 생활동반자관계, 근친관계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실질적으로는 성애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성애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생활동반자관계가 아니라면, 다양한 생활동반자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2인 이상의 생활공동체로서의 관계에 대한 성립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사인 간의 계약으로서 특성이 부각된다면, 다수인 사이의 생활동반자 약정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동성애자 사이의 결합의 경우는 파트너십에 관한 법적 인정에 대한 욕구의 반영일 수 있는 반면, 다수인 사이의 결합의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따른 신분상, 재산상 효과의 기대가 가지각색일 수도 있듯이, 2인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와 다수인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가 관계의 안전성 및 친밀성의 정도에 대한 욕구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적 효과 및 권리·의무(특히 신분상의 효과 및 양육, 친권의 문제)를 2인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와 다수인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입법기술상의 한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득이 이하 본 글에서는 해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2인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3) 성립의 장애사유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성립의 장애사유가 된다.⁷⁹⁾

- (i) 미성년자인 경우, (ii) 혼인한 배우자 또는 타인과의 생활동반

79) 김민중, 앞의 글, 399면.

자관계에 있는 자,

- (iii) 직계혈족, (iv) 형제자매, (v) 가장(假裝)동반자관계는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없다.

2)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은 아래와 같은 경우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된다.⁸⁰⁾

- (i)미성년자인 경우, (ii)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사이, (iii)직계인척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이(혼인에 있어서 근친간의 금혼범위와 동일하다), (iv)공동생활약정의 당사자 중 1인이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v)공동생활약정의 당사자 중 1인이 이미 공동생활약정에 따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생활약정을 맺을 수 없다.

3) 시사점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와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이 반드시 성애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의 장애사유를 각국의 금혼범위(중혼적 생활동반자관계, 근친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 등)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혼인과 차이점이 있다. 즉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할 수 있지만, 파트너십 관계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약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생활동반자관계를 둘러싼 법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중혼적 생활동반자관계, 근친간의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제한은 타당해 보인다. 현행 민법은 (i)연령적령위반, (ii)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행한 결혼, (iii)6촌이내의 인척 등 근친혼, (iv)중혼, (v)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혼인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민법

80) 명순구(2002), 「프랑스법에서의 동성간 공동생활약정(PACS)」, 6면

제816조), (i)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경우, (ii) 8촌이내의 혈족, (iii) 직계인척관계, (iv)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를 혼인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15조). 기존 법률혼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파트너십성립의 장애사유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의사표시와 절차

1) 독일의 동반자관계

동반자관계의 성립을 원하는 당사자는 관할관청에 함께 출석하여 서로 일생 동안 동반자가 된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의사표시에는 기간이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⁸¹⁾

공동생활약정의 기본전제는 공동생활 영위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거소를 관할하는 소심지방법원의 서기관에게 당해 사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는 공동생활약정서 원본, 공동생활약정의 당사자 사이에 공동생활약정의 금지범위에 들어가는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민적증서, 다른 사람과 공동생활약정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서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신고를 접수한 소심지방법원의 서기관은 등록부에 신고사실을 기재하고, 2부의 공동생활약정서 원본을 사증하고 이를 공동생활약정의 각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공동생활약정의 신고사실은 각 당사자의 출생지 관할 소심지방법원 서기관이 보관하는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에는 파리 대심지방법원 서기관이 보관하는 공동생활약정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생활

81) 명순구, 앞의 글, 5면.

의 거소에 비치하는 등록부상의 기재에는 공동생활약정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며 이 기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동생활약정의 모든 변경은 공동생활약정을 최초로 수리한 소심지방법원 서기관에 대한 공동신고의 대상이 된다.

공동생활약정의 당사자 중 최소한 1인이 프랑스 국적자인 경우에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생활약정의 공동신고 및 등록절차는 프랑스 외교관 또는 영사에 의해 행해진다.

3) 시사점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와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은 약정의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국내 파트너십관련 법률 제정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공시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서도 (i) 민법의 혼인 제도처럼 관할관청에 혼인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킬 것인지(민법 제812조), (ii) 아니면 사인간의 계약관계의 특성을 부각시켜 당사자 쌍방의 약정만으로 효력은 발생하지만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3. 해소의 사유와 효과

(1) 해소사유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⁸²⁾

82) 김민중, 앞의 글, 412면, 413면.

생활동반자관계는 독일민법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망과 재판을 통하여 해소된다.

재판을 통한 해소의 경우에는 (i)쌍방의 의사표시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ii)일방의 의사표시 후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하면, (iii)생활동반자관계의 유지가 상대방에게 있는 개인적인 이유로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신청한 청약자에게 비정상적으로 가혹한 경우에는 법원이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2)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료된다.⁸³⁾

(i) 합의해지

당사자 쌍방이 공동생활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 중 최소한 1인이 거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 관할의 소심지방법원 서기관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공동신고 하여야한다.

(ii) 일방적 해지

공동생활약정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공동생활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 이는 공동생활약정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계약'으로 관념한 결과이다. 당사자에게 일방적해지권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ii) 당사자 일방의 혼인

공동생활약정의 당사자 중 일방이 타인과의 혼인을 위하여 공동생활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생활약정의 타방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관할 소심지방법원 서기관에게 그 통지서 부분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생활약정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이 성립하는 경우도 공동생활 약정의 종료사유로 보아야 한다.

(iv) 당사자 일방의 사망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공동생활이 종료된 경우 생존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동생활약정을 최초로 수리한 소심지방법원 서기관에게 사망증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사점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는 독일민법상의 이혼제도와 마찬가지로 해소사유나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즉 해소의 방식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법원이 당사자 간의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며, 당사자 일방의 '혼인'에 의하여 공동생활약정은 종료된다. 이는 혼인의 효력을 공동생활약정의 효력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두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소의 용이함은 관계의 안정성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신분관계의 변동, 당사자 간 상속의 문제, 타인의 자의 공동입양문제, 상대방의 자에 대한 입양 문제 및 친권행사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민법의 이혼제도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이혼(합의이혼)과, 당사자 일방의 재판상 이혼청구에 의한 이혼(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파트너십 해소의 형식도 민법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합의해소)와, 당사자 일방의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재판상해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즉 당사자 일방만 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의 이혼제도와 마찬가지로 해소 청구의 상대방에게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소를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취할 것인지는 생활동반자

83) 명순구, 앞의 글, 7면.

관계의 상에 대한 정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현행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는 (i)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ii)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iii)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iv)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v)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vi)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민법 제840조). 하지만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사유 역시 민법상의 이혼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국내 입법이 취하게 될 생활동반자관계의 상에 따라 다르게 규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책주의원칙 하에서는 무책 배우자가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쓰게 된다. 파탄주의 하에서의 이혼은 이혼사실 그 자체보다는 이혼을 통해 야기되어질 수 있는 자녀양육문제, 이혼 후 배우자의 부양문제, 재산분할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혼 후의 부양 문제에 있어서도 유무책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은 국가가 부부의 사적 영역인 이혼사유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게 되었으나 국가의 개입은 사회적 약자인 처와 자녀가 이혼을 통해 가혹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려하고자 하는 경향으로도 평가받고 있다.⁸⁴⁾

(2) 해소의 효과

84) 변화순외(2003),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32면.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는 재산적 효과로서의 재산분할의 문제, 자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 당사자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과탄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① 재산분할청구권

민법은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9조의2).

한편, 판례는 민법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⁸⁵⁾ 다만,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즉 일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되지 않고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그 분할 대상이 된다. 이 때 한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것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여, 상대 당사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85) 대법원 1995.3.10. 94므1379,94므1386 판결 등 한편 판례는 사실혼관계를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관념상 혹은 가족질서적 측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생각건대,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갖추고 있으며,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당사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子)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중의 일방이 그 자(子)와 직접 면접·서신·교환·왕래·방문·숙박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⁸⁶⁾ 민법상 이혼의 경우에는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친권을 가진 부모의 생활동반자는 자(子)와 장기간 거주적 공동생활을 영위한 한, 자(子)와의 교섭권을 가진다. 생활동반자의 교섭권은 부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가, 혹은 공동친권이 성립되어 있는가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2) 미국 판례; 동성 커플(Same sex couple)의 경우⁸⁷⁾

동성 커플의 관계 해소에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한 경우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조부모 등의 법률적 친족이 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이제껏 사망한 당사자와 함께 자를 양육했던 상대방은 법률적 모자(母子)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양육권을 제3자에게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전자의 경우, 법원은 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양육권을 제

86) 변화순외, 앞의 책, 59면.

87) 정유선, "Cohabitation에 관한 법리와 Same Sex Couple에 대한 법적 문제점의 고찰".

3자가 아닌 사망자의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⁸⁸⁾

그러나 동성 커플의 합의에 의한 해소의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출생과 양육 모두에 상당하게 관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정신적 부모(psychological parents)에 불과하므로 자의 최대 이익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⁸⁹⁾

3) 시사점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를 직접 방문, 면접하거나 서신 교환, 또는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친권상실사유가 '자의 복리'를 해치는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지 않은 파트너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동친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록 자가 공동의 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거주적 공동생활을 한 사실에 기하여 혹은 독일의 생활동반자등록법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자에 대한 '작은 친권'을 행사한 사실에 기하여 파트너십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상대방에게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부양청구권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의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되면,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쌍방에 대한 부양의무도 종료하게

88) Solomon v District of Columbia, No. 94-2709 (D.C. Super. Ct. April 27, 1995)가 그 대표적인 판결이다.

89) Kazmierczak v. Query (Florida Super. Ct.); Allison D. v. Virginia M., 572 N.E.2d 27(N.Y. Court of Appeal, 1991)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생활동반자가 생활동반관계의 해소 후에 스스로 자기를 부양할 수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 부양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 질병 혹은 기타 장애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독일민법이 이혼한 배우자의 부양청구권을 개별규정에 열거된 원인⁹⁰⁾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 따른 부양청구가 독일민법상 이혼부양청구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의 보호·교양’을 부양청구원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활동반자법은 부양에 관하여 생활동반자 사이의 관계보다는 부모-자-관계를 우선시하고, 과거의 생활동반자 사이의 관계보다는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혼인배우자는 미성년자와는 동위에 있고, 성년의 자 및 기타의 친족보다는 우선하나, 과거의 생활 동반자는 부양채무자의 미성년자나 성년의 자보다 후위에 있고, 부양채무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혼인배우자 보다도 후위에 있다.

2) 시사점

현행 민법은 이혼 후 상대방의 부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상의 부양청구권과 같은 제도를 파트너관계의 해소에 따른 효과로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신분적 법률관계

90) 독일 민법의 자기책임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한 배우자가 공동의 자녀를 양육할 때, ②한 배우자가 나이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한 때, ③한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한 때, ④한 배우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을 때, ⑤한 배우자의 부양료가 충분치 못한 때, ⑥직업교육, 진보교육, 직업이전교육을 위해 부양을 필요로 할 때, ⑦이 외의 심히 중대한 이유로 인해 부양이 거절됨이 불공평할 때 (변화순외, 앞의 책, 34면.)

(1) 신분상의 의무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는 ‘일생의 원칙’에 따라 일생동안 성립하는 법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당사자 쌍방은 서로간의 부양, 협조 및 공동적인 생활 영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서로를 위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생활동반자의 1인의 출생의 성(姓)을 생활동반자관계의 성(姓)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본래의 성(姓)을 유지할 수도 있다.

다만, 혼인과의 차이점은 독일민법은 혼인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적 생활공동체’에 관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생활동반자에 대하여 ‘공동적인 생활영위’에 대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즉 혼인적 생활공동체로부터 생기는 의무와 결합되는 장소적 공동체에 관한 의무(동거의무) 혹은 성공동체에 관한 의무(정조의무)가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프랑스의 생활공동약정의 당사자는 서로간의 후견의무가 있으나, 결혼과 달리 충실의무가 없다. 따라서 일방의 부정(infidelity)이 파기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3) 시사점

국내 민법은 부부간의 동거의무(민법 제826조)를 부여하고 있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인 일방에 대한 유기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40조). 생활동반자관계의 당사자에게도 혼인과 같은 부양, 협조, 동거, 정조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와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의 경우에는 혼인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의무로써 정조의무·동거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일방의 부정(不貞)을 관계의 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신분관계의 변동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

생활동반자의 친족은 다른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인척관계가 되고, 인척관계에 대한 존수는 생활동반자의 그 친족에 대한 존수에 따른다.

2) 프랑스 공동생활약정

공동생활약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분관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동생활약정이 있다고 하여 타방당사자의 친족과 인척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며, 타방당사자의 친족에 대한 상속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성간 공동생활약정에서 자녀가 출생하더라도 혼인에서와 같은 친생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공동생활약정의 주된 효과는 당사자간의 재산적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⁹¹⁾

3) 시사점

신분상의 효과와 관련한 쟁점은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경우에 재산적 효과 외에 당사자 간에 혼인과 유사한 신분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의 부모 및 혈족과 인척관계를 성립하도록 할 것인지 문제된다.

5. 재산법적 관계

91) 명순구, 앞의 글, 6면.

(1) 부양의무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의 쌍방은 상호적인 부양의무를 진다. 동반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통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동반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활동반자법에 의한 법적인 부양의무의 인정을 통하여 생존하는 생활동반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2)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상호적이며 물질적인 부조의무를 지며, 일방의 의무만을 규정한 협약은 무효이다.

(2) 부부재산제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의 재산제는 독일민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부재산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생활동반자는 혼인에서의 ‘잉여공동제(剩餘共同制)와 일치하는 ‘청산공동제(清算共同制)’로서의 재산제로 합의하거나, 생활동반자관계에서의 재산법적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계약(공증을 받아야 한다)을 통하여 규율할 수 있다. 또한 공동재산제로서의 합의도 허용된다고 본다. 청산공동제는 각 당사자가 생활동반자관계를 개시할 때에 가진 재산 혹은 생활동반자관계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 되지 아니하고 각자는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한다.⁹²⁾

2)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은 이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약정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공동

92) 김민중, 앞의 글, 403면.

생활약정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생활약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공동생활약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거나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간주한다.

3) 시사점

생활동반자관계에서의 재산제는 각국의 혼인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민법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830조) 그 특유재산은 각자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는 혼인법상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일상가사대리권, 생활비용공동부담의무, 가재도구 또는 재산 전체에 대한 처분 제한 규정, 생활동반자의 점유에 있는 동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추정 규정 등을 두고 있다.

2) 국내의 경우에도 민법상의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규정 등은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민법에는 독일법처럼 배우자 일방의 주택이나 재산전체에 대한 처분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공동생활의 전제가 되는 주거 등의 처분 제한을 통한 상대방의 주거권 등 확보할 필요성과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라는 양면의 균형을 찾는 지점에서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생활동

반자관계에서도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상속권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

생활동반자도 혼인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상속권과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 청구권을 가진다. 생활동반자법은 명문으로 유류분에 관하여는 생활동반자를 혼인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생활동반자의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i)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요건이 있고, 피상속인이 그 해소를 청구하거나 해소에 동의한 경우, (ii) 피상속인이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생활동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일방은 사망한 동반자의 자가 있으면 그 자와 함께 상속재산의 1/4,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재산의 1/2를 상속한다. 사망한 생활동반자가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일방이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한다.

2)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의 각 당사자는 상호간에도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공동생활약정의 상대방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사망자의 생전의 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사실상 상속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일정비율의 범위내로 제한된다.

3) 시사점

각국의 입법례는 당사자 상호간의 상속권은 대체로 인정하는 경향

이나,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처럼 당사자 상호간의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예도 있다.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분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은 신분변동의 효력 보다는 공동생활을 둘러싼 재산적 효과, 사회보장,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차이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상속의 문제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친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침해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판례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실에 비추어 생활동반자관계로 인한 상속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견해⁹³⁾도 있다.

피상속인과 생활동반자관계 있는 당사자의 상속 순위를 현행 민법상의 법률혼의 배우자와 동등하게 볼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는 (i)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ii)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iii)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iv)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이고(민법 1000조),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생활동반자관계의 있는 자를 배우자와 같은 순위로 규정할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이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어, 후순위 법정상속인과의 충돌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아가 당사자 상호간의 상속문제 뿐만 아니라 생활동반자관계에 따른 상대방 친족과의 인척관계 발생 및 이로 인한 상속 및 대습상속의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93) 김민중, 앞의 글, 146면.

7. 임대차를 둘러싼 법적관계

동성혼 또는 파트너십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된 대표적 문제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차를 둘러싼 법적관계의 문제이다. 즉 계약상 임차인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

공동으로 사용한 주택의 임차인인 생활동반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대방 생활동반자의 임대차관계의 승계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혼인상의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자(子)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것과 달리 생활동반자는 사망한 임차인의 자(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 자(子)와 함께 임대차관계를 승계할 수 있을 뿐이다.

2)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

공동생활약정의 당사자 중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급은 공동의 생활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책임을 진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가 공동생활약정의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주택을 이탈한 경우 주택의 포기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은 공동생활약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지속된다.

3) 시사점

영국의 경우처럼 명문규정의 흠결, 공백에도 불구하고 판례로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주택임대차의 승계권을 인정한 예가 있듯이, 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 있어서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규정을 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주택임대차의 승계권을 (i)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사실혼 배우자의 규정처럼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로 제한할 것인지, (ii)또는 다른 상속권자와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할 것인지, (iii)또는 우선적으로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8. 양육

생활동반자관계에서 자의 양육과 관련한 문제로는 (i)당사자가 타인의 자를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는가, (ii)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타인의 자를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는가, (iii)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를 입양할 수 있는가, (iv)생활동반자관계에서 자에 대한 ‘공동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등이 문제된다.

해외 입법에서 파트너십 관련한 법적 관계를 혼인제도의 개방이 아닌 혼인과 유사한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에는 혼인에서 친자관계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공동입양, 공동친권이나, 상대방의 자의 입양 등을 제한하는 국가도 여전히 있다.

(1) 입양

1)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는 입양을 통한 부모-자-관계를 불인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에 혼인배우자는 공동으로만 입양을 할 수 있으나, 생활동반자에 대하여는 공동입양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생활동반자는 단독으로 타인의 자, 상대방의 자를 입양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의 자를 입양을 하더라도 공동친권이 창설되지 아니하고 입양한 당사자의 양부 혹은 양모로서의 지위만이 성립할 뿐이다.).

2)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은 공동입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별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입양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할 수는 없다.

3) 스웨덴은 생활동반자관계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타인의 자를 입양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타인의 자나 상대방의 자를 입양할 수 있으며⁹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는 상대방의 자에 대한 입양만이 허용되고 있다.

4) 시사점

국내의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여도 단독입양의 경우에는 민법이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민법은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부의 공동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민법 제874조), 배우자 일방의 단독입양을 금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94) 김민중(2004),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이론적 검토”, 『인권과정의』 2004년 5월호, 145면.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공동입양을 허용할 것인지,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자의 복리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레즈비언의 경우, 커플의 합의 하에 인공수정에 의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함께 양육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태어난子是 법적으로는 직접 출산을 한 모의子로만 인정이 되므로 법적인 모로 인정받지 못하는 레즈비언은 입양을 통하여 그 법적인 모자관계를 설정하려고 한다. 미국 관례는 이러한 경우에 자가 커플의 합의 하에 출생하였다는 점, 출생 시부터 모두 함께 생활하고 무엇보다 자 자신이 커플 당사자를 모두 母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자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입양이 허용되는 경우, 보험혜택, 연금수령, 학비 공제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입게 되며 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⁹⁵⁾

(2) 친권적 권한

친권이라 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행위를 대리·동의할 수 있는 부모의 권한을 말한다. 생활동반자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자에 대한 친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1)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자에 대하여 계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일방이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때에는 그 상대방동반자가 생래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자의 일상적 생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공

95) 정유선, "Cohabitation에 관한 법리와 Same Sex Couple에 대한 법적 문제점의 고찰"

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생활동반자의 친권적 권한은 생활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은 공동입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대방의 자를 입양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당사자 일방만이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시사점

친권의 행사도 공동입양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의 복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9. 나오는 말

현재 사실혼의 경우에는 국내 관례와 특별법⁹⁶⁾을 통하여 법률혼 부부와 유사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사실혼관계가 비록 혼인 신고는 되어있지 않지만, 공동생활의 실질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는 공동생활의 실질에 있어서 법률혼과 차이가 크지 않고, 계속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법률혼외에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파트너십 관련한 입법은 각국의 문화

96) 특별법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i)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고, (ii)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가정구성원, 성폭력범죄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족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와 프랑스의 생활공동약정의 입법례만 비교해 보아도 파트너십의 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에 따라 약정의 성립요건에서부터 성립 후 파트너 사이의 신분상 효과, 파트너의 상속권 인정 문제, 파트너십을 해소하는 방식이나 사유, 파트너십 해소 후 상대방의 부양청구권과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문제, 상대방의 자에 대한 친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국내에서 파트너십 관련한 법률을 마련할 때도, 핵심논쟁이 될 지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신분관계의 변동, 파트너의 상속권 인정여부 및 상속순위의 문제, 자에 대한 공동입양 및 공동친권의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파트너십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안적인 파트너십의 상은 무엇인지, 또는 현재 존재하는 파트너십의 관계들은 어떤 모습인지, 다양한 연구와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동성혼: 각국의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1. 동성혼 인정 상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당 국가의 민법에 혼인이 동성 커플사이에서도 인정되는 국가는 -인정 순으로- 네덜란드(2001), 벨기에(2003), 스페인(2005), 캐나다(2005), 남아프리카공화국(2006) 이

상 5개 국가다.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 메사추세츠주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주법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2004). 하지만 미국 내 동성혼을 반대하는 세력은 꾸준히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의회에서의 개정법에 대한 투표가 2012년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메사추세츠주 대법원의 또 다른 판결이나 미국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2년까지는 이 주에서는 동성혼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스라엘 대법원은 2006년 해외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보수단체와 율법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혼 인정을 위해 이스라엘 성소수자 단체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였다. 그 이후 이스라엘 내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자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논쟁중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뉴멕시코주, 뉴욕주, 로드 아일랜드주는 메사추세츠주 같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미국의 주에서 이뤄진 동성혼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 지역 역시 동성혼 인정에 대한 싸움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 앤틸리스 연방에 속해있는 섬들은 네덜란드 왕국에 속해있기에 네덜란드에서 이뤄진 동성혼은 인정된다. 또한 네덜란드 앤틸리스 연방에서 떨어져 나와 자치국이 된 아루바 역시 네덜란드에서 이뤄진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다.

2. 입법 과정: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 중심으로

(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이성, 동성 간 생활동반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는 동성 간의 결혼의 대안으로 이뤄진 방식이었다. 이후 2001년 동성혼이 인정되기까지 생활동반자관계에 등록된 커플

플의 1/3은 이성애자 커플들이다. 이 생활동반자관계는 재산 및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혼인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동성 커플의 관계에 대한 등록에 관심을 가져온 동성애자 단체들과 운동가 (Henk Krol - 현재 'Gay Krant'라는 잡지의 편집장) 들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1995년 이후 네덜란드 의회에서 동성혼 입법과 관련한 특별 위원회가 세워지면서 동성혼에 대한 관심은 집중되었다. 1997년 위원회는 동성 간 커플들에게도 동성혼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 이후 의회에서 이 문제는 큰 논쟁을 일으켰고, 2000년 새로이 발의된 결혼법안 - 이성,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는 - 은 네덜란드 기독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0년 12월 하원,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 2006년 기독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 현재까지 이 법안에 대한 개정의 움직임은 미미한 상태다. 2000년 12월 당시 민법 내 혼인 조항은 이렇게 수정되었다.

Dutch - Een huwelijk kan worden aangegaan door twee personen van verschillend of van gelijk geslacht (혼인은 이성간, 동성간의 두 사람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는 동성 결혼이 최대한 이성 간 결혼과의 동등한 법적 지위나 권한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자녀입양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동성 결혼을 한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시 그녀의 파트너는 - 그녀가 아이를 입양하지 않으면 - 아이의 부모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입양하기전은 Stepparent라는 지위를 갖고, 입양을 한다면 (second) mother로 인정된다. 현재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성소수자 단체는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이성간결혼과 마찬가지로 커플 중 한명은 네덜란드 국적 또는 거주권을 갖고 있어야 결혼이 인정된다.

현재 네덜란드 내에서 동성혼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동성 간 결혼을 반대했던 기독교는 동성 결혼식을 각각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신의 성전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교회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각각의 지역 정부는 결혼식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동성결혼 수행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 담당자 채용 당시 계약서에 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 해고할 수 없다. 이러한 여타의 반대 움직임이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동성 간 커플이 혼인을 하기위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2006년까지 총 6,500여 건의 동성 결혼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2) 벨기에

2003년 1월 30일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기독 민주세력이 다수당을 차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했다. 벨기에의 민법 143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Dutch - Een huwelijk kan worden aangegaan door twee personen van verschillend of van hetzelfde geslacht.

French - Deux personnes de sex different ou de meme sexe peuvent contracter mariage.

(혼인은 이성간, 동성간의 두 사람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다.)

벨기에는 그 이전부터 자국에서 인정받은 해외 동성 커플의 혼인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4년 이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배우자 중 한명이 벨기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어떤 커플도 동성혼을

인정받게 되었다. 2005년 7월 벨기에 정부는 2442 건의 동성 결혼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6년 4월 이후 동성 커플간의 입양권이 허용되어 생물학적 부 또는 모의 배우자 역시 입양을 통해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3) 스페인

2004년 3월 총선에 사빠테로 사회당 당수가 이끄는 좌파 정권이 승리한 이후 동성 간 결혼과 입양권에 대한 입법 운동은 이전 보다 더욱 활발해졌다. 여론조사를 통한 66%의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었지만 의회에서의 수많은 논쟁 이후 2005년 6월 30일 스페인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동성혼과 입양권은 합법화 되었다. 사실 이 법의 인준은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국민의 90% 이상이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결혼제도의 약화를 우려한 가톨릭교회는 꾸준한 반대를 표명했다. 또한 동성 결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 다수의 지지로부터 비롯된 정세 속에 좌파 정권의 굳은 의지가 큰 바탕이 되었다. 사빠테로 당수는 “동성혼이 합법화 되어도 가족이나 결혼제도에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가치에 부합되며, 더 나은 사회로 이끄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이후 스페인 LGBT 단체 협회 보고에 따르면 2005년 첫 해 동안 4500건의 동성혼이 이루어졌고, 50여건의 동성 커플의 입양이 성사되었다. 또한 동성혼을 원하는 커플이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도 두 명 모두 스페인 거주권이 있다면 동성혼은 인정된다.

(4) 캐나다

2005년 7월 20일은 캐나다가 민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으로 동성혼이 합법화 된 날이며, 스페인 이후로 세계적으로 네 번째이다. 사실 캐나다는 10개의 주정부 중 8개의 주정부와 3개의 특별지역 중 1개의 특별지역이 2005년 전에 동성혼을 주법에 의해 인정했다. 이는 캐나다 인구의 90%가 살고 있는 지역 규모다. 이미 1999년 이후로 동성 간의 동거가 인정되며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동성혼으로 점차적으로 제도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영국의 영향으로 인해 관습법 체제와 의원내각제로 이루어진 캐나다 체계에서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동성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시민 결혼 법안을 2005년 2월 캐나다 의회에 상정시켰고, 2005년 6,7월 하원, 상원 차례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 2006년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시민 결혼 법안 중 동성혼에 대한 내용을 다시 문제 삼으려 했으나 결국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캐나다에서 동성혼은 이미 사법부에서의 각각의 소송의 판결의 결과로 주정부나 특별지역에서 허용된 상태였다. 특히 결혼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주거해야하는 자격 조건도 없었다. 다만 연방법 체계에서 시민 결혼 법에서 결혼에 대한 의미를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5) 남아프리카공화국

2006년 11월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동성혼 법안을 통과 시켰다. 2005년 12월 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동성애자의 결혼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 법안을 개정해야하는 기한인 1년을 하루 앞둔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시킨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1999년 비등록 동거를 인정했었다. 그

이후로 헌법재판소는 시민 결합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민자들 사이 동성 간 생활동반자관계를 인정했고, 혼인한 이성애자 처럼 재산에 관련한 권한 및 지위를 동성 커플에게도 부여했다. 입양 뿐만 아니라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성애자 커플과 같은 재산에 관련한 권한 및 지위를 동성 커플에게도 부여했다. 또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동성커플 사이의 아이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그 이후 대법원은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었다. 로마 화란식 관습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 차례로 결혼 법이 개정되어있다. 1961년 제정된 혼인법, 1998년 개정된 관습상 혼인법은 토착부족 고유의 전통에 따라 이행된 결혼의 민간 등록을 제공하는 법이었다. 그리고 2006년 시민 결합법을 통과시켜 결혼 법에 더하였다. 이후 동성 간 커플은 시민결합법을 통해 혼인 또는 결합하는 동성 커플은 자신들을 혼인관계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 한국의 미래

(1) 절차

동성혼을 인정한 각국의 사례를 살펴 볼 때 동성혼은 생활동반자 관계이후 입법 과정이 이루어졌다. 동성혼 자체가 생활동반자관계가 허용된 이후 단계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각국의 동성혼 입법 시도는 동성 간의 결합이 사회적으로 생활동반자관계 등으로 가시화 된 이후 동성 간 커플이 제도적으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라는 점이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동성 간의 커플이 가족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의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의 입법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은 아직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간의 동거에 관해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법체계는 다양한 생활방식으로 인한 다양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성애자 중심의 사회에서 동성혼의 문제는 동거 및 생활동반자관계 등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가 다양한 관계를 인정해야한다는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2) 성소수자 단체의 운동

네덜란드는 동성 커플 관계의 법적 인정을 위해 80년 중반 이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생활동반자관계(1998년)와 더불어 동성혼 입법을 2001년에야 이루어 냈다. 이는 성소수자 단체의 꾸준한 문제제기에서 가능했던 상황이었고, 진보 세력이 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했다. 이는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200백만 명이 마드리드에서 모여 시위를 벌인 스페인의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단순히 성소수자 단체의 꾸준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운동의 문제제기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성소수자 단체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제기가 성소수자의 인권의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가족구성권 운동의 움직임이 그 이후 오히려 성소수자 운동의 활동 폭을 좁히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동성 커플의 관계를 인정하는 문제 이후 '성소수자 단체는 어떤 이슈를 제기해야하는가?' 에 대한 물음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들의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소수자 단체는 입양권이나 직장 내 각종 차별 등의 문제

그리고 보수 세력의 반대 의견에 직면했다. 이는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 진영이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및 각종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문제 그리고 성전환자 인권 문제들과 함께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야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성소수자 운동 진영이 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성애자 중심 사회에서 책임감을 안고 가야할 문제라는 것을 증명한다.

(3) 종교 및 보수단체의 반대 의견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출범이후 한국에서 기독교 세력은 보수 세력과 연합하여 더욱 성소수자 문제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스페인의 가톨릭교회처럼 -유교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스페인은 인구의 90%가 가톨릭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존엄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자는 명제 아래 동성혼을 통과시켰다. 이는 인간을 사랑하는 모든 종교의 틀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특히 가족제도라는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더라도 기독 보수 및 유교 세력에 대해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있다. 다만 우리는 19세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급성장한 기독교의 세력이 기독교의 종교 원칙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한다. 특히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부추기고, 동성 커플 사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논리에 대한 논리적이면서 대중에게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中 "Same-sex marriage" -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http://en.wikipedia.org/wiki/Same_sex_marriage)
주 스페인 대사관, 주 캐나다 대사관,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내 각국 개관 및 정세 자료